

기
리
모
비
포
조
형
조
형
조
형
조
형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

별책[1]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유사사례 분석

연구 책임자 | 박 석 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

- 별책(1)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유사사례 분석 -



국립국어원



백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례

I. 서론	1
1. 연구 개요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1. 연구의 필요성	1
2.2. 연구의 목적	2
II. 유사사례 요약	3
III. 유사 자격 비교	5
IV.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한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제안점	7
V.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9
1. 비자격	9
1.1. 간호교육인증평가	9
1.2.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21
1.3. 한국공학교육인증	27
2. 자격	35
2.1. 국내	35
2.1.1. 국가자격	35
2.1.1.1. 문화예술교육사	35
2.1.1.2. 보건교육사	47
2.1.1.3. 사회복지사	55
2.1.1.4. 요양보호사	63
2.1.1.5. 체육지도자	69
2.1.1.6. 청소년지도사	89
2.1.1.7. 평생교육사	95
2.1.1.8. 한국어수어교원	102
2.1.2. 민간자격	110
2.1.2.1. 공인노무사	110
2.1.2.2. 노인심리상담사	114
2.1.2.3. 아동심리상담사	116
2.1.2.4. 진로상담사	118
2.1.2.5. 청소년심리상담사	119
2.2. 국외	121
2.2.1. 영국	121
2.2.2. 일본	132
2.2.3. 프랑스	138
참고문헌	140
[부록 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	143
[부록 2] 간호교육인증평가심사 기준	149
[부록 3] 공학인증 심사 기준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및 판정 지침	179

I. 서론

1. 연구 개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와 관련된 국내 유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심사 제도의 효율성 증대, 양성기관의 운영 내실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이후의 품질 관리 등을 포함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 방안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연구의 필요성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 이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이 급증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사 제도의 내실화 및 효율화 증대를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자 수(누적)
2006년 868명, 2010년 5,543명, 2015년 23,232명, 2020년 57,438명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수
2020년 현재 총 495개, 학위 과정이 252개, 비학위 과정이 243개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받은 강의계획서와 실제 운영하는 강의 내용 간의 일치도 확인 필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에 활용하거나 적용 가능한 세부 지표 마련, 구체적인 심사 절차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세부 지표 및 심사 절차 마련에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연구’ 연구 참조
 - 서면 평가, 현장 방문 평가, 이의신청 절차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에 따른 세부 절차 마련, 학점은행제 단체 심사 신청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학점은행제 단체 심사 신청을 위한 양식 마련 필요

2.2. 연구의 목적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심사 절차 및 운영 방안 모색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세부 지표를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에 따른 세부 절차

및 운영 방안 모색

- 학점은행제 대상 단체 심사 신청 절차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II. 유사 사례 요약

○ 제도별 특징 및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도	내용	비고
교원양성 기관 역량진단	1. 심사 주기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기(1998년~2002년) 5년 • 2주기(2003년~2009년) 7년 • 3주기(2010년~2014년) 5년 • 4주기(2014년~2017년) 3년 • 5주기(2018년~2021년) 4년 2. 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별 후속조치 마련 3. 진단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환류 시스템	심사 주기 등급 설정 및 후속조치 피드백 제공
	1. 심사 절차의 시스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진단위원회 구성·연수, 서면 진단, 집체·현장방문 진단, 결과 산출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 세부 내용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절차 및 방법> 참조 	심사 절차
간호교육 인증평가	1. 학습 성과에 기반한 교육 체제 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내용 구성 체계는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6개의 평가 영역과 1개 평가 부문, 28개 	세부 심사 기준 인증 결과

	<p>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비전 및 운영 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내용 <평가영역 및 부문별 평가 항목> 참조 <p>2. 판정 유형(판정 기준)에 따른 인증 기간의 차등화</p> <p>3. 인증 결과 공개 및 활용 허용: 학과 홍보 등을 위한 자료</p>	<p>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p>
한국공학 교육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인증 심사 기준 세부 인증 기준 및 판정 지침 <각 영역별 판정지침> 참조 - 프로그램 교육 목표 영역, 학습 성과 영역, 교과 과정 영역, 학생 영역, 교수진 영역, 교육 환경 영역, 프로그램 개선 영역,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영역 	<p>세부 심사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평가 절차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서면평가 → 방문평가 → 인증평의회 → 종합판정 및 재심 	<p>심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준별 판정 종류: 만족, 보완, 미흡 • 공학인증 국내 혜택 및 국제혜택: 서류 전형 우대 등 	<p>인증 기준 유형</p>
<p>공인 노무사 보수교육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업노무사(등록된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교육(전문교육)과 윤리에 관한 교육(윤리교육)을 	<p>교사 재교육 (보수교육)</p>

	매년 8시간 실시. 단 윤리교육은 1시간 이상 포함(*보수교육은 현장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과정으로 운영)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기관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기간 설정: 2년 2. 심사 절차: 서류 심사 - 관계자 인터뷰 심사 - 현장 심사 등 3. 기존 교육원과 신규 기관 선정 방법이 상이함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
보건 교육사 양성기관	1. 시험 응시자격 인정을 위한 유사 교과목 심사 2.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대학 기관 유사 과목 심사) : 보건교육사 유사과목 심사요청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해당 학과 교육과정 편성표(커리큘럼), 기타 동일 교과목 입증 자료(선택사항)	양성기관 심사
사회복지사 양성기관	1, 양성기관의 분류: 대학교 및 학점은행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받은 사회복지사 자격임	양성기관 분류
상담사	1. 다양한 유형의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으로 발급 중 2.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자격증 발급 및 기관 관리 3.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는 「자격기본법」(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5호)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로 시행함	신규 및 재공인(연장) 구분

Ⅲ. 유사 자격 비교

○ 한국어교원 자격과 유사한 자격 제도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어교원 자격(現)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한국공학 교육인증
목적	한국어교원 양성, 한국어교육 정상화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화	중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국가 수준 점검 및 관리, 교육양성 기관 능동적 개선 노력 유도	공학교육 발전 촉진, 실력 갖춘 공학기술 인력 배출하 는데 기여
세부 심사 기준	①교육과정확인신청서 ②교육과목확인신청서 ③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교수요목 교과목 일치, 운영여부	①교육과정·교육내용 체계 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②교육 관련 인력 전문성 ③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 경 조성 현황	①교육여건 영역 (발전계획, 교원, 행·재정, 수업환경) ②교육과정영역 (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육 실습) ③ 성과 영역	①프로그램 교육 목표 ②프로그램 학습 성과 ③교과 과정 ④학생 ⑤교수진 ⑥교육 환경 ⑦프로그램 개선

			(운영, 교육, 환류)	⑧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심사 시기	연2회 (12~2월, 6~8월)	-	-	매년 1월~10월
심사 주기	-	지정기간 2년	1주기(1998-2002) 5년 2주기(2003-2009) 7년 3주기(2010-2014) 5년 4주기(2014-2017) 3년 5주기(2018-2021) 4년	인증 등급별료 상이
심사 절차	①기관회원가입 ②교육과정, 교과목 확인신청 ③교육과정, 교과목 확인 ④결과발표 ⑤재심사신청 ⑥재심사 결과 발표	①접수 ②지정 심사 ③최종선정, 결과발표 ④지정	①기획 단계 ②자체역량진단 ③정량지표역량진단 ④정성지표역량진단 ⑤결과확정, 발표 단계 ⑥결과 활용 단계 ⑦행·재정 조치 단계	①인증 평가 신청 및 선정 ②평가단 구성 ③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 ④서면 평가 ⑤방문 평가 ⑥예비 논평서의 완성 및 발송 ⑦논평 대응서의 제출 ⑧인증 평가(전공 분야별, 대학별, 연도별) 조율 위원

				회 개최 ⑨인증 판정의 확정 및 결과 통보
심사 방법	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육원 ① 서면심사 ② 인터뷰 • 신규기관 ① 서면심사 ② 현장심사 (프레젠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집체 진단 • 현장 방문 • 비대면 관계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 • 방문 평가 • 집체 평가
심사 등급	-	-	총점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	이전 평가 종합 판정과 현재 인증 기준별 인증 판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8단계로 구분 1단계: 차기정기평가 2단계: 중간보고 3단계: 중간방문

				<p>4단계: 조건부인증 5단계: 중간보고필 6단계: 중간방문필 7단계: 조건부인증해소 8단계 :인증불가</p>
심사 인센 티브	-	-	<p>A등급과 B등급은 현행 정 원 유지 A등급 교원양성 정원 조정 에서 면제, 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 표창</p>	<p>차기정기평가는 6년, 중간 보고/중간방문은 3년 인증유효기간을 받음</p>

Ⅳ.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한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제안점

-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기준 마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기관 재심사 신청
 - 심사 대상을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과정으로 나누어 상이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학위과정 중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는 1곳 이상의 기관에서 수강한 학점을 합산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일반대학(원)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움).
 - 인증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주기별 심사), 재심사는 기관의 선택사항으로서 원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심사 절차 및 방법

신청 → 1차 평가: 서면 평가(자체평가보고서)
→ 2차 평가: 현장 평가(대면 평가/인터뷰) →
판정 → 결과 통보 → 이의 신청 및 재심

-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 있음, 1차 평가는 서면 평가(자체평가보고서)로, 2차 평가는 현장 평가(대면 평가/인터뷰)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음.
- 서면 평가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

위원단 및 국립국어원 담당자가 현장 평가를 진행

- 판정 후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재심을 통하여 대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평가 기준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에 대한 평가 요건에 충족하는 최소한의 기준 요건 마련
- 평가 시 과정에 따라 적합한 기준 요소를 선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 방식

- 적합 및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등급제를 통한 기관의 역량 향상 기회 제공
- 등급별 평가 방식을 통한 기관의 차등적 질 관리(A, B, C)
- 이에 따라 심사 인정 유지 기간도 등급에 따른 인정 기간 부여(1년~5년까지 차등 부여)

○ 양성 기관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과 교육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성장 모델로서 제시하여 발표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

V.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1. 비자격

1.1. 간호교육인증평가

1) 심사 개요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 학생의 성과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교육 성과와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임.
-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 학습 성과 중심의 교육 체제를 통해 졸업 학생이 학과가 설정한 능력 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
- 간호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이 간호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고 있음.
- 지속적인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특징
- 학습 성과에 기반한 교육 체제 구축 강화

학습 성과 기반의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교육 목표의 설정 졸업생 역량 수준(학습 성과) 설정 수행 준거에 따른 평가

-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체제 강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요구
간호교육의 성장 모델 제시

- 핵심 기본 간호술 평가를 통한 현장 실무 능력 강화

2) 심사 배경

- 간호교육인증평가 대상은 4년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음.

<p>01 4년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p>	<p>02 3년제 간호학 전문 학사 학위 프로그램</p>	<p>03 간호사 학사 학위 특별 편입(RN -BSN) 프로그램</p>	<p>04 대학원 전문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등</p>
--	---	---	--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졸업생이 1회 이상 배출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고,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증 기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인증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제4조(인증대상)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고,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운영 개시 이전 프로그램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제19조(인증기간)

- ① 제18조 제1항의 판정유형에 따른 인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3. 졸업생 배출 전 프로그램의 경우(졸업생 배출 전까지)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졸업생이 배출되는 당해 연도 보완평가의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심사 목적 및 목표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간호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
 - 국제 수준의 간호 인력 양성에 대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책무성 제고
 -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간호교육의 질 보장 체제 확보

4) 심사 절차

○ 평가 구성 체계

- 평가 내용 구성 체계는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6개의 평가 영역과 1개 평가 부문, 28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평가 영역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 영역은 간호교육 운영과 지원을 위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내용을 구분한 것임.
- 평가 영역은 학과의 비전과 운영을 위한 체계, 교육 과정, 학생,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 성과 등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됨.

- | |
|---------------|
| I. 비전 및 운영 체계 |
| II. 교육 과정 |
| III. 학생 |
| IV. 교수 |
| V. 시설 및 설비 |
| VI. 교육 성과 |

- 인증을 위해 평가 영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준으로서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평가 부문: 평가 부문은 각 평가 영역별 평가할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영역별로 2개 ~ 3개의 평가 부문이 구성되어 있음.
- 평가 항목: 평가 항목은 평가·인증에서 평가할 주요 요소로서, 평가 항목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됨. 평가 항목별로 인증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인증 기준은 해당 항목에 대해 프로그램이 달성해야 할 목표 수준으로서 제시하고 있음.

- 평가 항목별로는 인증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을 정성 및 정량적 수준에서 제시하였음. 또한, 평가를 위해 대학이 자체 평가 시 작성하여야 할 내용과 비치 자료를 등을 ‘대학용 편람’에 제시하고 있음.

- 인증 기준: 인증을 위해 평가 항목별로 달성해야 할 수준을 제시함
- 검토 사항: 인증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평가 내용과 기준을 질문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 작성 내용: 해당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 후 자체 평가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표와 작성 분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작성 내용은 최근 2년간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장기적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5년의 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재의 운영 현황에 대한 확인만 필요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작성의 편의와 개념의 통일성을 위해 ‘작성안내’와 ‘용어정의’ 등을 두어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고 경계의 선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필요한 경우 범위와 예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정량 값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식을 제시하였음
 - 정량 지표 일부는 정보 시스템에 매년 현황을 입력하고, 자체 평가 시에 추가 또는 정정함
 - 정보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보 공시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여 보고서 작성

의 용이성을 높이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비치 자료: 항목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서면 평가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 현지 방문 평가 시 비치할 자료의 목록을 제시함
- 부록: 항목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서면 평가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할 자료의 목록을 제시함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영역, 부문별 평가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평가영역 및 부문별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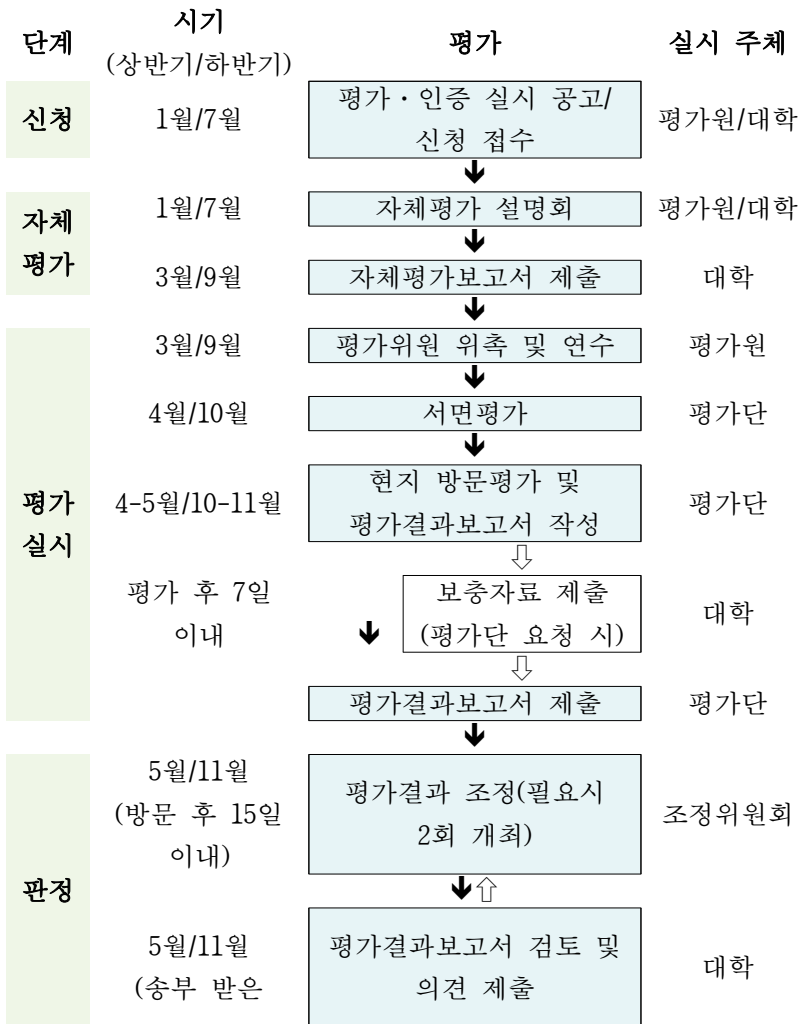
영역	부문	항목
I. 비전 및 운영 체계	1.1. 비전과 교육목표	1.1.1. 교육목적과 목표
		1.1.2.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
		1.1.3.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1.2. 행정과 재정	1.2.1. 운영 체계와 지원
		1.2.2. 재정 확보와 운용
	1.3. 운영 개선	1.3.1. 운영 개선 노력
II. 교육과정	2.1. 성과기반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구성
		2.1.2. 교과목 이수체계 및 이수학점
	2.2.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학업성취 평가	2.2.1. 이론 교육
		2.2.2. 실습실 교육
		2.2.3. 임상실습 교육
		2.2.4. 임상실습 지도
	2.3. 교육과정 개선	2.3.1. 교육과정 개선 노력
III. 학생	3.1. 학생 지도	3.1.1. 학생 지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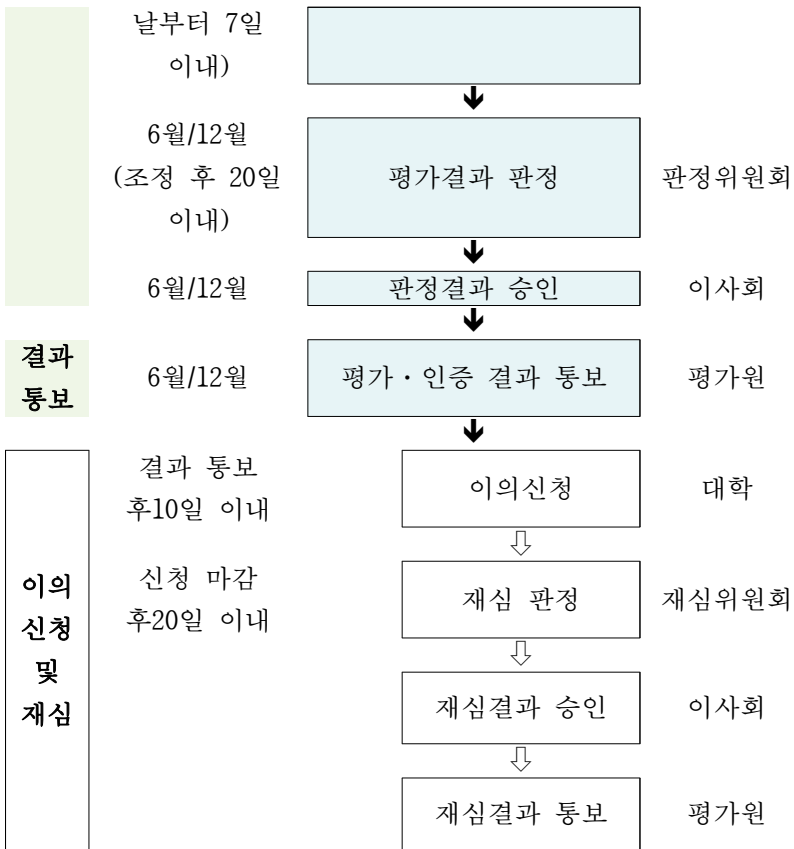
		3.1.2. 학생 지도 프로그램
	3.2. 학생 지원과 안전 관리	3.2.1. 학생 지원
		3.2.2. 임상실습 안전 관리
IV. 교수	4.1. 교수 확보	4.1.1. 전임교원 확보
		4.1.2. 전임교원 수업시수와 전공교과목 담당
		4.1.3.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 확보
	4.2. 교수 업적과 개발	4.2.1. 교수업적과 역량 개발 지원
V. 시설 및 설비	5.1. 교육 시설 설비	5.1.1. 교육기본시설과 편의시설 확보
	5.2. 실습 시설과 설비	5.2.1. 실습실과 실습기자재 확보
VI. 교육성과	6.1. 재학생 역량	6.1.1.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6.1.2.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6.1.3. 간호사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6.2. 졸업생 역량	6.2.1. 졸업생 역량 및 만족도 평가

○ 평가 절차

- 평가원은 평가 운영의 효율성과 대학의 참여 용이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평가·인증 신청을 받음.

○ 간호교육 평가·인증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되며 운영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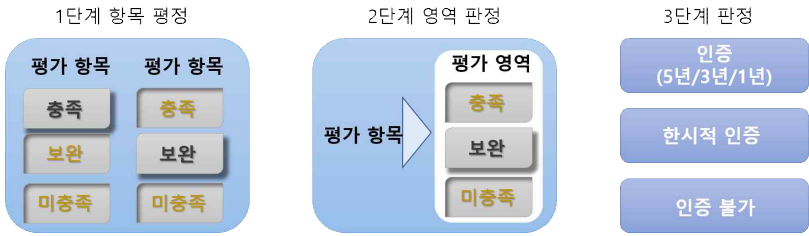




[그림 1] 평가·인증 운영 절차

- 자체 평가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한 서면 평가와 교육 기관 직접 방문을 통한 현지 방문 평가로 이어지는 평가·인증의 절차 중에서 가장 처음 단계로 피평가 대학이 주체가 되어 평가원이 제시한 평가 영역 및 평가 부문의 충족 여부에 비추어 대학 스스로 평가하여 보는 중요한 과정임.
- 자체 평가를 통해서 대학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함.
 - 대학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 목표와 목적 달성 여

- 부, 프로그램 학습 성과 및 학습 성과의 달성 여부 분석
- 학과가 구비한 교육 여건과 자원 등이 간호사 양성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효율적인지 분석
 -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성취는 적절한지 분석
 - 학과의 향후 개선 방안이 학과의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학사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
 - 교육 과정의 개선, 교원의 개발, 학생 지원 등에 있어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분석
- 자체 평가의 절차는 자체 평가 준비 및 기획, 자체 평가 실시,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의 활용의 4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평가 방법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평가를 위해 평가 항목별로 인증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부문에서 바람직한 교육 운영 상황이어야 하는지, 교육 기관의 역할과 책무성이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평가는 평가 항목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평가 항목별로 평가 요소별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족’ 과 ‘보완’ , ‘미충족’ 으로 구분됨.
 - 평가인증에서 평정 및 판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1단계는 항목 평정, 2단계는 영역 평정, 3단계는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 여부에 따른 판정으로 구분됨.



[그림 2] 평가 항목의 평정 단계

- 1단계에서는 항목별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평정함. 항목 평정 기준으로 ‘항목 평정 공통 루브릭’을 활용하고 있음.

<표 2> 항목 평정 공통 루브릭

평정 척도	평정 기준
충족	<p>항목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의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과 같이 관련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에서 서로 공유할 만한 구체적인 좋은 관련 증거가 많이 발견된다. ✓ 관련 활동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활동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보완	<p>항목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의 요소들을 대체로 충족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하며 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또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좋은 관련 증거가

	<p>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활동과의 연계는 미흡하다.
미충족	<p>항목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의 요소들을 충족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적절히 확인할 수 없어 인증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관련 증거가 일부 있기는 하나 질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 2단계에서는 영역별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평정함. 영역 평정에는 영역별 인증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항목별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영역의 양호도를 고려함. 영역 평정 기준으로 ‘영역 평정 공통 루브릭’을 활용하고 있음.

<표 3> 영역 평정 공통 루브릭

평정 척도	평정 기준
충족	<p>영역에서 제시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영역 내 각 항목의 인증 기준 역시 대체로 충족하여 영역의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준을 충족하며 서로 공유할 만한 구체적인 좋은 증거들이 다수 있다. ✓ 관련 활동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활동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 핵심적인 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70% 이상의 항목이 충족하며 미충족 항목은 없다.
보완	영역에서 제시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증거들을

	<p>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하며 해당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중대한 제약이 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또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좋은 관련 증거가 있다. ✓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활동과의 연계가 다소 미흡하다. ✓ 미충족 항목이 없으며, 핵심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50% 이상의 항목을 충족한다. ✓ 영역 내 미충족 항목이 1항목 있고, 보완 항목이 30% 이하이다.
미충족	<p>영역에서 제시한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적절히 확인할 수 없어 해당 항목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에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관련 증거가 있기는 하나 질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 영역 내 항목의 충족률이 50% 미만이거나 미충족 항목이 2항목 이상이다. ✓ 영역 내 미충족 항목이 1항목 있으며, 보완 항목이 30%를 초과한다.

- 3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때는 항목별 인증 기준 충족 여부와 영역별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 전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

- 영역에 대한 평정은 해당 영역을 담당하는 평가위원의 합의와 평가 단장이 주도하는 가운데 평가단 내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록 하고 있음.

○ 서면 평가

- 서면 평가는 피평가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평가하는 과정임. 서면 평가를 통해서는 각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 및 항목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확인함.
- 평가 위원은 인증 기준에 따라 교육 기관이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평가하며, 평가 요소별 평가 결과를 평정 근거와 함께 평가지에 기록으로 제시함.
- 서면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평가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 시기 평가단 전체가 모이는 가운데 집합 평가 형태로 진행함. 또한, 한 영역에 평가 위원 2명을 배정하여 평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평가 위원 간 협의 하에 평가하도록 함. 이때 평가 위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함.

○ 현지 방문 평가

- 현지 방문 평가는 1일의 평가 기간 동안 피평가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에서 제시한 자체 평가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면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임. 특히 서면 평가 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였던 사항들을 현지 방문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함.
- 평가 위원은 현지 방문 평가 시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음.
 - 피평가 대학의 교수, 행정가 대상 면담
 - 임상 현장 지도자 대상 면담(사전 요청에 한함)
 - 수업 시연 참관(사전 요청에 한함)

- 재학생 대상 개별 또는 집단 면담, 만족도 조사 실시(사전 요청에 한함)
- 실습 여건과 교수-학습 관련 기자재 상태와 활용 여부 확인
- 핵심 기본 간호술에 대한 평가 실시
- 그 외 비치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토

○ 평가 결과 조정

- 평가 결과 항목 및 영역별 평가 결과를 조정하기 위해 현지 방문 평가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함.
- 조정 위원회는 평가단이 제출한 ‘영역별 평가지’, ‘평가결과표’, ‘종합논평서’ 등을 검토하여 인증 평가 결과를 조정함.
- 조정 결과를 반영한 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을 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대학의 의견 제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2차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정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판정

- 조정 위원회의 후 20일 이내에 판정 위원회를 개최함.
- 판정 위원회는 평가단이 작성한 ‘영역별 평가지’, ‘평가결과표’, ‘종합논평서’와 조정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논평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를 판정함.
- 판정 위원회의 판정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 판정 결과 승인을 거쳐 일반에 공표함.
- 판정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인증(5년)’, ‘인증(3년)’, ‘인증(1년: 졸업생 배출 전)’, ‘한시적 인증’, ‘인증불가’로 판정함.

〈표 4〉 간호교육인증평가 판정 유형

판정 유형	판정 기준	인증 기간
인증(5년)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 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5년 (졸업생 배출 전 1년)
인증(3년)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3년 (졸업생 배출 전 1년)
한시적 인증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연속해서 2회 이상 판정할 수 없음)	1년
인증 불가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

※ 졸업생 배출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 기간 만료 전 ‘보완평가’를 통해 인증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졸업생이 배출되는 당해 연도 보완 평가의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또는 3년’의 잔여기간으로 함.

○ 이의 신청

- 간호교육인증평가 평가 결과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인증 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제20조(이의신청)

- ①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인증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 ③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은 간호교육 전문가, 간호실무 전문가, 교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3.24.>
- ④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 재심 결과를 보고한다. <신설 2014.6.13>
- ⑤ 재심위원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개정 2020.03.24.>

-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평가원은 평가 결과가 판정된 후 피평가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고, 대학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함.

○ 평가 결과 최종 확정

- 인증 평가의 결과는 판정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됨.
- 인증 평가의 모든 과정은 대학별 평가 결과 보고서 및 인증서를 우편으로 대학에 송부함으로써 종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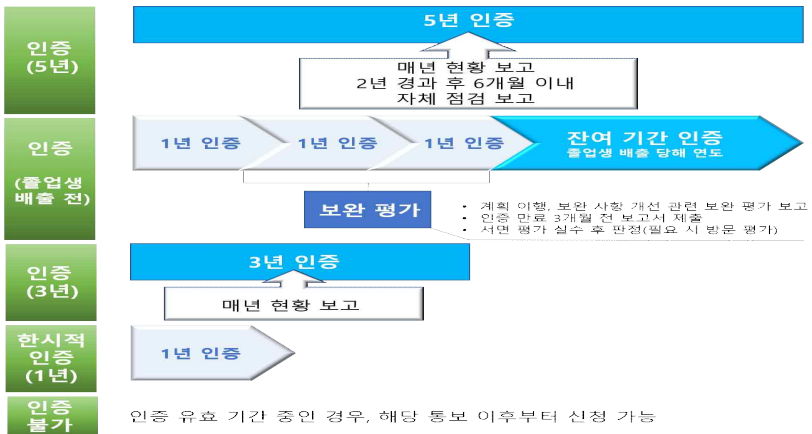
○ 평가 결과의 활용

- 2012년 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2017.2.2. 시행) 간호사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증 받은 간호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평가원은 인증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함.
- 인증 받은 간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인증 결과를 학과 홍보 등을 위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음. 인증 기간 중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음.

(※ 인증 마크 활용 방법 및 유의 사항은 인증 대학에 별도 안내함)

- 평가원은 인증 평가의 결과를 대학별로 정리하여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공함. 대학은 보고서에 제시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속적인 교육의 질 관리와 개선에 활용함.
- 평가원은 간호교육 운영과 교육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성장 모델로서 제시하여 발표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유함.



[그림 3] 판정 유형별 인증 기간

○ 인증 유지

- 대학은 프로그램의 인증 유지를 위하여 인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체 점검 보고서를 인증 기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인증 받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인증 기간 중에 프로그램 인증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평가원에 보고해야 함.
- 인증 유효 기간 중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에 위배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교육인증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인증 기간 중 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시정 조치 사항이 일정 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음.

○ 인증 기간 중 조치 사항

- 평가원은 인증 프로그램이 인증 기간 동안 인증 조건이 유지되는지 모니터링 함.
- 인증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대학은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1년 이내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증 조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평가원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증 프로그램의 인증 조건 위배와 관련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철회될 수 있음.

5) 심사 기준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처음 단계는 평가원이 제시한 6개

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부문의 충족 여부에 비추어 대학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 평가로 시작함.

- 비전 및 운영 체계는 학과가 국내외 간호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간호 전문직의 보편적 특성, 대학 특성,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과의 비전 및 교육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과의 비전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학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학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 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목 이수 체계와 이수 학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론 교육, 실습실 교육 및 임상 실습 교육은 성과 기반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임상 실습은 임상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임상 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또한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교육 과정 개선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 학생 영역에서는 학과가 학생의 학과 적응과 진로 개발을 위해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학생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성 함양, 학과 적응 및 직업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학업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 외 학생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또한 안전한

임상 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리 규정을 갖추어 임상 실습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1.2.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1) 심사 개요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전국 사범대학, 교육대학, 사범계 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점검 및 관리를 하고 교육양성기관의 능동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를 말함.
- 본 진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주도하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등 3개 영역의 평가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며 그 결과를 A~E 등급으로 분류함.
- 교육부에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역량진단 운영, 컨설팅 등을 맡음.
- 진단의 결과를 통해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고 교원양성기관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며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교직원장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심사 배경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1996년 8월 20일 교육개혁위원회¹⁾에서 발표한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 교육개

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의되면서 도입됨.

-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양성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이에 기초한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의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음.
-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99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부터 1주기(1998년~2002년), 2주기(2003년~2009년), 3주기(2010년~2014년), 4주기(2014년~2017년) 평가를 추진하였고, 현재 5주기(2018년~2021년) 역량진단이 시행되고 있음.
- 5주기부터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역량진단’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던 정책 방향에서 국가 수준의 진단과 더불어 양성 기관의 자체적인 자율 개선 간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선됨.

1) 1994년 2월 5일에 발족하여 1998년 2월 24일까지 활동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통령 자문기구.

〈표 5〉 주기별 기간 및 역량진단 대상

주기	기간	대상
1주기	5년 (' 98-' 02)	사범대학(40) 교육대학원(69) 교대(교육대학원)(11) 일반대 교육과(30) 일반대 교직과정(122)
2주기	7년 (' 03-' 09)	사범대학(40) 교육대학원(111) 교대(교육대학원)(11) 일반대 교육과(54) 일반대 교직과정(161)
3주기	5년 (' 10-' 14)	사범대 및 교대(55) 사범계 학과(54+35) 교직과정(63+48) 전문대 및 실기양성(68+23) 전문대, 기능대, 전공대, 방통대(60+11)
4주기	3년 (' 15-' 17)	사범대 및 교대(56) 일반대 교육과 및 교직과정(120) 전문대 등(137)
5주기	4년 (' 18-' 21)	교육대학교 및 교대(11+1), 사범대학 설치 대학교,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교(45+113) 전문대, 방통대, 실기교사 양성과정(106+1+3)

3) 심사 목적 및 목표

○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경영 및 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전문적 역량진단을 통해 각 양성기관의 자기 발전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타 교원양성기관과 비

교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장점 발굴 및 약점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함.

- 교원양성기관의 법적 책임 확보
 -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원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책무성 요건으로써 최소한의 법적요건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양성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함.
-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참고자료 제공
 - 교원 양성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공함.
 - 우수한 교원 양성과 필요한 정책 구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대한 참고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직원희망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정보 제공
 - 교직원희망자와 교원임용기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교육적·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양성기관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증가시킴.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교원 양성규모를 적정화하고자 함.

4) 심사 절차

- 역량진단 수행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진단위원회 구성·연수, 서면 진단, 집체·현장방문 진단, 결과 산출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함.
- 진단위원회 구성은 대학 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유치중고 교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되, 진단 대상 기

관의 관련자는 배지하는 기준을 마련함.

- 위원회의 전문성 및 팀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진단위원회 연수를 실시함.
 - 정량지표 진단으로 대상 기관의 입력 값 및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집체 진단을 실시함.
 - 정성지표 진단으로 서면 검토 후 현장 방문²⁾을 통해 허위·오류 의심 사항 및 증빙 부실, 대학 설명 필요사항 등을 점검함.
 - 교원 임용률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NEIS 자료 및 KEDI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원 임용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대학에서 제출한 명단을 검증함.
 -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한 표집 조사를 통해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점검위원 결과 수합, 수행기관 검증 등을 통해 잠정 결과를 산출하고 역량진단 대상 기관에 안내함.
-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역량 진단 결과를 분석 제공하여 대학의 자율 개선을 지원함.
- 잠정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를 함.
 - 이의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과 확정 및 안내를 하고 교직 희망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발표함.

2) 1일 1대학 방문을 원칙으로 함.

<표 6>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절차 및 방법

<p>기획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진단지표, 역량진단 추진 계획 확정 • 역량진단설명회 개최 및 역량진단편람 보급
<p>↓</p>	
<p>시행 단계</p> <p>자체역량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역량진단 실시 및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I: 대학 자체 진단 지원(역량진단 대상 학과 여부, 지표 설명회, DB 입력 방법 등 안내) - 양성기관: 자체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량지표 값 및 증빙자료 DB 입력 • 역량진단 위원 구성 및 연수
<p>↓</p>	
<p>시행단계</p> <p>정량지표 역량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체진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팀: 지표별 진단 실시 및 일부지표 무선표집에 대한 증빙자료 대학에 요청 - 양성기관: 지표별 요청받은 증빙자료 DB 추가 입력 • 정량지표 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팀: 지표별 양성기관 DB 입력 값에 대한 수치조정 사유 제시 - 양성기관: 지표별 정량지표 가결과 확인 후, 수용·미수용 판단, 미수용 시 추가 자료 제출 • 정량지표 진단 결과 최종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수용 시→지표별 양성기관 DB 입력 값에 대한 수치조정 사유 제시 - 대학 미수용 시→진단팀은 미수용 사유 검토→정량지표 결과 최종 확정(대학은 미수용 건에 대해 추후 이의신청 가능)

↓	
<p>시행단계</p> <p>정성지표 역량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진단 실시: 양성기관 자체진단보고서에 대한 서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진단: 양성기관 자체보고서에 대한 서면진단 · 현장방문진단 실시(비대면 원격면담 실시): 정성지표 실적과 증빙자료 확인 및 관계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정성지표 실적과 증빙자료 확인 및 관계자 면담
↓	
<p>결과확정 및 발표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결과 수합 및 종합 등급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산출(정량지표+정성지표) 및 가결과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결과 검토/확인 및 이의신청 · 역량진단결과 발표
↓	
<p>결과 활용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분석 자료 제공 등 컨설팅
↓	
<p>행·재정 조치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교육부)

- 정량지표 역량진단은 진단 위원 1인이 모든 진단 대상 기관의 정량지표 1~2개를 진단함으로써 진단 일관성, 공정성을 제고하며, 정량지표 실적 및 증빙자료 집계 진단을 실시함.
- 정성지표 역량진단에서는 자체진단보고서에 대한 서면

집체 진단을 실시하며, 정성지표 실적 및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혹은 비대면으로 관계자를 면담함.

- 역량진단 위원은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역량진단 위원 인력풀을 구축하고 대학 교수, 교원(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등), 교직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정한 역량진단을 위해 해당 대학 연관자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함.

5)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

-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전문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 실기교사 양성과정 등 교원양성기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표를 적용함.
- 교육여건 영역, 교육과정 영역, 성과 영역 3개 진단영역으로 구성하되, 교육과정 영역을 50% 내외로 배점함.
- 교육여건 영역의 평가 기준 및 내용
 - 교육여건 영역에는 발전계획, 교원, 행·재정, 수업환경 등의 진단 항목이 있음.
 - 발전계획: 교원양성 교육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함.
 - 교원: 전문성을 갖춘 교원(전문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이론과목)을 확보해야 함.
 - 행·재정: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지원 인력, 재원 및 환경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 수업환경: 예비교사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교원양성기관의 수업 환경이 적절히 구축되어야 함.

○ 교육과정 영역의 평가 기준 및 내용

- 교육과정 영역에는 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육실습 등의 진단 항목이 있음.
- 교육과정: 교원자격취득 검정 기준을 엄수하고, 적절한 교과·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해야 함.
- 수업: 수업의 충실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강좌 당 학생 수 유지, 수업 운영의 현장성 제고, 교수자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학생: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를 위한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함.
- 교육실습: 예비교원 교육실습의 성공적 수행과 수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

○ 성과 영역의 평가 기준 및 내용

- 교육과정 영역에는 운영성과, 교육성과, 환류성과 등의 진단 항목이 있음.
- 운영성과(학생유지 성과): 우수한 예비교사 지원을 확보하고 유지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해야 함.
- 교육성과: 학생들의 교원임용을 우선하되, 우수한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여건, 교육과정 및 성과에 대해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환류성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등의 각종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양성기관 유형에 따라 각 진단 항목 및 항목별 점수가 각각 다름.

○ 총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일정 점수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뉨.

- A등급과 B등급은 현행 정원을 유지할 수 있고, A등급의 경우 교원양성 정원 조정에서 면제가 되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음.
- C등급부터 차등적으로 양성 정원 조정과 컨설팅이 시작되며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으면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됨.

<표 7> 등급별 후속조치

등급	기준(1,000점 만점)	후속조치
A	800점 이상	부총리 표창, 요청 시 컨설팅 제공
B	700점 이상 ~	현행 유지, 요청 시 컨설팅 제공
C	600점 이상 ~	양성정원 30% 감축 ³⁾ , 컨설팅 필수 제공
D	500점 이상 ~	양성정원 50% 감축, 컨설팅 필수 제공
E	500점 미만	폐지

6) 특징

- 1주기에서 5주기까지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진단과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 노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역량진단’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음.
- 양성기관별 결과 분석 제공 등 피드백을 통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강화함.
- 대학에 지표를 최소 1년 전에 확정·안내하고 신설 지표의 경우 발표 이후 실적만 점검하는 등 예측성을 강화하였음.

3) 초등교원 양성정원의 경우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축 비율을 결정함.

- 정량지표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함.
- 교대, 사대, 교직, 교육대학 등 기관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가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 비교과(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자격 종류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함.
-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 제공하여 각 기관이 자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수준 진단과 기관의 자율 개선 간의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진단 결과 C·D 등급 및 희망 기관에 대해 진단 결과 등 컨설팅을 제공함.
- 역량진단 지표 개발 단계부터 편람 개발의 단계까지 대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역량진단의 현장성을 제고함.

1.3. 한국공학교육인증⁴⁾

1) 심사 개요

○ 소개

-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8월에 설립되었음.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위원회, 서울어코드위원회, 자문협의회, 공학교육인증

4) ‘KEC2015 인증기준’, ‘KEC2015 판정가이드(대학공개용)’,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함.

평의회(EAC),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평의회(CAC), 공학기술교육인증평의회(ETAC) 등의 기구를 가지며,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인증사업단, 기획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사무처가 있음.

○ ABEEK 설립 목적

-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공학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
- 공학교육에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고취
-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회에 공지
-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

○ 한국공학교육인증 시스템

-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의한 인증은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희망대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됨.
-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
- 경직된 인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을 규정화, 고정화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공학 프로그램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노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개선하도록 유도함.
- 인증 결과에 따른 대학/프로그램의 서열화는 지양하며, 인증 프로그램(소속 대학)의 목록만을 공개함.

2) 심사 배경

- 인증 프로그램은 2020년 5월 기준 총 83개 대학 449개 프로그램이 있음.
- EAC는 77개 대학 402개 프로그램, CAC는 34개 대학 43개 프로그램, EATC 4개 대학 4개 학위 과정이 있음.
- 공학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국내 기

업에 지원할 때 서류전형 우대 및 면접전형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음.

- 2007년 6월, 국제적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 정회원에 가입됨에 따라 ABEEK 인증 졸업생은 정회원국 사이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됨.

3) 심사 목적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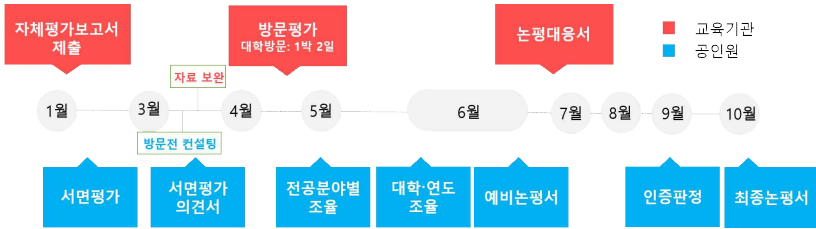
- 공인원 인증의 기본 방침은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의 목적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함.
- 해당 교육 기관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세분화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함.
- 공학 교육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을 장려하며,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함.
-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여함.

4) 심사 절차

- 인증 평가는 인증 평가 년도 전년도에 있는 인증 설명

회로부터 시작되며, 인증 설명회 이후 인증 평가 신청을 받아 대상 교육 기관을 선정함.

- 인증 평가 절차는 매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행되고 있음.



[그림 4] 공학인증 심사 절차

- 인증 평가의 세부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인증 평가 신청 및 선정
 - 인증 평가 신청 및 선정 과정은 매년 차년도 인증 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시작됨. 인증 설명회 이후 차년도 인증 평가 신청을 전국의 공과대학 및 전문대학에 안내하고, 인증 평가 신청 기간 동안 신규 또는 중간 방문 예정 대학들이 인증 평가 신청을 하도록 함.
 - 신규 인증 평가 신청의 경우 다음의 선정 기준에 의해 차년도 인증 평가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며, 이를 해당 대학에 공문을 통해 공지함.

신청한 프로그램이 신청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대학의 모든 인증 대상 프로그램이 인증 평가를 신청한 경우
 절대적으로 다수의 인증 대상 프로그램이 인증 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타 공인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평가단 구성

- 공인원은 교육 기관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소정의 선정 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맞춰 평가단을 구성함.
- 평가단은 단장 1인과 평가 위원들로 구성되며, 평가 위원은 프로그램당 1~2인으로, 공인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평가자 가운데서 공인원 내부 규정에 따라 위촉함.
- 공인원은 평가 위원 위촉에 앞서 각 프로그램별 평가 위원 후보 명단(소요 평가위원 수의 2~3배수 정도로 구성)을 교육 기관으로 송부하며, 교육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 인증 평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평가 위원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사유를 명시하여 제척할 수 있음.
- 공인원은 제척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척 해당자를 후보 명단에서 제외하여 평가 위원 후보 명단을 확정하고, 확정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평가 위원을 선정함.
- 평가단은 최종 인증 판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해체됨.

○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

-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인증 평가에 앞서 공인원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평가 방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함.
-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는 공인원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과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학위과정)이 자체적으로 기술하거나 편집한 내용들

이 포함됨.

- 평가단은 교육 기관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육 기관에 제시하고 현지 방문 평가 시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서면 평가

- 공인원은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학위과정)이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 보고서를 평가함.
- 평가단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인 서면 평가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교육 기관에서 제시된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보완 결과는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단의 방문 평가 시 현장에서 제시할 수도 있음.

○ 방문 평가

- 방문 평가는 서류 점검, 면담 등을 통해 대학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한 서면 평가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인증 평가 절차 중 핵심이 되는 과정임.
- 방문 평가에서는 자체 평가 보고서에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즉, 교육 환경, 교수진과 학생들의 사기, 교수진과 학생들의 안정성과 계속성, 직원 및 학생 단체의 수준, 교육 성과 등)과 질적 요소들을 평가의 주요 대상임. 또한 교육 기관의 약점 파악보다 장점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 평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합치되는 지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함.
- 1박 2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방문 평가는 평가 기준 8가지(KEC2015 기준) 중 특히 기준 2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에 대한 대학 자체의 평가 도구와 자율 순환적 평가

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됨.

<표 8> 공학인증 방문 평가 절차

방문일	방문 내용
방문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단은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상견례 후 종합 설계 포트폴리오 공동 점검 및 프로그램별 평가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평가단과 교육 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의견 교환을 위한 회의를 가질 수 있음. • 평가 단장은 교육 기관장과 학장을 방문하여 공학 교육 인증에 대한 지원 의지와 의견을 청취함. • 평가 단장은 필요시 저녁 시간에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 1일 평가에 대비한 프로그램(학위 과정)별 의견 조율을 가질 수 있음.
방문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중점적인 현지 평가를 실시함. • 평가단은 프로그램(학위과정) 교육 목표와 프로그램 학습 성과(졸업생 역량)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 현장과 교육 지원 시설을 확인함. • 점심 식사는 평가단 조율을 위해 평가단 구성원 외 참석이 불허됨. • 오후에는 현지에서 살펴본 내용 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재확인을 하거나 미처 수행하지 못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은 후 평가단과 교육 기관 관계자들이 마무리 면담 회의를 갖는 것으로 방문 평가가 종료됨.

○ 예비 논평서의 완성 및 발송

- 평가 단장은 프로그램(학위과정)의 전공 분야별 조율을 기초로 교육 기관 전체에 대한 예비 논평서(초안)를 완성하고 이를 공인원 인증 사업 단장에게 제출함.
- 인증 사업 단장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비 판정을 확정하고, 예비 논평서를 편집하여 교육 기관으로 발송함.

○ 논평 대응서의 제출

-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학위과정)은 공인원으로부터 접수한 예비 논평서에 지적된 내용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논평 대응서를 공인원 인증 사업팀으로 제출함.
- 논평 대응서는 예비 논평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공인원 인증 사업팀은 접수한 논평 대응서를 인증 사업 단장, 해당 평가 단장 및 평가 위원에게 전달함.

○ 인증 평가(전공 분야별, 대학별, 연도별) 조율 위원회 개최

- 공인원의 인증 평가는 이전의 교육 기관 평가들과 달리 대부분의 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평가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인증 평가의 필수 요소임.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공인원은 전공 분야별, 대학별, 연도별 조율 위원회를 두고 프로그램(학위과정) 평가자가 내린 인증 평가 결과를 조율함.
- 전공 분야별 조율 위원회는 교육 기관 방문 평가 이후에 개최하며, 예비 논평서(초안)의 평가 결과에 대한 유사

5) 심사 기준

- 공학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공학사를 수여하는 4년 이상의 교육 과정으로 다음의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수요 지향 교육 및 성과 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함.

1) 프로그램 교육 목표 2) 프로그램 학습 성과 3) 교과 과정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 환경 7) 프로그램 개선 8)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

○ 인증 판정

- 인증 평가 판정은 각 인증 기준에 따라 S(Satisfaction), C(Concern), W(Weakness)와 D(Deficiency)를 받게 됨.

<표 9> 공학인증 기준별 인증 판정 종류

인증 판정 종류	내용
만족 (S : Satisfaction)	• 인증 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보완 (C : Concern)	• 현재는 인증 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미래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미흡	• 인증 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프

(W : Weakness)	<p>로그래밍의 질이 보장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평가 전에 미흡 사항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결함 (D : De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 각 인증 기준별 부족(W)과 결함(D) 판정에 따라 인증 판정 결과와 인증 유효 기간이 달라지며 최대 6년까지 인증이 가능함.
- ¹ 중간평가(IRv)에서 이전평가의 W사항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W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 CAV/CAR 판정함.(2020년까지 유보)
- ² 조건부인증평가(CARv)에서는 운용상 평가 결과를 미흡(W) 또는 결함(D)만 판정하고, 보완(C), 만족(√) 판정을 할 수 없음.

<표 10> 공학인증 평가 종류

인증 평가 종류	인증 기준별 인증 판정	W와 D가 없는 경우	W는 있으나 D가 없는 경우	D가 있는 경우
	이전 평가 종합 판정			
신규평가 (IPRv : Initial Program Review)	이전 평가 없음	NGR	IV or IR	NA
중간평가 (IRv : Interim Review)	IR	RE	RE or CAV/CAR ¹	CAV/CAR
	IV/CAS	VE	VE or CAV/CAR ¹	CAV/CAR
정기평가 (GRv : General Review)	이전평가결과와 무관	NGR	IV or IR	CAV/CAR
조건부인증평가 (CARv : Conditional Accreditation Review)	CAV/CAR	- ²	CAS	NA

- 인증 유효 기간 후 차기 평가시 평가 방법을 방문 평가(Interim Visit)로 할 것인지 서류 평가(Interim Report)만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종류가 IR(Interim Report)과 IV(Interim Visit)로 나뉘며, 인증 판정 종류에 따른 인증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1> 공학인증 평가에 따른 인증 기간

종합판정 종류	인증기간 (년)
차기정기평가 (NGR : Next General Review)	6
중간보고 (IR : Interim Report))	3
중간방문 (IV : Interim Vistit)	3
조건부인증 (CA : Conditional Accreditation)	3(2년 내 재평가)
중간보고필 (RE : Report Extended)	GR 시점까지
중간방문필 (VE : Visit Extended)	GR 시점까지
조건부인증해소 (CAS : Conditional Accreditation Settled)	1
인증불가 (NA : Not to Accredit)	-

※ 위 인증 유효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평가 대학의 전체적인 인증 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유효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특징

○ 한국공학교육인증 시스템

-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의한 인증은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희망대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됨.
-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
- 경직된 인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을 규정화, 고전화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공학 프로그램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노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개선하도록 유도함.
- 인증 결과에 따른 대학/프로그램의 서열화는 지양하며, 인증 프로그램(소속 대학)의 목록만을 공개함.

○ 공학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국내 기업에 지원할 때 서류전형 우대 및 면접전형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음.

○ 2007년 6월, 국제적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 정회원에 가입됨에 따라 ABEEK 인증 졸업생은 정회원국 사이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됨.

○ 인증의 목적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함.
- 해당 교육 기관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세분화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함.
- 공학 교육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을 장려하며,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함.

-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여함.
- 인증 평가는 인증 평가 년도 전년도에 있는 인증 설명회로부터 시작되며, 인증 설명회 이후 인증 평가 신청을 받아 대상 교육 기관을 선정함.
- 인증 평가 절차는 매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행되고 있음.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서면평가 → 방문평가 → 인증평의회 → 종합판정 및 재심

- 공학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공학사를 수여하는 4년 이상의 교육 과정으로 다음의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수요 지향 교육 및 성과 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함.

- 1) 프로그램 교육 목표
- 2) 프로그램 학습 성과
- 3) 교과 과정
- 4) 학생
- 5) 교수진
- 6) 교육 환경
- 7) 프로그램 개선
- 8)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 인증 평가 판정은 각 인증 기준에 따라 S(Satisfaction), C(Concern), W(Weakness)와 D(Deficiency)를 받게 됨.
- 인증 평가는 ‘신규평가’, ‘중간평가’, ‘정기평가’, ‘조건부인증평가’로 나누어짐.

2. 자격

2.1. 국내

2.1.1. 국가자격

2.1.1.1. 문화예술교육사

(1) 문화예술교육사 심사

1) 심사 개요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임.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총괄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실제 시행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2) 심사 배경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확대와 문화예술교육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법령에 자격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격제도를 도입함.

3) 심사 목적 및 목표

- 문화예술교육사는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함.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분야는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국가무형문화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4) 심사 절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절차

-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 취득 경로는 일반인과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로 나뉨.



[그림 7] 일반인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경로



[그림 8]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경로

5) 심사 기준

- 자격은 1급, 2급으로 구성됨. 자격 취득 방식은 2급의 경우,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2급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진흥원에서 실시하

는 연수교육 140시간을 이수한 경우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도 2급 자격이 발급됨.

- 1급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경력자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나 사회문화예술교육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경력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1급 교육과정은 5과목이며 총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교과목 내용이 같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과목으로 봄.

〈표 12〉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90시간 (3과목)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관리실무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	60시간 (2과목)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I	

- 2급 교육과정은 15과목 40학점이며 총 6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급 교육과정의 교수역량 교과목과 예술전문성 교과목이

같지 않아야 함.

<표 13>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2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6학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30학점)



미술

- 미술 교육론
- 미술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용

- 무용 교육론
- 무용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화

- 영화 교육론
- 영화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진

- 사진 교육론
- 사진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 디자인 교육론
- 디자인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 · 음악 교육론 · 음악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극 · 연극 교육론 · 연극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악 · 국악 교육론 · 국악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화·애니메이션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예 · 공예 교육론 · 공예 교수학습방법 (유아,초등,중등,일반) ·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16년 3. 1. 기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개정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021.3.31 까지 아래 표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표 14> 2급 문화예술교육사 대체 교과목

교과영역	신 교육과정	구 교육과정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개론	• 문화정책 및 문화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분야별 교육론	예술교육의 이해 • 분야별 교육론 • 교육학개론 • 교육평가
		분야별 교수학습 방법	• 교육심리 • 분야별 교수학습 방법 • 분야별 창의적 방 법을 통한 교수법 • 분야별 감상 및 비평 • 커뮤니케이션기법 • 예술교육 상담
		분야별 교육프로그 램 개발	• 분야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교육교 재·교구개발 및 활용 • 통합 예술교육 프 로그램 이해 • 기획 제작 및 시 연(현) • 문화행사기획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없음	

○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림 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 대상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표 15〉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1급 문화예술교육사	<p>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p> <p>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p>	<p>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p>

	<p>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라 한다)</p> <p>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급 문화예술교육사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p>
	<p>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p>	<p>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p>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사회문화 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위 표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6>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

구분	경력 내용	경력 인정 기준
제1군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가. 주근무시간 ⁵⁾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주근무시간 / 4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	1. 2012년도까지의 경력 가. 연간 80시간 ⁶⁾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8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나. 연간 8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p>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p>	<p>1) 12개월 × (연간 수행시간 /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연간 수행시간 / 12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p>
--	--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5)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함.
- 6) 제2군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함.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특징

- 자격의 특성상 일반인 외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의 자격 취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는 경우 및 자격 취소에 관한 항목이 제시되어 있음.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 심사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함.

<표 17>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 분야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미술, 무용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사진,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연극, 영화

2) 심사 절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시설 중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관계자 인터뷰 심사,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대상으로 선정됨.

3)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

- 기존 교육원 및 신규 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표 18>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공모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기존 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신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서류 심사, 관계자 인터뷰 심사, 현장 심사(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선정함.
- 광역시 수와 인구 분포 등을 고려 및 선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표 19>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선정 방법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기존 교육원	서면 심사	인터뷰
신규 기관	서면 심사	현장 심사

- 기존 교육원과 신규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0> 기존 교육원의 지정 기준 및 심사 내용

지정 기준	심사 내용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p>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p>	<p>별표 2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반적 운영 계획 -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방안, 학습지원 시스템,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학습자 모집 인원,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주말반 또는 야간반 운영 여부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 • 신청 기관 재정운영계획(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수입·지출 계획, 교육경비 징수계획 및 산출근거)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 실적
<p>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자 보유 현황
<p>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강의실, 실기·실습시설 현황, 학습자 편의시설 확보 현황 등) 및 장비 보유 현황(실기·실습 기자재 현황 등) <p>※ ‘18년 지정 이후 변경사항 기재, 사진자료 제출 필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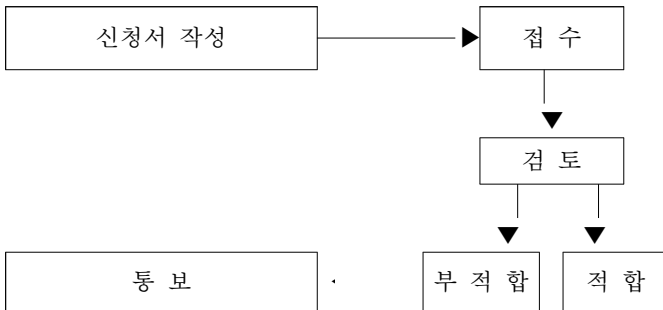
〈표 21〉 신규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심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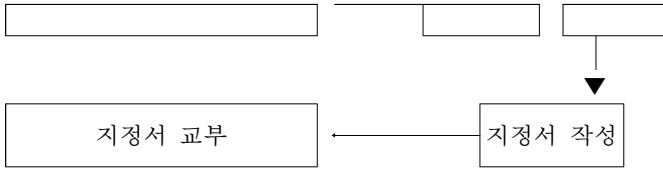
지정 기준	심사 내용
<p>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반적 운영 계획 - <u>〔기관장(총장 등)의 의지 및 운영 비전, 신청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구성 및 운</u>

	<p>영 방향, 운영 조직 및 행정인력, 학습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 교육과정 운영 방안,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학습자 모집 인원,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주말반 또는 야간반 운영 여부 등 교육 기능 수행 관련 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관 재정운영계획(문화예술교육사 교육 기관 수입·지출 계획, 교육경비 징수계획 및 산출근거) • <u>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u>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전공 관련 학과 운영 실적 등)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자 보유 현황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강의실, 실기·실습시설 현황, 학습자 편의시설 확보 현황 등) 및 장비 보유 현황(실기·실습 기자재 현황 등) <p>※ 사진자료 제출 필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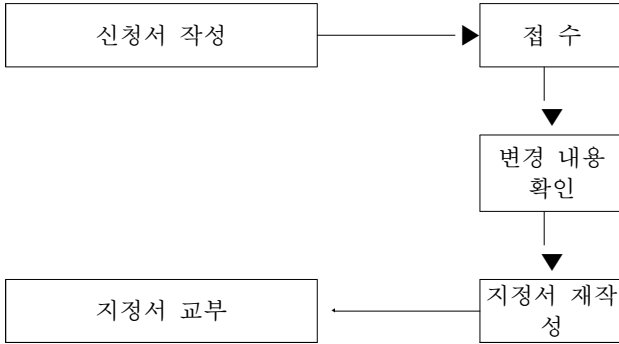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 신청 절차

1.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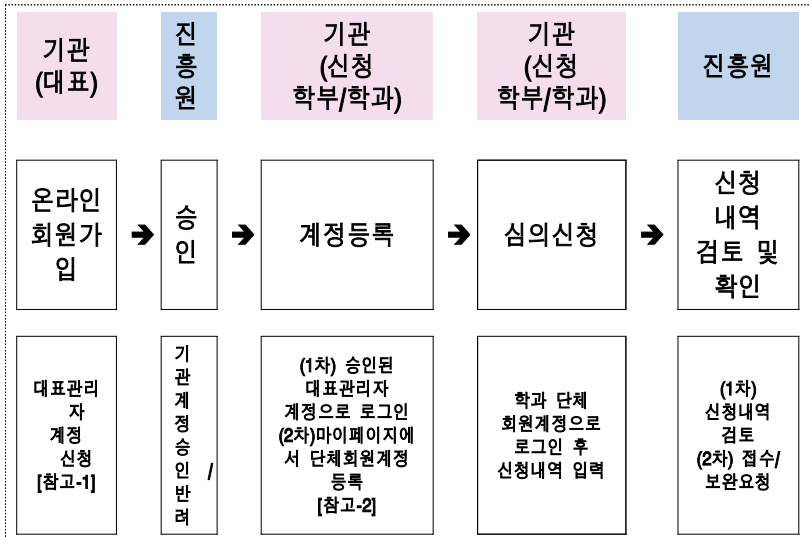




2. 변경신청(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외의 변경 시)



4) 특징



[그림 10] 교육과정 및 전공학과 신청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를 통해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음.
- 기존에 지정되었던 기관은 2년 뒤 다시 공모에 지원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되어야 지정기관을 유지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및 전공학과 인정 심의
- 교육과정 및 전공학과 신청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음.

5)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 기준표는 다음과 같음.

<표 2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 기준표

심사기준 (배점)	측정지표(배점)	세부 심사내용
내용의 체계성(60)	교육과정 일치도(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수요목 일치 여부 - 50% 미만 동일할 경우 10점 부여 - 50% 이상 ~ 80% 미만 동일할 경우 20점 부여 - 80% 이상 동일할 경우 30점 부여
	교과내용 적합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세부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재구성 - 교육목표, 세부교수요목, 강의 순서, 평가방법, 수업 진행방식, 과제 등 • 교재, 참고자료 등의 활용도

		<p>및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은 실습기관에 대한 구체적 적시 여부 및 실습기관의 적정성 판단 포함
인력의 전문성(30)	전공분야 적합성 및 강의·연구실적(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예술분야 학위취득 여부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과목 강의 경력 여부 •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실적
	문화예술 교육 활동(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 •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 자문, 컨설팅, 모니터링 등 활동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회, 협회 활동 • 문화예술교육 관련 세미나, 연수, 워크숍 등 참여
운영 적절성(10)	개설체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개론 - 분야별 교육론 / 분야별 교수학습방법 /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순으로 개설하였는지 여부 <p>※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의 경우 동시 개설 가능</p>
	수강인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당 수강인원을 40명 이하로 함 • 단, 현장의 이해와 실습의 경우 25명 이하
	개설준비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작성의 성

		실정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대학의 의지
--	--	---

-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으로 인정됨.

6) 특징

- 기존에 인정받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 중 개설 시기, 해당 학과 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후의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전자공문으로 해당 기간 안에 운영 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2019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및 전공 학과 인정 심의는 연1회 진행됨.

2.1.1.2. 보건교육사

(1) 보건교육사 심사

1) 심사 개요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대상자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보건과 건강에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고 태도 및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인 보건교육사를 지정하기 위한 제도임.

2) 심사 배경⁷⁾

7) 대한보건교육사협회 <http://www.ches.or.kr/>참조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양성하기 위해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구체적 배경은 다음과 같음.
- 국민 건강권 선언(“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회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국민건강증진법 제 12조 1항).
- 2003년 9월 29일 법률 제6983호로 국민건강증진법률 제 12조 2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인 보건교육사를 국가자격으로 하여 도입(보건교육사 제도는 1999년부터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 2010년 3월 27일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첫 시험).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
-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사업을 보건교육 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교육사제도를 도입함(최승희, 2013).
- 보건교육사는 주로 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관리, 개발, 건강증진 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함.



[그림 11] 보건교육사의 활동 영역

<표 23> 보건교육사의 보건교육 업무

구분	내용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3.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4.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6조,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국민건강증진

구분	내용
	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관련 과(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단, 정무직공무원 제외)
6.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7. 모자보건기구	「모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8. 보건 관련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 등을 받아 등록된 보건 관련 시민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9. 생활체육 지도자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일반 건강운동지도 관련 활동을 한 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단, 민간체육시설의 개인지도자(personal trainer)로 근무한 경우는 불가
10. 영양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영양 및 식생활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11.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과위생사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구강건강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구분	내용
12. 교육업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한 경우
13. 연구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14. 기타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

3) 심사 절차

○ 심사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4> 보건교육사 자격 취득 절차

구분	절차	내용	시행처
자격 관리	① 교과목 심사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 격 관리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 강증진법 제7조의2 관련 별표 4)’의 유사과목 심사 - 접수대상: 대학/학과 - 결과확인: 사무국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자격관리 현황 > 유사과목 목록 - 결과적용: 해당 대학/학과의 졸업(예정)자 대상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인 시 적용 ※ 대학/학과의 유사과목과 개 인 성적증명서의 이수과목 명 칭이 일치하여야 함	한국건강 증진 개발원
	② 시험 공고	시험 90일 전 공고	한국보건 의료인국 가시험원
	③ 사전 심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 심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완료 후 시험 응시여부 확인(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응시 자격 사전 심의 합격자 -방문 응시원서 접수: 응시자	
④ 원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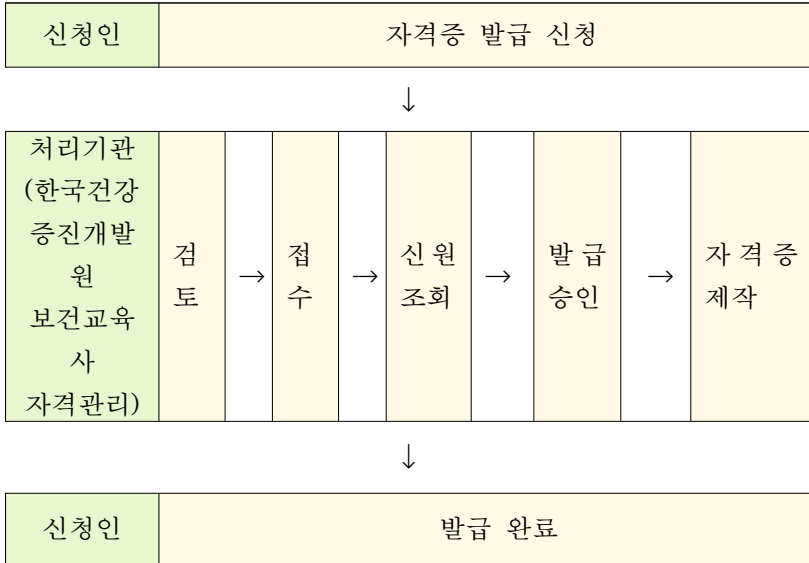
		격 사전심의 미접수자 포함 개인별 응시자격 확인 병행	
	⑤ 시험 시행	시험방법: 필기시험 시험과목: 1급(3과목), 2급(8과 목), 3급(4과목) 합격기준: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	
	⑥ 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 페이지	
자격관리	⑦ 자격증 신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 사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한국건강 증진 개발원
	⑧ 결격사유 조회	보건교육사 결격사유 유무 조 회 -조회기관: 등록기준지 기준 각 시/구/읍/면	
	⑨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 교육사 국가자격증 발급	
	경력심사 (해당자)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2급 승급자격 관리 -보건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에 만 3년 이상 종사 여부 심사 - 접수대상: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 발급연월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자	

○ 발급(자격증 교부)절차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심사 인정자(보건
교육사 2급 승급 대상자)중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2

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자격증이 발급됨.

<표 25>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5) 심사 기준⁸⁾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기준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응시자격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행함.

<표 26>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구분	내용
1급(①, ②번 중 하나)	①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 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

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참조 <https://www.khealth.or.kr/khe>

	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1, 2급은 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3급은 필수 5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표 27>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 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 의사소통, 보건 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상

선택과 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 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 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 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 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p>※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이수 여부(유사과목 인정결과는 대 학/학과별로 차이가 있음)</p> <p>① 법정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p> <p>② 법정교과목에 아래의 명칭이 붙은 교과목 “~학, ~(개, 원)론,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Ⅱ, ~(및)실(험, 습, 무), ~(및)연습“</p> <p>(예) 해부생리: 해부생리학, 해부생리론, 해부생리개론, 해부 생리원론 등</p> <p>③ 졸업(예정)한 대학/학과에서 교과목 명칭은 다르나 내용이 동일하여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목(학점은행제는 유사 과목 심사 제외. 반드시 교과목 일치)</p>		

-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교육 업무경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1, 2, 3급에 따라 시험 과목이 다르며 각각 다음과 같음.

〈표 28〉 보건교육사 시험 과목

구분	시험 과목
보건교육사 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 시 합격.
- 다음의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국가자격증을 교부함.

〈표 29〉 등급별 자격 기준

구분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6) 특징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관리 및 시행업무는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고 자격관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담당한다. 보건 교육사 자격관리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 조희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사 경력 및 유사과목 심사 3. 보건교육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보건교육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관리 5. 보건교육사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 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 1급과 3급은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격증임.
- 하지만 보건교육사의 1, 2, 3급수별 역할이 정확하게 나뉘져 있지 않고 현장에서의 역할 및 기능이 모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가자격제도로 평가되어 옴.
- 각 대학의 과목명이 다양하고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려면 양성 기관(대학)의 유사과목 심사 신청이 먼저 전제되어야 함.
- 기관의 유사과목 심사 신청 시 학점은행제는 제외됨. 학점은행제는 유사과목 심사 신청 자격이 안 되며 반드시 명시된 이수 교과목명과 일치해야 함.
- 자격증 발급은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완료됨.

- 시험 자격은 전공 대학, 학과에 상관없이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자라면 중복되는 교과과정을 통해 보건교육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김.

(2) 보건교육사 양성 기관

1) 심사 개요

- 보건교육사 양성 기관으로는 대학 기관(사이버대 포함), 학점 은행제가 있음.
- 민간단체 양성 과정도 있었으나 이는 201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임.
- 양성 기관(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시험 대상자의 시험 응시자격 인정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양성 기관의 유사 교과목 심사 신청과 심사임(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학 기관이 신청. 교과목명이 같을 경우 신청 안 해도 됨).

2) 심사 목적 및 목표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후 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 직업인인 보건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함임.
- 이러한 보건교육사 시험에 응시 자격에 필요한 지정 교과목 이수 인정을 위해 양성 기관에서는 교과목명이 다를 경우 미리 교과목 심사를 신청, 인정 받아야 함.

		4부	운영했던 것으로 운영학기, 교수명 제시되어 있어야 함. 최신 강의계획서 제출
3	해당 학과 교육과정 편성표(커리큘럼)	과목당 총 4부	교과목 설명이 있어야 함
4	기타 동일 교과목 입증자료(선택사항)	과목당 총 4부	심사에 필요한 교재목차, 실습일지 등

5) 특징

- 기관 운영과 교육, 교사의 질에 대한 평가 등 양성 기관 자체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없음.
- 시험 응시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인정을 위한 교과목 심사만 있음.
- 일 년에 두 번 운영되며 재평가 제도 역시 없음.

2.1.1.3.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심사

1) 정의

-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는 개인

자격 제도가 있음.

- 1970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시행됨. 198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으로 개정하고, 1999년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함. 국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과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교육의 질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수요 규모에 상관없는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3급 제도를 폐지하게 됨. 법률 제 14923호로 개정되기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는 3급 취득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한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⁹⁾

<표 30>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주요 개정 내용

1970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 도입
197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정(양성 교육)」 개설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실시' 98년 민간위탁 결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3년	5개 권역별 6개 교육기관에서 교육
1977년	명지대, 경남정보대학 등 2개교로 축소
1983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설(1, 2, 3급으로 분류) 1급-대학(원) / 2급-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자 / 3급-양성 교육 이수자

9) 2019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급 국가시험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참조함.

1997년	「1급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시험체계 도입 자격 기준이 학과 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변경
2002년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범위확대 원격대학,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에서 2급 취득 가 능해짐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시험 시행
2008년	과목별 이수학점 변경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규정(실습 기관)으로 인한 사 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등의 법적 기준 확립,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에 관한 법적 기준 규정
2019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3조①, ② [별표 1] 제2 호 일부개정 : 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변경, 실습 기관 선정의 법 적 근거 조항 신설 기관실습 및 실습세미나 법적 근거 조항 신설, 실 습시간 기준 변경

3)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제도의 목적

-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는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
고 사회정의와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임. 사회복지 현장
의 수요에 맞지 않는 초과 공급을 막고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 수준 및 역량의 차이를 반영한 등급 체제
로 개편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을 위해 자격 심사를 개편해 왔음. 또 사회복지사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관리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사
회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며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진행함. 따라서 2급 자격증 심사 및 1급 자격시험에 대한 운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하고 있음. 또 1급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 전문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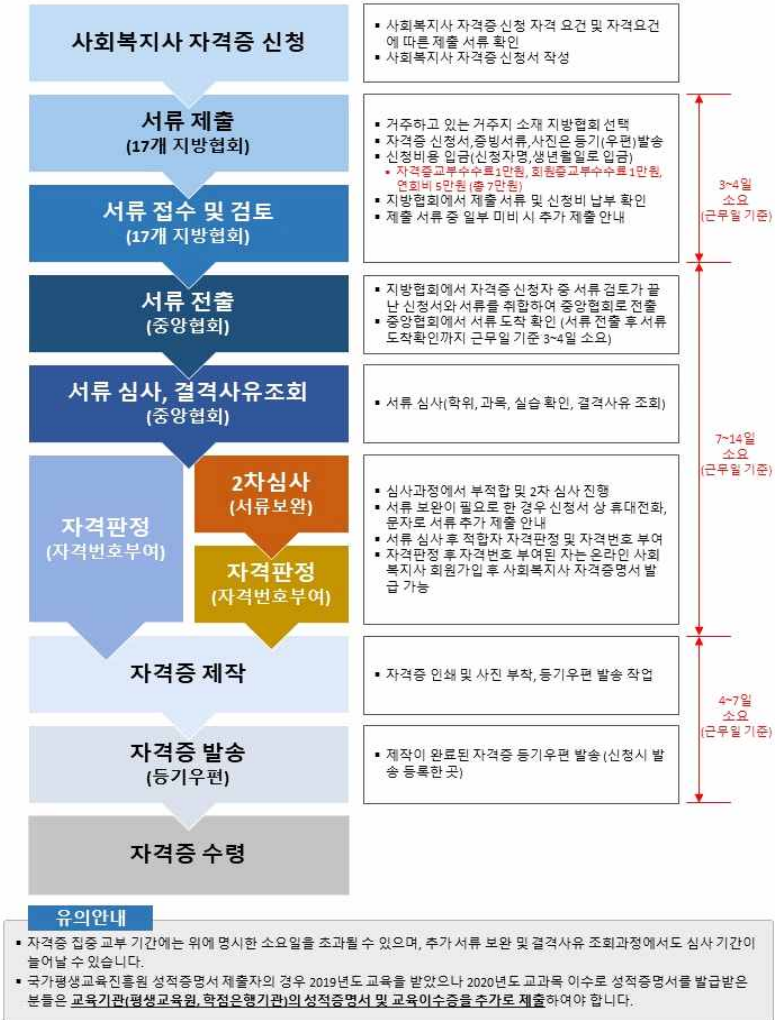
4)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과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 지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함. 구비서류 검토 및 보완, 신원조회를 마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해 줌. 단,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취소 또는 무효처분 됨.



[그림 13]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절차(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림 15]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절차(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5)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재 1급과 2급 자격으로 나뉨.
- 1급 자격증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알린 교과목을 일정 기준 이상 이수해야 하며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을 합격해야 함. 1997년 이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기준을 학위취득 제도에서 시험 제도로 변경, 2003년 1회 자격시험을 시행함.
- 2급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알린 교과목을 일정 기준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 가능함.

<표 3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0. 12. 8.>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등급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3])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상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상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2021년 2월 28일까지 동등 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상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1년 2월 6일)까지의 기간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p>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p> <p>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나. 합격자 결정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p> <p>1) 시험의 합격 결정에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p> <p>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시험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하며, 응시 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자면 최종 불합격 처리함</p> <p>3)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p>
<p>사회 복지 사 2급</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상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위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p>

	<p>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p> <p>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p> <p>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	--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상 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내줄 수 있음.

6) 사회복지사 자격 내용

- 1급 국가시험의 시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총 8영역이며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 결정됨.

<표 32>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 및 문제 수(배점)

과목	영역	문항	시험방법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6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영역별 30문항 총 240문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90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90문항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업법 시행규칙에서 알린 교과목을 아래의 기준 이상 이
수해야 함.

<표 33>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 과목(학점)	
		대학·전문 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 개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10과목 30학점	6과목 18학점

	<p>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p>	<p>(과목당 3학점) 이상</p>	<p>(과목당 3학점) 이상</p>
<p>선택 과목</p>	<p>가족복지론,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 풍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 지도 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 건강론,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p>	<p>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p>	<p>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p>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인정함.
- 필수 이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실습세미나 과목이 있으며 기관실습은 16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함. 기관실

습 실시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여야 하며 기관 선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고지됨. 실습세미나의 경우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7) 특징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알린 교과목 중 일정 기준 이상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사회복지 교과목이 개설된 사회복지 교육기관, 즉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학점은행제와 같은 학위 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외국대학에서 사회복지학 혹은 사회 상업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과 같다고 인정할 시 자격증 교부 가능.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예정자 자격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됨.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련 기관에서 일정 수련을 받은 사람은 의료사회복지사 혹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 분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함.

<표 3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0. 12. 8.> 사회복지사의 영역별 자격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영역	자격 기준
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나.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 형성과 전문지식 습득을 주 내용으로 함.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사회복지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재교육을 통해 자격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자격취득과 유지를 위해서 도덕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증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협회 측에서 대상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함.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또 자격은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 혹은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음. 이는 분명 직업군의 관련 업무와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사회복지사 양성기관

1) 사회복지사 양성기관 -학위과정

-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에서 교과목 이수해야 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 및 사회복지 관련 이수 교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사회복지학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이 있으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해당 교과 이수 가능함. 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1600-0400)에서 학점 인정되는 기관을 통해야 함.

2) 사회복지사 양성기관 -비학위과정

-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복지사 양성기관에서 민간인¹⁰⁾과 공무원 대상 비학위 과정으로 영성 과정을 운영해 왔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2019.1.1. 시행)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폐지와 2020년 시행예정인 사회복지학 교과목 및 현장실습 강화에 따라 2019.12.31.까지 운영한 후 폐지됨.

2.1.1.4.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심사

1) 심사 개요

- 요양보호사는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10) 사회복지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심사 배경

-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하여 노인 부양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따라서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
-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기능과 지식 면에서 더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국가 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임.

3) 심사 목적 및 목표

- 요양보호사의 업무
 -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함.

<p>-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제공</p> <p>-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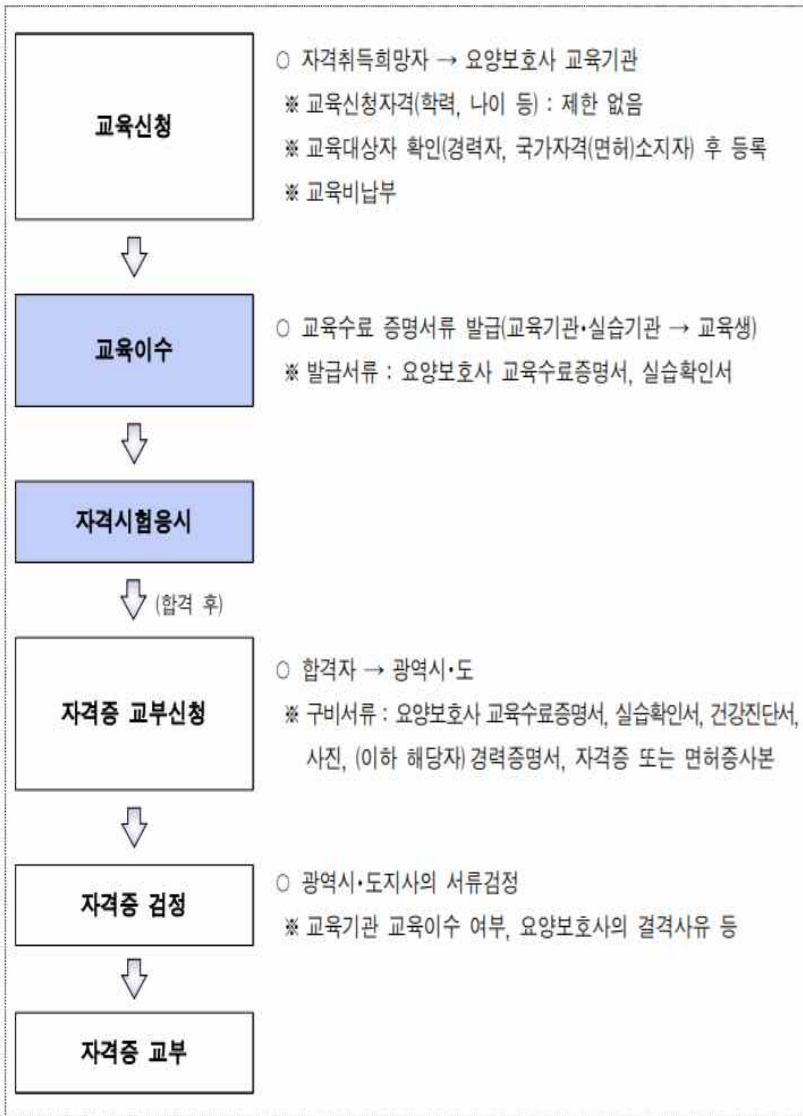
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 요양보호사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전문병원 제외), 재가 노인 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4) 심사 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과 실습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시험은 연 3회 실시, 종전에는 시험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 시험 시행)할 수 있음.



[그림 15]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절차

5) 심사 기준

-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음.

〈표 35〉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 가	140	80	40	20
	요양+재 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 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 사	50	32	10	8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 사, 간호조무 사	50	31	11	8

○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교육과정(승급)은 다음과 같음.

〈표 36〉 요양보호사 승급 교육과정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인 자

○ 시험 응시 자격은 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자임.

○ 필기·실기 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

〈표 37〉 요양보호사 시험 과목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요양보호론: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기본 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자격증 신청 및 발급

-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 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 도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6) 특징

- 대학기관이나 학점 은행제가 아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이 유일한 양성 기관임.
- 보건 계열 국가 자격 소지자의 경우 교육시간 일부를 면제해 줌.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1) 심사 개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개인 사업체, 법인 운영, 위탁 운영으로 나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기

관 관리·감독 권한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도지사가 지정, 운영,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아래 운영, 관리됨(2010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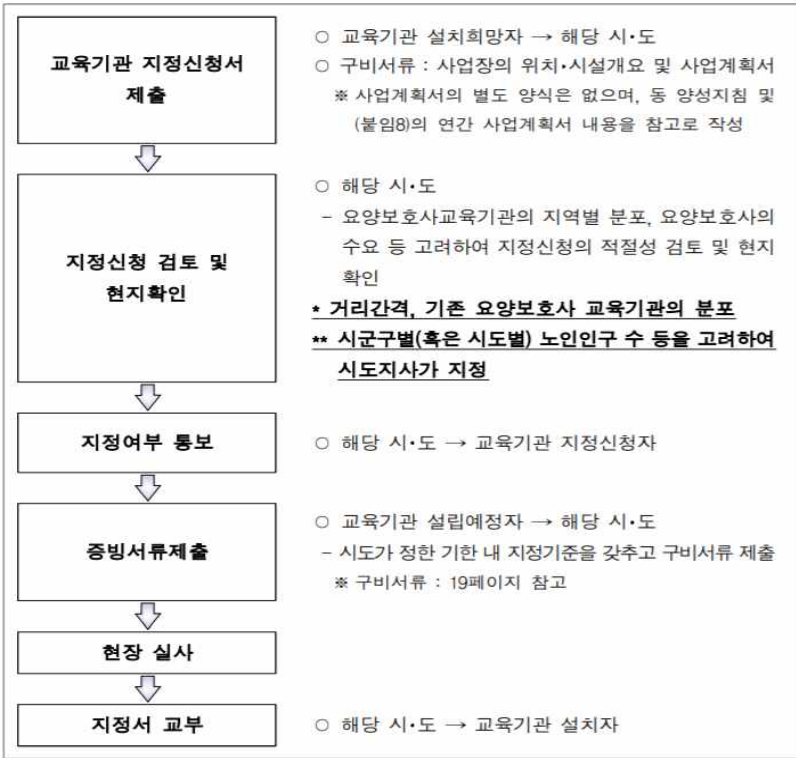
2) 심사 목적 및 목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는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목적이 있음.

1. 교육기관에 적절한 인력배치
2. 시설기준을 강화
3. 보다 질 높은 수업 제공

3) 심사 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함.



[그림 16]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

4)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

○ 요양보호사 지정 교육기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함.

<표 38> 교육기관 지정 구비 서류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 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교육기관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함.

<표 3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명칭

- '00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 기재하되, 간판 하단에 00광역시 도 제00호(지정번호)를

병기. 예) 00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경기도 제2호

-동일한 시 도에서는 기존에 설립된 요양보호사교육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부처명),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 단체의 명칭(줄인 명칭 등 유사명칭 포함)을 포함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 강의 시간

· 교육 가능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점심시간 1시간은 교육 가능 1일 최대 시간에 미포함시킴.

· 강의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이 원칙(수강생 교육기간 의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이 외에도 시설 기준, 학습교구 기준, 직원배치 기준, 현장실습기관, 실습연계제한, 수강등록, 수강료, 수강생 명단 및 시간표, 교육일정 보고, 강의실, 교육내용 및 표준교재, 교육생 관리, 현장실습 운영, 교육과정 수료, 교육기관 운영 전반, 변경지정신청 등 모든 기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교육기관 지정(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점검, 벌칙 및 행정처분은 광역시·도 소관사항임.

〈표 40〉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점검

- 광역시·도지사는 교육기관(실습시설)의 교육과정과 운영 등에 대해서 정기(1회)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함
- 지도 점검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 불법 적발기관 및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지속관리해야 함.
- 시, 군, 구청장은 실습시설이 양성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시설)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실습연계기관에서 제외하여 광역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광역시·도지사는 해당 실습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여타 교육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42조,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 등에 의거하여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지정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특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단계부터 운영까지의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 광역시·도지사에게 의하여 교육과정과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 받음.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낼 수 있음.
- 각종 지침들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도와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질의 제고를 위한 평가와 이후의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교육기관과 실습기관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 있음.

2.1.1.5. 체육지도자

(1) 체육지도자

1) 심사 개요

-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딸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체육지도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 2급,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됨.

2) 심사 배경

-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내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74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생활체육에 관심 증가 및 생활체육 동호인 확대, 체육시설업 운영 등에 따라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7년부터 시행되었음.

3) 심사 목적

- 국민체육진흥과 체력 증진,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목적으로 함.
- 자격 검정은 필기와 실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목에 따라 검정 주관기관이 다름.

4) 심사절차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함.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제외)를 면제할 수 있음.
-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취득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17]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

- 연수 과정은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방법, 지도역량 강화 등 실무역량을 제고함.

5) 심사 기준

○ 체육지도자의 각 자격 종목은 다음과 같음.

〈표 4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1.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봄.

2.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팅,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

는 종목

비고: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봄.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봄.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

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봄.

5.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봄.

○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음.

〈표 4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필기시험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 시험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5과목 선택
2) 실기 구술시험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퀘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 시험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2) 실기 구술시험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퀘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	----

1) 필기 시험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5과목 선택
2) 실기 구술시험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퀘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2. 건강운동관리사

구분	내용
1) 필기 시험	기능해부학(운동역학을 포함한다),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 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病態生理學),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2) 실기 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 측정 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 시험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2) 실기 구술시험	가)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

	<p>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p> <p>나) 장애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p>
--	--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 시험	가) 필수과목: 특수체육론
	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
2) 실기 구술시험	<p>가)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p> <p>나) 장애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p>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 시험	가) 필수과목: 유아체육론
	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
2) 실기 구술시험	<p>가)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p>

	<p>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수,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p> <p>나) 청소년 발육·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p>
--	---

5. 노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 시험	<p>가) 필수과목: 노인체육론</p> <p>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p>
2) 실기 구술시험	<p>가)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수,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p> <p>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p>

-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43>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
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 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검정: 해당 없음 · 연수과정: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가. 학교체육 교사(학교 체육교사였 던 사람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포함한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등 폭력 예방교육 (3시간)
나. 국가대표 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스포츠 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3시간)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프로스포츠 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스포츠 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가. 학교체육 교사(학교 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나. 국가대표 선수(국가 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자격검정: 해당 없음 · 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	·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포츠선수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라. 1급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마. 1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바.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시험과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1급 생활 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려는 사람	
-------	--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p>득 하 려 는 사 랑</p>		
<p>라. 2급 장애 인 스포츠 지도사 자 격을 가지 고 보유한 자격 종목 이 아닌 다른 종목 (별표 1 제 3호의 비 고에서 다 른 종목으 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자격을 취 득 하 려 는 사 랑</p>	<p>· 해당 없음</p>	<p>· 자격검정: 별표 2 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 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p>
<p>마. 유소년스 포츠 지도 사 자격을 가지고 보 유한 자격 종목이 아 닌 다른 종목의 자 격을 취득 하 려 는 사 랑</p>	<p>· 해당 없음</p>	<p>· 자격검정: 별표 2 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 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p>

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5.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자격검정: 해당 없음 · 연수과정: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6.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가.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

<p>고 보유한 자격 종목 이 아닌 다른 종목 의 자격을 취득 하려 는 사람</p>		<p>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p>
<p>라. 2급 생활 스포츠지 도사 자격 을 가지고 보유한 자 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 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자격을 취 득 하려 는 사람</p>	<p>· 해당 없음</p>	<p>· 자격검정: 별표 2 의 필기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 표 2의 실기구술 시험 · 연수과정: 2급 장 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p>
<p>마. 유소년스 포츠지도 사 자격을 가지고 보 유한 자격 종목이 아 닌 다른</p>	<p>· 해당 없음</p>	<p>· 자격검정: 별표 2 의 필기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 표 2의 실기구술 시험 · 연수과정: 2급 장 애인스포츠지도사</p>

<p>종목(별표 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p>		<p>특별 연수과정</p>
<p>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p>	<p>· 해당 없음</p>	<p>· 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표 2의 실기구술 시험 · 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p>

7.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	----	------------------

		연수과정
가. 학교체육 교사(학교 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다.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라. 노인스포츠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

<p>츠 지도사 자격을 가 지고 동일 한 종목의 자격을 취 득 하 려 는 사람</p>		<p>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특 별 연수과정</p>
<p>마. 2급 생활 스포츠지 도사 자격 을 가지고 보유한 자 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 격을 취득 하려는 사 람</p>	<p>· 해당 없음</p>	<p>· 자격검정: 별표 2 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특 별 연수과정</p>
<p>바. 2급 장애 인 스포츠 지도사 자 격을 가지 고 보유한 자격 종목 이 아닌 다른 종목 (별표 1 제 3호의 비 고에서 다 른 종목으 로 보는</p>	<p>· 해당 없음</p>	<p>· 자격검정: 별표 2 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특 별 연수과정</p>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8. 노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가.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람		
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연수과정
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연수과정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연수과정
마. 2급 장애인	· 해당 없음	· 자격검정: 별표 2

<p>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별표 1 제 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p>		<p>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p>
<p>바. 청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p>	<p>· 해당 없음</p>	<p>· 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 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p>

○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44〉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경쟁, 반도핑, 스포츠와 법
- 2) 선수 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 사고 예방
- 3) 지도역량: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운영, 스포츠 의학지식
- 4) 코칭실무: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관리
- 5) 스포츠 매니지먼트: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 2) 건강 및 안전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 3) 지도역량: 시합 상황에서의 전략, 연습 및 시합 관련 계획 수립·운영, 체력측정평가 실무,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령별·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지역 스포츠 활성화,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 경쟁, 반도핑, 스포츠와 법

2) 지도대상 이해 및 선수관리: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건강 및 부상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체육영재의 선발 및 관리,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관리, 스포츠의학 지식,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운동부 관리 및 운영, 스포츠 경기대회 참가, 스포츠 시설 및 용품 관리,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2) 건강 및 안전관리: 건강 및 부상관리, 컨디션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연령별·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클럽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2.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 경쟁, 반도핑, 스포츠와 법
- 2) 건강·체력 측정평가 및 운동부하검사 실무
- 3)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계획 수립·운영
- 4) 주요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 5) 운동손상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운동
-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경쟁, 반도핑, 스포츠와 법
- 2) 선수 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 사고 예방
- 3) 지도역량: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운영, 스포츠 의학지식
- 4) 코칭실무: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관리
- 5) 스포츠 매니지먼트: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는 사항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 2) 장애특성 이해: 인지, 정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지적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시·청각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 3) 지도역량: 장애특성별 운동프로그램, 운동기술과 체력의 진단 및 평가, 통합체육 이해와 적용 방안,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체육지도 방법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지도를 위한 한국수어,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5) 현장실습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 2) 지도대상 이해: 유소년 체육지도 환경 및 유소년 스포츠심리의 이해,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 3) 지도역량: 유소년 발달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수업지도 전략 및 방법, 안전사고 예방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유소년 스포츠 조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5) 현장실습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 2) 지도대상 이해: 노화와 운동, 노인 체육지도 환경 및 노인 스포츠 심리의 이해,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 3) 지도역량: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노화·체력상태·운동능력·주요질환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사고 예방
- 4) 스포츠 매니지먼트: 노인 스포츠 조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 5) 현장실습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필기시험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을 득점해야 함.
- 실기·구술시험은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해야 함.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인정되는 발행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45> 경력증명서 인정 범위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경기지도 경력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17개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

		스포츠단체 또는 학교,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참가 경력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이어야 함.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 선수(상비군)는 불인정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6) 특징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함.
-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을 1회 면제함.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

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동계종목의 경우 실기·구술 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함. 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

(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1) 심사 개요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 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

2) 심사목적

-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목적으로 함.

3) 심사 절차

-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기관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연수기관은 연수기

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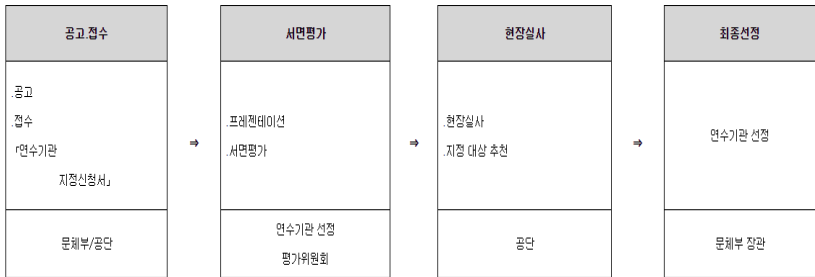
- 공모 및 접수 → 심사(1차/서면평가, 2차/현장실사) → 지정 순으로 이루어짐.

4)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

- 신청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운영 수요가 있어야 함. 또한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임의단체인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기관이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심사(연수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현장실사를 실시함. 신청일(연수기관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간에 대한 현장실사 및 서면평가를 실시함.
-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수기관을 지정함.
- 연수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정부, 체육, 유관기관,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함. 평가위원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함.
- 1차 심사는 서면평가로 응모기관이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토대로 향후 연수시행 계획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함. 권역별·자격별로 응모기관을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함.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후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단, 서면평가 배점(100점)의 70점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동점 기관 발생 시 평가 기준 중 배점이 큰 부문 순으로 고득점 기관을 선정함.

- 2차 심사는 현장실사로 현장실사를 통해 「연수기관지정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 현장실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중에서 결정함. 현장실사 결과 ‘불합격’으로 평가될 시 후보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함.



[그림 18]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 선정절차도

- 서면평가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6> 평가 기준(서면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 점
설치 수요(8)	체육인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인구현황 • 체육 참여 인구현황(생활체육 참여율, 운동 경기부동호인 클럽수 등) * 국가통계, 정부자료 등 최신 공식자료 기준 	2
	체육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체육시설 현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 등) * 체육백서 등 최신 공식자료 기준 	
	체육계열학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체육계열학과 현황 * 응모대상에 적합한 학과 현황도 포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출처 최신 공식자료 기준 	2
	종합수요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수기관 이용수요 종합예측 	2
인프라 (42)	시설 인프라	연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집기 등 연수시설, 현장실습시설, 편의시설 • 대중교통 현황 등 접근 편의성 	20
	인적 인프라	연수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 위주의 연수 및 현장실습을 위한 강의인력 풀 현황 - 다양한 현장전문가, 관련 전임교수 등 	20
		행정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전담 행정인력 현황 	2
프로그램 (50)	연수기 획	연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연수프로그램 수행 가능성 및 발전방안 (표준 연수프로그램 세부시행방안, 분야별 강사진(현장전문가 포함) 구성 등) • 종목별 현장실습 시행방 	30

			안 및 현장실습 종목의 다양성(비인기종목 현장실습 시행 등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의 적절한 배분)	
		협업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연수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 연수 강의, 종목별 현장실습을 위한 협업기관 현황 및 협력 방안 	8
	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운영계획 - 교육과정(주중, 주야, 주말반) 편성 - 총 연수생 규모, 교수·강사당 연수생수 - 예산운영계획, 수익금 공익 목적 활용방안 등 • 현장실습 운영방안 • 출결관리방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료 관리 등 	10	
	연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연수평가(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등) 및 환류계획 • 민원 대응계획 	2	
합계				100

2.1.1.6. 청소년지도사

(1) 청소년지도사

1) 심사 개요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전문자격증임.

2) 심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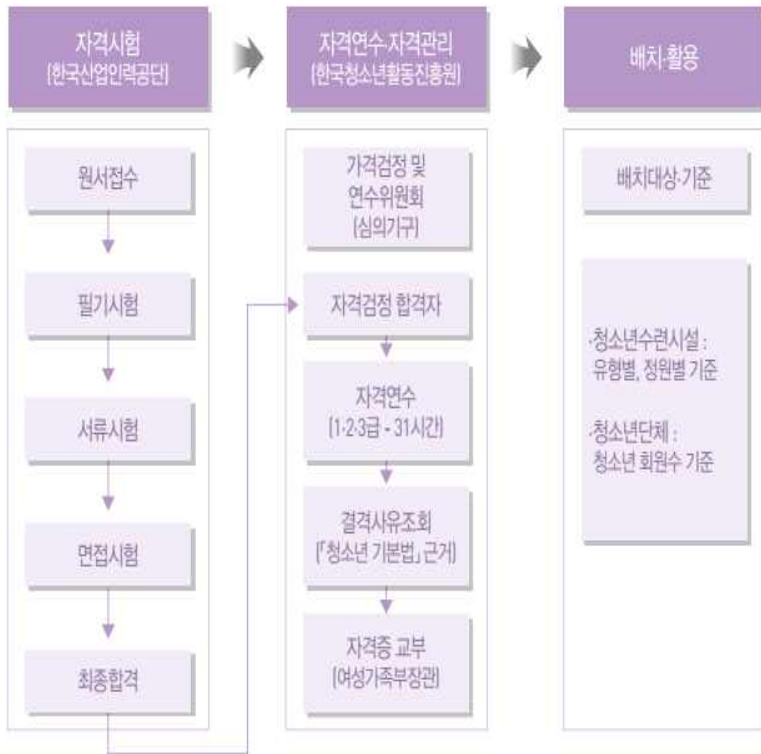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였음.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였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총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 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음.

3) 심사 목적 및 목표

-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가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 자격증을 부여받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 청소년지도사가 되려면 청소년육성 실무 경력을 채운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지도학을 비롯한 청소년학을 반드시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청소년학은 교육학, 심리학 등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전공을 따로 나누지 않으나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청소년지도학분야, 사회교육학분야, 청소년지도행정분야, 청소년상담분야 등으로 나누고 있음.



년지도학분야, 사회교육학분야, 청소년지도행정분야, 청소년상담분야 등으로 나누고 있음.

- 비슷한 종류의 자격증에는 청소년상담사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을 주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음.

4) 심사 절차

○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음.

<표 47>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구분	검정 과 목	검 정 방 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 지도자론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 식 필기 시험	면접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는 면접시 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 식 필기 시험	면접

* 비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그림 1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표 4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기준

구분	합 격 결 정 기 준
----	-------------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비고: 면제 대상자

-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1급 5과목, 2급 8과목, 3급 7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 면접 등을 통해 검정을 시행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함.
- 1급은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2급과 3급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면접을 시행함.
- 다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예정)자나 대학원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은 2급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은 3급 필기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함.

- 매년 1월~3월에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진행되며 국립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됨.
-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연수를 마친 후에는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됨.
- 경찰공무원 가산점 인증 자격증으로 청소년지도사 2, 3급의 경우엔 2점, 청소년지도사 1급의 경우엔 4점의 가산점을 줌.

5) 심사 기준

<표 4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구분	응시자격요건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p>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p>
3급	<p>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p> <p>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

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표 5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제11조 관련)

등급	현행 자격검정 과목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청소년 인권 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 과목 이수자
2급	청소년육성제 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 소 년 심 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 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육성제 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 소 년 심 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 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 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
된 경우도 인정함.

6) 특징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학위 과정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필기 시험을 면제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총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 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자격연수 및 자격증 발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3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아야 함.
- 경찰공무원 가산점 인증 자격증으로 청소년지도사 2, 3급의 경우엔 2점, 청소년지도사 1급의 경우엔 4점의 가산점

을 줌.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를 시행하였음.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시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1회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1항).
- 보수교육 대상자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대상자 중 150여명으로 3.7% 정도이고, 이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됨.

(2) 청소년지도사 양성 기관

- 청소년지도사 양성 기관으로는 대학 기관(사이버대 포함)과 학점 은행제가 있음.
-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함.
- 국내에서는 1991년 11월 7일 최초로 명지대학교에 청소년지도학과가 신설됨.
- 2017년을 기준으로 청소년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포함)은 13개 시·도에서 총 55개교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2~3년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2년제 과정 5개교, 3년제 과정 5개교, 사이버대학 개교로 총 11개교가 있음.
-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28개교로 일반 4년제 대학(21개교)와 방송통신대학(1개교), 4년제 사이버대

학(6개교)가 포함되어 있음.

-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대학이 1개교 존재함.
- 대학원 과정은 일반대학원(10개교)과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원(26개교)으로 구분되고, 총 36개교에서 운영 중에 있음.
-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청소년 관련 학회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연구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회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등이 있음.
- 학회는 아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한국청소년연구’, ‘청소년상담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제연구소,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교육전략21 등에서도 왕성하게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학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독립 연구기관 및 대학 부설, 단체 부설 등의 민간 연구기관은 늘어날 전망이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대학 기관이나 학점 은행제를 통하여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필기 시험이 면제됨.

2.1.1.7.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사 심사

1) 심사 개요

- 평생교육사는 2008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정의함.
- 평생교육사라는 용어가 명명되기 이전에는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전문요원’, ‘교육 프로그램 간사’ 등 평생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지칭하였음.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업무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업무와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

2) 심사 배경

-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자격의 명칭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변경되었고, 기존 1·2등급 자격체계가 1·2·3등급 자격체계로 개편되었음.
- 2007년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양성과정의 이수학점은 2학점에서 3학점으로 확대하였고, 평생교육실습이 비학점에서 학점화되었으며, 평생교육사 1급 자격은 승급과정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음.
- 2013년에는 「평생교육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가 양성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부·재교부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는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사

회교육전문요원으로 양성되기 시작하였고 1986년에 최초로 20명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이 양성된 이후 2019년까지 총 13만 7천여 명의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음.

3) 심사 목적

- 평생교육사가 특정의 상황에 있는 평생학습자로 하여금 평생교육 활동을 통해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있어야 함.
-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는 평생교육사 제도로 개칭되면서 더욱 높은 전문성을 지닌 평생교육 담당자를 요구하게 되었음.
- 기존 사회교육전문요원 양성과정에서 요구하였던 교육과정은 현장의 직무수행과는 깊은 상관관계를 갖지 못하였음.

[그림 20] 평생교육사의 활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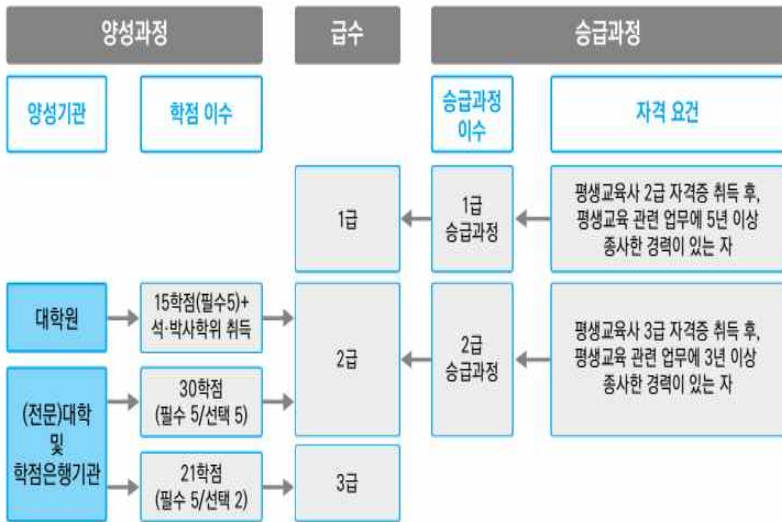
4) 심사 절차



- 평생교육사 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과정은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됨.
- 양성과정은 (전문)대학,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고, 승급과정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임.

[그림 21] 평생교육사 이수 과정

- 평생교육사 1급은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음.



- 2급은 대학원에서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그리고 평생교육사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등 3급은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등이 취득할 수 있음.

<표 51> 등급별 자격요건 요약

구분	대상자		이수과정(학점)	이수기관
1급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1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급	학위 과정	대학원 재학생	15학점(필수5)	대학원(석/박사과정) 이수

			+ 석/박사 학위 취득	과목에 한함)
		(전문)대학 재학생	30학점(필수5/ 선택5) + 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학점은행기관
	비학위 과정	(전문)대학 졸업생	30학점(필수5/ 선택5)	(전문)대학(시 간제등록 포함),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3급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학위 과정	(전문)대학 재학생	21학점(필수5/ 선택2) + 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학점은행기관
	비학위 과정	(전문)대학 졸업생	21학점(필수5/ 선택2)	(전문)대학(시 간제등록 포함),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
고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
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임.

- 2급은 선택 5과목,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

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평생교육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 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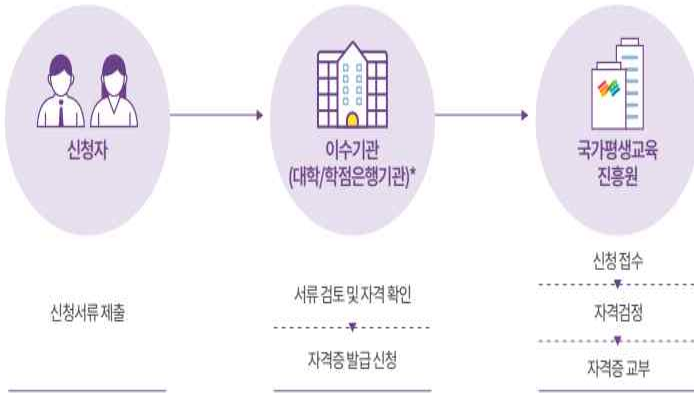
<표 52>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선택 과목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그림 2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5) 심사 기준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표 53>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구분	대상	비고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2급 + 5년 이상 + 1급 승급과정 이수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① 석사 이상 + 15학점 이수 ② 대학 학위 + 30학점 ③ 대학졸업 + 30학점 가. 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p>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p> <p>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p> <p>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p>	<p>다. 학점은 행기관 ④ 3급 + 3 년 이상 + 2 급 승급과정 이수</p>
3급	<p>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p> <p>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p>	<p>① 대학 학 위 + 21학점 ② 대학 졸 업 + 21학점 가. 대학 나. 지정양 성기관 다. 학점은 행기관 ③ 2년 이상 + 3급 승급</p>

	<p>다. 학점은행기관</p> <p>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p> <p>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p>	<p>과정 이수</p> <p>④ 1년 이상 + 3급 양성 과정 이수</p>
--	--	---

6) 특징

-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제정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자격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부·재교부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함.
- 평생교육사는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됨.
 - 양성과정은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는 과정이고, 승급과정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임.
 - 평생교육사 1급은 2급을 취득 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해야 하며, 평생교육사 1급 승급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음.

(2)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

○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으로는 대학 기관(사이버대 포함)과 학점 은행제가 있음.

- 전국 304개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있으며, 전체의 70.4%인 225개 기관이(전문)대학 및 대학원이고, 25.0%인 76개 기관이 학점은행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임.
-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 87개(28.6%), 경기 52개(17.1%)로 인천 8개(2.6%) 등 수도권에 전체의 48.4%인 147개 기관이 집중되어 있음.

울산의 경우 양성기관이 없으며, 제주의 경우 1개 양성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 지역간 격차가 있음을 볼 수 있음.

<표 54>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대학원	일반대학원	8
	특수대학원	21
	대학원대학	14
대학	대학	126
	산업대학	1
	전문대학	37
	원격대학	18
학점은행기관	원격기반	32
	출석기반	43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기타		2
계		304

비고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대학으로 분류
2. 기타유형: 백석예술대학(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한국사학진흥재단(폐교대학 관리)
3. 해당 자료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edu.nile.or.kr/>) 홈페이지 가입기관에 한함.

- 「평생교육법」 제24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 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할 수 있음.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유형별로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일반평생교육시설이 2018년 2,279명, 4년 동안 9,063명(31.5%)으로 평생교육사를 가장 많이 양성하였고, 이어서 방송통신대학교가 2018년 1,397명, 4년 동안 6,360명(22.1%)을, 대학이 2018년 1,098명, 4년 6,360명(22.1%)을 양성하였음.
- 양성과정을 크게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보면, 2018년에는 대학, 대학원 등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4,431명(65.3%)의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어 정규교육기관이 평생교육사 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2.1.1.8. 한국어수어교원

(1) 한국어수어교원 심사

1) 심사 개요

- 한국어수어교원은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함.(시행 2016.08.04.)
-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회에서 한국수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 심의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함.

2) 심사 목적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3) 심사 절차

-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등급 순으로 1급, 2급으로 구분됨.

[그림 23] 한국수어교원 자격 등급

-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연 2회 실시 / 3월, 10월)

- 대학(원) 및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교원 자격 관련 법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의함.



[그림 24]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절차

- 개인 자격 심사(연 1회 실시 / 11월)
-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 신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해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함.

- 개인 자격 심사 신청자의 적정 교육과정·교과목 이수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함.
- 2020년부터는 연 2회 실시 예정

4) 심사 기준

-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등급 순으로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이수과정은 학위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됨.
- 2급은 (전문)대학,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등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질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취득하는 과정이고,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일정 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하게 됨.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120시간을 이수한 이후 보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과 응시인원에는 제한이 없음.
- 단,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라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일 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의 이수 기간 종료일이 응시일 전이어야 함.)
- 각 영역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모든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 시각·뇌병변·지체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와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원서 제출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편의를 제공함.

<표 55>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영역	배점	검정 방법
1.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70점	가. 수업계획안 평가 나. 강의계획서 평가 다. 그 밖에 교습 동영상 평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130점	
3.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100점	
총점	300점	

비고

1. 농인인 응시자의 경우 제1영역 한국수어학에 한정하여 검정하며, 그 배점은 70점으로 함.

<표 56> 시험 영역(「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시험 영역	평가 내용
1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2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 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한국수어 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한국수어 이해, 한국수어 표현
3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안, 수업 실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강의 계획, 단원 구성 계획,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내용 구성, 평가 방법 등 한 차시 교수·학습 계획 수업 지식, 수업 설계, 학습 환경 조성, 수업 실행, 교육 현장의 수어 구사력 등*

* 위 표에서 * 표시한 ‘수업 실연’ 영역은 시행령 [별표 2]의 “검정 방법: 다. 그 밖에 교습 동영상 평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해당함.

<표 57>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
				학부 전공	학부 비전공	
1	언어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	3학점	6학점	6학점	-

	및 교 육 기 초	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 국 수 어 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6학점			15학점
3	한 국 수 어 교 육 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12학점	6학점	9학점	35학점
4	한 국 수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9학점	-	3학점	25학점

	어 실 제	한국수어회화				
5	농 문 화 와 농 사 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 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 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 어정책	3학점	3학 점	3학 점	15학점
6	한 국 수 어 교 육 실 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 국수어교육 실습	3학점	3학 점	3학 점	30학점
	합 계		36학 점	18 학 점	24학 점	120학 점

비고: 대학, 대학원 또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의 명칭이 위의 교과목과 다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해당 교과목으로 봄.

(2) 한국수어교원 양성 기관

○ 한국수어교원 양성 기관으로는 학위 과정과 양성 과정이 있음.

1) 2급

(1) 학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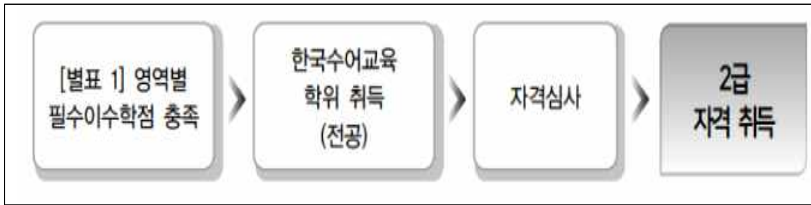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은 수어통역교육학과(또는 전공), 한국수어교원(또는 전공) 등과 같이 학위기에 학과 또는 전공명에 한국수어교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전문)학사, 석·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함.
-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 학부에서 한국수어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 비전공에 해당하는 학점(24점)을 이수해야 함.
- 반드시 학위 취득 이전에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해야 자격 부여 대상이 됨.

영역	과정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전공	석·박사 학위 취득자	
			학부 전공	학부 비전공
1. 언어 및 교육 기초		3학점	6학점	6학점
2. 한국수어학		6학점		
3. 한국수어 교육론		12학점	6학점	9학점
4. 한국수어 실제		9학점	-	3학점
5. 농문화와 농사회		3학점	3학점	3학점
6. 한국수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합 계		36학점	18학점	24학점

[그림 25] 학위과정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그림 26] 2급 학위과정 자격 취득 절차

(2) 양성과정



- 양성과정(1: 검정시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양성과정(2: 경력): 한국수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시기와 상관없이 수어 교육을 한 경력을 모두 인정함.

영역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 언어 및 교육 기초	—
2. 한국수어학	15시간
3. 한국수어 교육론	35시간
4. 한국수어 실제	25시간
5. 농문화와 농사회	15시간
6. 한국수어교육실습	30시간
합계	12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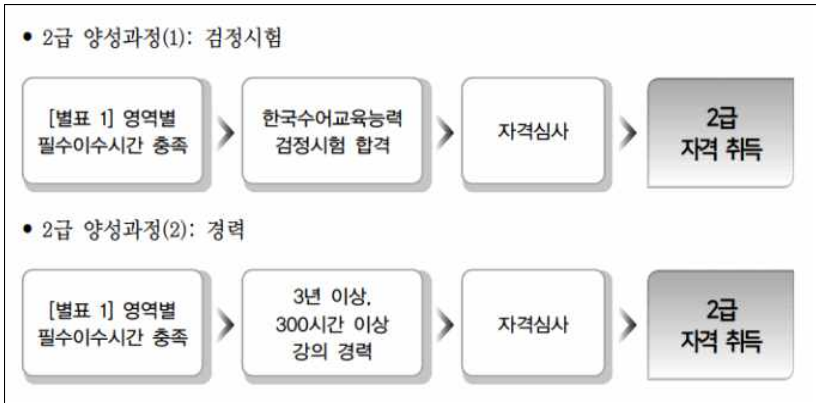
[그림 27] 양성과정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성과정(1: 검정시험)의 경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일 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함.

(검정시험일 이전에 양성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한국수어교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2)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고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영역별 필수 이수시간 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필수이수시간과 선택이수시간을 합하여 반드시 40시간 이상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함.



[그림 28] 2급 양성과정 자격 취득 절차



영역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선택이수시간
1. 언어 및 교육 기초	-	-
2. 한국수어학	5~10시간	
3. 한국수어 교육론	15~20시간	
4. 한국수어 실제	-	10~20시간
5. 농문화와 농사회	5~10시간	
6. 한국수어교육실습	5~10시간	
합계	40시간	

[그림 29] 1급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권장안 예시

- 강의 경력은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일 이후의 경력만 인정함.
- 승급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함.



[그림 30] 1급 자격 취득 절차

<표 58> 한국수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범위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 중, 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

- 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는 연 2회(3월, 10월), 개인 자격 심의는 연 1회(11월) 실시함.

〈표 59〉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승인 현황

번호	구분	지역	기관명
1	대학	경기	한국복지대학원 (한국수어교원과)
2	대학	충남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수화통역교육전공)
3	대학원	서울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국수어교원전공)
4	대학원	경기	강남대학교 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수화언어교육학전공)
5	대학원	경기	안양대학교 글로벌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국수어교육전공)

6	대학원	충남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수어교원학전공)
7	양성과정	서울	(사)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8	양성과정	부산	(사)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9	양성과정	경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경기도수어교육원
10	양성과정	강원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11	양성과정	충남	(사)충청남도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12	양성과정	전남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라남도회 전남수어교육원
13	양성과정	경북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표 60> 한국수어교원 자격 현황(2021년 1월 현재 기준)

연도	심사 신청자 (2급)	합 격 자	불합 격자	합격 률	합격자 유형			
					학 위 과 정	교육 경력	검정 시험	
2018년	41	35	6	85.4%	-	35	-	
2019년	80	54	26	67.5%	5	49	-	
2020년	1회	74	72	2	97.3%	15	26	31
	2회	55	51	4	92.7%	9	30	12
	소계	129	123	6	95.3%	24	56	43
합계	250	212	38	84.8%	29	140	43	

2.1.2. 민간자격

2.1.2.1. 공인노무사

(1) 공인노무사 심사

1) 심사 개요

- 노동 관련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로 노동 관련 법률을 다루고 심판 대리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위한 제도임.
- 공인노무사의 직무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심사 배경

- 1980년대 급증한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됨.
- 관련(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임.

3) 심사 목적 및 목표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심사 절차

-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5) 심사 기준

- 1년에 3차에 걸친 시험이 있으며 모두 합격해야 주어지는 자격 제도임.
-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3차는 면접시험으로 이뤄짐.

<표 61> 공인노무사 시험의 방법 및 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 수
제1차 시험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당 25문항 (총 125문항)
제2차 시험	1	1. 노동법	주관식
	2		4문항
	3	2. 인사노무관리론	주관식 3문항
	1	3. 행정쟁송법	주관식 과목당 3문항
2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 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제2차 시험에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가 있어서 매년 300명 정도 선발됨.
- 합격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2>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기준

구분	합격 기준
1 차	0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시험	<p>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p> <p>○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p>
2 차 시험	<p>○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p> <p>○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p> <p>○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p> <p>※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p> <p>※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p>
3 차 시험	<p>○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p> <p>○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p>

6) 특징

- 공인노무사 양성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에 따라 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대비함.
- 제2차 시험에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가 있음

- 일부 시험 면제 제도가 있음.
-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증 발급기관은 한국공인노무사회임.
-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는 보수 교육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공인노무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교육 1시간 이상 포함) 동안 받아야 함.
- 그러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에서 제외됨.

(2) 공인노무사 보수교육기관(한 번 지정되면 3년 동안 지정)¹¹⁾

1) 심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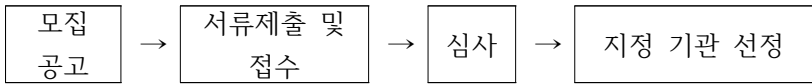
- 관련(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임.
- 공인노무사 양성 기관은 따로 없으며, 따라서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도 없음. 하지만 등록된 공인노무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함.

11) 고용노동부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정리

2) 보수교육의 목적 및 목표

- 개업노무사(등록된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교육(전문교육)과 윤리에 관한 교육(윤리교육)을 매년 8시간 실시. 단 윤리교육은 1시간 이상 포함(* 보수교육은 현장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과정으로 운영).

3) 심사 절차



[그림31]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 절차

4)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

-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 대상기관
 - ① 비영리법인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시설기준: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 인력기준: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 ①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한 사람

- ②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③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 ④ 노동문제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노동문제 관련 강의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교육실적: 최근 2년간 노동관계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실적이 있으면 제출)
- 심사기준: 지정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5) 특징

- 양성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정 평가 기준은 없지만 다른 제도들과 달리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기간은 3년이며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정취소 사유(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4항)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2.1.2.2. 노인심리상담사

1) 심사 개요

- 노화로 인하여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켜 당사자 및 그 가

족들에게 일상생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커짐.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서비스 제공하는데 수급자들의 심리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됨.

2) 심사 배경

- 현대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인구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짐.
-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라 2014년 처음 ‘노인심리상담사’란 명칭으로 등록됨.
- 유사한 명칭으로 현재까지 231곳에서 ‘노인심리상담사’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있음.
- 하지만 모두 등록 상태이며 공인된 곳은 없음.

3) 심사 목적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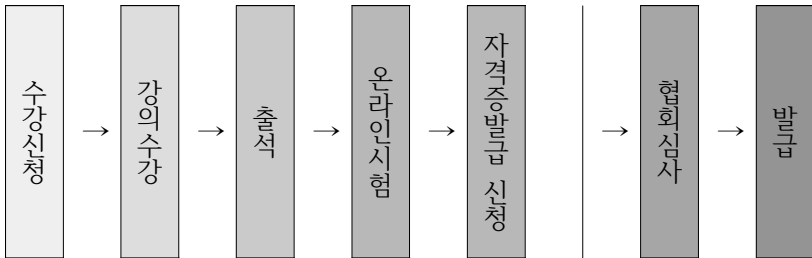
-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으며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진단,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가능한 전문가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심사 절차

- 노인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민간 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함.
- 때문에 발급기관에 따라 심사의 절차가 상이함.

- 또한 공인 자격증에 비해 심사 절차가 간소함이 특징임.
- 일반적으로 발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63〉 노인심리상담사 양성과정



5) 심사 기준

- 발급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일반적으로 출석률(60%)과 온라인 시험 점수(60점)를 기준으로 제시함.
- 발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커리큘럼을 이수해야함.

〈표 64〉 노인심리상담사의 커리큘럼

1강	노인과 노화	11강	노인 심리검사
2강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2강	노인 우울과 상담
3강	노인의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변화	13강	노인 치매와 상담
4강	노인의 성격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14강	노인 학대와 상담
5강	노년기의 은퇴와 죽음	15강	노인 성문제와 상담
6강	노년기 정신병리와 정신 건강	16강	노인 은퇴와 위기 상담

7강	노인상담의 기초	17강	노인 가족상담
8강	노인상담의 기본개념 및 윤리	18강	노인 희망상담
9강	노인상담의 과정	19강	노인 집단상담1
10강	노인상담의 기법	20강	노인 집단상담2

6) 특징

- 민간자격증으로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함.
- 하지만 공인된 자격이 아니기에 공신력은 떨어짐.

2.1.2.3. 아동심리상담사

1) 심사 개요

- 심리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갈등 및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을 돕고, 아이들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상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등록함.

2) 심사 배경

-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을 통한 치료·재활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해짐.
-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라 2011년 처음 ‘아동심리상담전문가’란 명칭으로 등록됨.
- 유사한 명칭으로 현재까지 162곳에서 ‘아동심리상담사’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있음.

○ 하지만 모두 등록 상태이며 공인된 곳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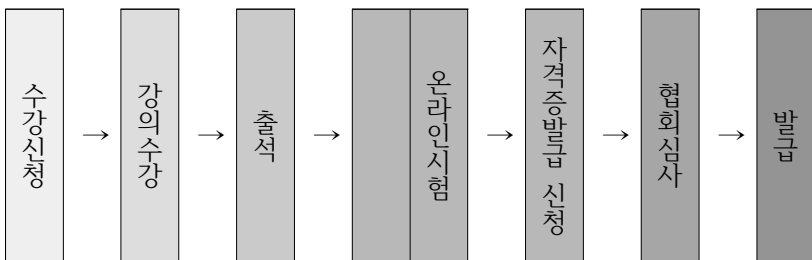
3) 심사 목적 및 목표

- 아동 심리 상담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 이후 복지센터,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취업 및 활용될 수 있음.

4) 심사 절차

- 아동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민간 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함.
- 때문에 발급기관에 따라 심사의 절차가 상이함.
- 또한 공인 자격증에 비해 심사 절차가 간소함이 특징임.
- 일반적으로 발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5〉 아동심리상담사 양성과정



5) 심사 기준

- 발급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일반적으로 출석률(60%)과 온라인 시험 점수(60점)를 기준으로 제시함.

○ 발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커리큘럼을 이수해야함.

<표 66> 발급기관의 커리큘럼

1강	매슬로우 욕구이론, 초기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장기적 효과	14강	독서치료2
2강	상담의 정의, 다루는 문제	15강	집단치료놀이, 문제유형과 욕구충족
3강	기본목표, 여러 학자들의 이론 비교	16강	집단치료놀이(원리, 형제)
4강	아동상담의 일반단계	17강	모래놀이치료1
5강	상담 목표 설정, 아동상담의 일반단계	18강	모래놀이치료2
6강	아동문제 상담사례1	19강	모래놀이치료3
7강	아동문제 상담사례2	20강	현실치료1
8강	위축도니 아동, 공격적 아동	21강	현실치료2
9강	이혼가정 아동	22강	현실치료3
10강	치료적 집단 프로그램	23강	현실치료4
11강	도벽이 있는 아동	24강	현실치료5
12강	부적응 행동과 요인	25강	상담자의 역할, 자질
13강	독서치료1		

6) 특징

-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하지만 공인된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므로 공신력이 없고 남발되는 경우가 많음.

2.1.2.4. 진로상담사

1) 심사 개요

- 개개인의 진로 선택과 결정, 진로계획, 실천, 진로변경 등의 과정을 내담자의 심리 및 성격과 적성을 분석하고 진로상담기법을 가지고 성숙한 생애진로발달을 수행토록 지도 및 조력 가능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에 따라 등록됨.

2) 심사 배경

- 사회의 변동에 따라 진로가 다양화됨.
- 그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전문가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라 2008년 처음 ‘진로상담사’란 명칭으로 등록됨.
- 유사한 명칭으로 현재까지 105곳에서 ‘진로상담사’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있음.
- 하지만 모두 등록 상태이며 공인된 곳은 없음.

3) 심사 목적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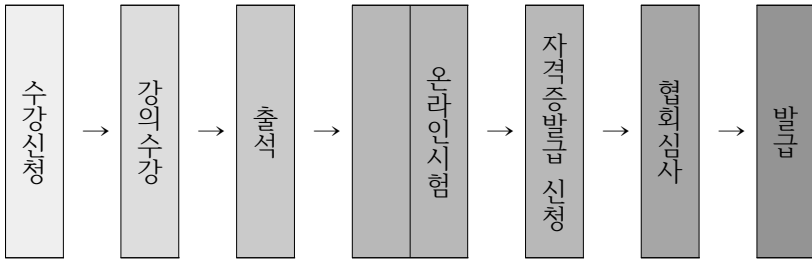
- 진로상담 전문가로서 교육기관, 학원, 상담센터, 진로직업 관련 기업체 등에서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상담사례 발표 및 평가 등 전문영역에서 전문상담과 진로지도 관련 강의 등 수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4) 심사 절차

- 진로상담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주관으로 민간 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함.
- 때문에 발급기관에 따라 심사의 절차가 상이함.

- 또한 공인 자격증에 비해 심사 절차가 간소함이 특징임.
- 일반적으로 발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7> 진로상담사 양성과정



5) 심사 기준

- 발급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일반적으로 출석률(60%)과 온라인 시험 점수(60점)를 기준으로 제시함.
- 발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커리큘럼을 이수해야함.

<표 68> 진로상담사 커리큘럼

1강	진로상담의 기초	11강	최신 진로이론: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2강	진로선택이론: 요인 이론	12강	포괄적 진로상담 모형
3강	진로선택이론: 직업적 성격유형	13강	진로상담의 과정1
4강	진로선택이론: 욕구 이론	14강	진로상담의 과정2

5강	Holland의 진로발달이론	15강	진로상담의 기법1
6강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	16강	진로상담의 기법2
7강	진로타협이론	17강	진로심리검사1
8강	진로의사결정이론	18강	진로심리검사2
9강	최신진로이론: 진로사회 학습이론	19강	진로정보의 활용
10강	최신진로이론:사회인지 진로이론	20강	진로적성상담의 적용

6) 특징

-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함.
- 하지만 공인된 자격이 아니기에 공신력은 떨어짐.

2.1.2.5. 청소년심리상담사

1) 심사 개요

-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 상담과 함께 교육, 지도, 조언을 수행하며 급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연구 및 개선방안 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등록함.

2) 심사 배경

-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

요해짐.

-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라 2014년 처음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란 명칭으로 등록됨.
- 유사한 명칭으로 현재까지 22곳에서 ‘청소년심리상담사’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있음.
- 하지만 모두 등록 상태이며 공인된 곳은 없음.

3) 심사 목적 및 목표

-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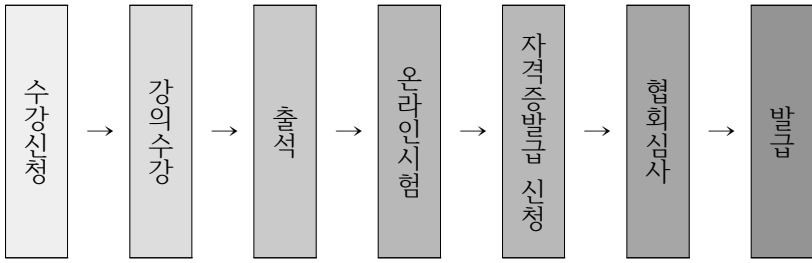
4) 심사 절차

- 청소년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민간 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함.
- 때문에 발급기관에 따라 심사의 절차가 상이함.
- 또한 공인 자격증에 비해 심사 절차가 간소함이 특징임.
- 일반적으로 발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9> 청소년심리상담사 양성과정

5) 심사 기준

- 발급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일반적으로 출석률(60%)과 온라인 시험 점수(60점)를 기준으로 제시함.
- 발급기관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커리큘럼을 이수해야함.

<표 70> 발급기관의 커리큘럼

1강	상담의 기초적 이해	11강	청소년 문제행동1
2강	청소년 상담의 이해	12강	청소년 문제행동2
3강	청소년 심리학의 이론적 관점	13강	청소년 문제행동3
4강	청소년 문제행동이론	14강	청소년 문제행동4
5강	청소년 상담의 전략과 개입	15강	청소년 집단상담의 전략과 개입
6강	청소년 학업상담	16강	청소년 집단상담의 실제
7강	청소년 진로상담	17강	청소년 개인상담의 전략과 개입
8강	청소년 문제행동(우울증)	18강	청소년 개인상담의 실제
9강	청소년 문제행동(자살)	19강	청소년의 노동과 청소년 보호법
10강	청소년 문제행동(약물)	20강	청소년 심리상담사의 윤리

6) 특징

-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2.2.국외

2.2.1. 영국

2.2.1.1. 영어교육 교사 자격증

- 영국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영어교육인 테솔(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은 세계 공용어로서의 위상 확립과 영국문화의 전파라는 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음.
- 영어교육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Trinity College와 Cambridge Assessment가 있음.
- 영국의 영어교사 자격증 과정은 일반적으로 Certificate와 Diploma 과정으로 구분됨.
- Certificate 과정은 보통 대학 졸업자가 자격 과정을 이수 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며, Diploma 과정은 대학과 대학원의 중간단계의 자격증으로 정식학위는 아니지만 전문 자격증으로 통용되고 있음.
- 영어교육 교사 자격증 과정을 인증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Trinity College와 Cambridge Assessment가 있음.

(1) Trinity College의 TESOL 과정

- 영국의 Trinity College TESOL 과정은 대표적인 TESOL

인증기관이며, Trinity College가 인증한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임.

- Trinity College의 TESOL 관련 자격증으로는 Certificate in TESOL과 Diploma in TESOL이 있음.

1) Certificate in TESOL¹²⁾

- 영어교육을 실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교육 자격 증이며 200시간 프로그램 가운데 최소 1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일반 과정, 온라인 과정, 블렌디드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 Ofqual¹³⁾의 직업 자격 운영 체제에서 Level 5의 자격에 해당함.
- British Council과 세계 각지의 영어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인정됨.
- 실제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실습과 엄격한 기준 하에 다양한 범위의 작문과 과제를 이수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음.
- Certificate in TESOL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2)

<https://www.trinitycollege.com/qualifications/teaching-english/CertTESOL> Trinity College CertTESOL 홈페이지 참조

- 13) Ofqual(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은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 자격(qualifications), 시험(examinations), 평가(assessment)를 규제하는 기관임. QCF(Qualification Credit Framework, 국가자격체계)의 등급을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직무능력에 8등급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Entry 1(예: 학교졸업증명)부터 Level 8(예: 박사학위)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직무능력표준(<https://www.ncs.go.kr/>) 사이트에서 제공된 2013년 '외국의 직업교육훈련 품질관리기구 사례_영국의 Ofqual' 참조

〈표 71〉 Certificate in TESOL 과정의 주요 내용

Unit	학습 시간	내용
Unit 1: 교수 기술	7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 방법론, 교수 기술, 교수 수행과 관련된 이론 교육 자료 분석, 교수 방법 평가,
Unit 2: 언어에 대한 인식과 기술	2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영어의 형태(음성학, 어휘론, 문장론), 기능, 의미에 대해 교육 이를 학습자에게 교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Unit 3: 학습자 분석	1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교수 방법, 요구 분석, 언어 분석, 수업 계획, 교수요목 개발
Unit 4: 수업자 료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수업 과제를 위한 수업 자료 개발, 적용, 사용, 평가
Unit 5: 교수에 필요한 언어 (Unkno wn Languag e)	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 언어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교수하는 방법과 활동 교육 수업 과정 계획과 분석 제시

2) Diploma in TESOL¹⁴⁾

14)

(

<https://www.trinitycollege.com/qualifications/teaching-english/DipTESOL> Trinity College DipTESOL 홈페이지 참조

- 최소 2년의 풀타임 교육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취득 가능하며, 150시간의 수업과 450시간의 연구로 구성된 4개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영국 Ofqual의 직업 자격 운영 체제에서 Level 7의 자격에 해당함.
- Diploma in TESOL은 시험 감독관, 영어교사 교육, 영어 교육 기관의 책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 Diploma in TESOL과정 내용은 다음의 4 Unit으로 구성됨.
 - Unit 1: 언어 내용과 교수 학습
 - Unit 2: 개발자, 발전하는 실행자로서의 교사
 - Unit 3: 교실 상황에서의 음성학 이론
 - Unit 4: 학습자 분석, 교수 준비, 교수 수행, 자기 평가
- Diploma in TESOL 과정의 평가는 쓰기 시험, 과정 중에 제출한 과제에 대한 평가, 인터뷰, 교수 실습에 대해 평가하며, 각 Unit마다 3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가 이루어짐. 과정의 평가 내용은 <표72>와 같음.

<표 72> Diploma in TESOL 과정의 평가 내용

	Section 1	Section 2	Section3
Unit 1 쓰기 과제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관련 짧은 질문에 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학습에 대해 기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개발에 대해 기술하기
Unit 2 과정 중 과제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된 10시간 수업 실습 중 4시간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간의 수업 실습 중 10시간 수업의 발전과정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프로젝트 과제

평가			
Unit 3 인터뷰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교육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론에 관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론 이론의 교수 수업 적용에 대해 논의
Unit 4 교수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3가지에 대해 평가 수업 계획 실제 교수 수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에 대한 평가 계획 교수 교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tion 1에서 평가된 수업에 대해 자기 평가와 외부 평가를 포함한 수업 일지 작성

3) Trinity College의 Certificate in TESOL 과정 기관 인증¹⁵⁾

○ Trinity College의 기관 인증과정은 <표73>와 같음.

<표 73> Trinity College의 Certificate in TESOL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 인증 과정



• 1 단계: 조직에 대한 사실 관계 파일 및 이력서 제출

15) Trinity College London(2016). Certificate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CertTesol): Validation Requirements from January 2016.

(Submission of the organization fact file(OFF) and CVs) 단계에서는 신청기관으로부터 조직에 대한 사실 관계 파일 및 이력서가 제출되면 Trinity College에서는 가급적 2주 이내에 지원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공함. 만약 제출된 조직에 대한 사실 관계 파일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Trinity College는 2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며, 동시에 그 사유도 제공함.

- 2 단계: 지원신청서 작성 단계(Completion of the application form) 단계는 Trinity College가 신청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사실 관계 파일 및 이력서를 승인하게 되면 신청기관은 양식에 맞추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지원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74>와 같음.

<표 74> Trinity College의 Certificate in TESOL 기관 인증을 위한 지원신청서 양식의 구조 및 주요 내용

1. 전자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신청서는 완전히 작성해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요청된 모든 부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정의 목적과 목표
 - 교육 환경 및 목표 그룹
 - 입학 요건, 신입생 선발 요건 및 절차
 - 사전 인터뷰 및 과정 전 과제
 - 과정 학생의 정보 보호
 - 장애가 있거나 학습 차이가 나는 학습자를 위한 준비 사항
 -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 과정의 기간, 빈도 및 수업 규모
- 과정 시간표
- 교육 담당자(Tutorials)
- 읽기 목록
- 과정에 대한 평가
- 과정에 대한 관리
- 기관 인사에 관한 사항(이력서 포함)
- 교사 관리 및 튜터링 인력 (교사 표준화 제공 포함)
- 교육 자료
- 과정이 운영될 건물
- 기관의 안전 관리

5. 신청서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업계획서
- 교육 과정에서 자기 평가 및 교사 평가
- 영어 수업에 대한 관찰 내용
- 교수에 필요한 언어(Unknown language)를 이용한 수업에 대한 관찰 내용
- 관련 교육 저널 제공
- 학습자 프로필
- 관련 기사제

- 3 단계: 지원 신청서 심사(Scrutiny of the application form)의 단계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Trinity College 내 부인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검토됨.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는 전문가 집단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관리되며, 검토 결과는 권장 사항 및 수정 요청사항 등과 함께 제안기관에 보내짐.
- 4 단계: 지원 신청서 내용의 정교화(Fine-tuning of the application) 단계에서는 기본 심사 과정을 마친 후 지원

한 기관과 Trinity College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지원 신청서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협력함.

- 5 단계: 방문 심사(Validation visit) 단계에서는 지원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후, Trinity College의 구성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
 - 지원 신청서에 대한 상세한 논의
 - 과정 시간표 및 기타 지원 신청서 관련 사항 확정
 - 건물과 시설, 기자재 확인
 - 과정 책임자와 과정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의 면담

○ 인증기관 신청 승인 및 서류

- 심사 방문을 하고 2주 안에 Trinity College는 다음을 진행함.
- 지원서가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계약을 진행함. 신청 기관이 Trinity College 시험 대행 기관이 아닌 경우 이 또한 계약에 포함하여 진행함.
- 신청 기관의 지원서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두 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계약이 실행될 날짜를 정함.
- 계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 기관과 함께 지원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함.
-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지원 신청서는 보류함. 이때 심사를 보류한 경우는 지원한 기관의 과정이 안 좋다가 보다 Trinity College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임.

○ 인증기간

- 전체 심사 과정은 최소 12주의 시간을 필요로 함.
-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 기관은 과정을 시작하면 안 됨.
- 기관 인증 후 과정의 운영
 - 운영기관으로 인증된 후 12개월 안에 과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고, 12개월 안에 과정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Trinity College에 연락을 해야 함.
- 교육 과정 모니터링
 - 첫 번째 모니터링은 기관 인증 후 과정이 처음으로 운영되는 기간에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실시되고, 이후 4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이 실시됨.
 - 모니터링의 목적은 과정의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교육 담당자 면담, 강의 참관, 교육과정 학생 면담을 위한 것임.
 - 모니터링의 결과로 Trinity College측에서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공함. 모니터링의 상세 내용은 <표75>과 같음.

<표 75> Trinity College의 TESOL 교육과정 운영기관
모니터링의 상세 내용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nity College 및 운영기관에서 과정이 종료되기 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 • 강의실습과 서면 과제물 평가 점수의 표준화 • 과정 운영기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여 제공 • 과정 진행에 있어서의 안내와 지원
--

2. 내용

- 운영기관 책임자와 교육 담당자들과의 면담
- 교육과정 학생들과의 면담
- 완료된 과제에 대한 검토
- 과정에서 강의와 강의실습을 참관하고 피드백 제공
- 운영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및 기자재에 변화에 대해 파악

(2) Cambridge Assessment의 영어교육 교사 과정

- Cambridge Assessment는 OCR(Oxford Cambridge and RSA Examination), CIE(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ambridge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 영어 능력 시험(Cambridge Exam)과 영어교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부속기관임.
- Cambridge Assessment의 TESOL과정은 Certificate 과정의 CELTA(Certifica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to Adults)와 Diploma과정의 DELTA(Diploma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to Adults)가 대표적임.

1) CELTA(Certifica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to Adults)과정¹⁶⁾

- CELTA과정은 Cambridge Assessment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운영되며, 모든 과정의 이수에는 최소 120시간의 교육

16)Cambridge Assessment 홈페이지

(<https://www.cambridgeenglish.org/teaching-english/teaching-qualifications/celta/about-the-celta-course/>)참고

시간이 필요하고, CELTA과정의 주요 내용은 <표76>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76> CELTA 과정의 주요 내용

주제	주요 내용
학습자와 교수자, 교수학습 상황 (Learners and teachers,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배경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다양한 학습 방식에 대한 이해
언어 분석과 인식 (Language analysis and awar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교육에 활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 • 수업의 계획과 실행에 해당 용어의 적용 • 영어문법, 어휘 및 음운 등에 대한 실무지식
언어 스킬;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Language skills: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기본 개념 및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교수방법에 적용 •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텍스트에 대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방법에 활용
다양한 교수 상황에서의 기획 및 자원 활용 (Planning and resources for different teaching contex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수업계획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이해 •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수방법 선정 및 계획 • 강의준비사항에 평가 및 반성

교수스킬 및 전문성 개발 (Developing teaching skills and professional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업과 그룹이나 짝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 교수 학습 자료의 적절한 활용 • 모든 학습자들이 교실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언어 학습에서 성취를 느끼게 해야 함
---	---

- 수료과정은 풀타임으로 배우는 1개월 과정에서 파트타임 배우는 3개월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80개 이상 국가의 300개 이상 인증된 센터에서 1,500개 이상의 CELTA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CELTA는 과정 종료 이후 별도의 최종시험이 없으며, 크게 교수 실습과 쓰기 과제 두 가지 유형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함.

〈표 77〉 CELTA 과정의 주요 평가방식

평가방식	주요 내용
교수 실습 Teaching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6시간 수업 진행 • 전체 수업 수행과정에 대해 평가 • 수업은 녹화되어 평가됨
쓰기 과제 Written Assign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쓰기 과제 (각각 750 -1,000 자) •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법 • 교수목적 설정을 위한 언어 분석 • 언어 교육 기술 • 수행한 수업을 되돌아보고 문제점 찾기

2) DELTA(Diploma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to Adults) 과정¹⁷⁾

- 최소 1년의 영어 교육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가능하며, 과정을 수료하면 교사 교육이나 영어 교육 기관의 책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대면 수업, 블렌디드 러닝, 원거리 수업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 DELTA과정은 3개의 모듈로 구분되어 있고, 3개의 모듈 모두 이론과 실제에 집중하고, 모듈 순서에 상관없이 학습자가 각 모듈을 학습할 수 있고 3개 모듈의 학습이 완료되면 DELTA자격이 주어짐.
 - 모듈 1은 지원자의 지식을 확장하고 개발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수학습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둠.
 - 모듈 2는 다양한 영어 교수 상황에서 교수 원칙과 전문성을 인식하고 개발하는데 초점을 둠.
 - 모듈 3 옵션 1은 요구분석, 교수요목 설계, 코스 기획 및 평가에 초점을 두며, 옵션 2는 과정 관리의 차원에서 상황분석, 변화 기획 및 실행에 초점을 둠.
 - DELTA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78>과 같음.

<표 78> DELTA 모듈 과정의 주요 내용

모듈	내용
----	----

17) Cambridge Assessment 홈페이지

(<https://www.cambridgeenglish.org/teaching-english/teaching-qualifications/delta/>)참고

<p>모듈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 언어 습득 및 언어 교수에 대한 이론적 관점 • 현재 연구 개발 중인 것도 포함된 다양한 교수 방법 및 접근법 • 언어체계(의미, 형태, 발음과 사용) 및 학습자의 언어에 관한 문제들 • 학습자가 학습에 필요한 기술과 전략, 언어 기술을 선택하여 교수 • 언어 교수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및 참고자료의 실제 사용 •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용된 평가
<p>모듈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학습자의 다양한 언어 능력, 동기, 학습 스타일에 대해 인식하여 교수 상황에 지식과 인식을 적용하기 • 원칙과 이론이 적용된 방법과 자료를 선택하여 모든 학습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교수 준비하기 • 교수 목적을 위한 자료 평가, 선별 및 활용하기 • 건설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맥락에 맞는 적절한 교수 학습 전략의 사용,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기 • 강의 준비 및 교수에 대한 자기 평가하기 • 타 강사의 강의 참관 및 평가 • 전문성 및 전문적 개발 기회
<p>모 듈 3</p>	<p>옵 션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과정에 대해 연구(예: 비즈니스 영어, 학문 목적 영어, 특정 목적 영어, 다언어 학습자 교실, 교육 배경이 낮은 학습자 교실, 온라인 강의 등등) • 교수요목 설계: 특별 과정의 학습상황에 적용되는 원칙, 영향, 방법론적 효과, 주요 교수요목 유형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 • 영어 교육의 기존의 기본 교수요목에 제 2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득이론이 미친 영향에 대해 비판적 평가하기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특별 과정 코스 설계 및 개발 특별 과정의 교수요목 설계 및 개발 시험과 평가의 원칙을 특별 과정에 적용하기 학습 코스와 프로그램의 효과 및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옵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 관리, 인력 관리, 학습자 관리, 홍보에 대해 교육 기관 경영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원칙들 특정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관을 운영하기 상황분석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언어 교수 과정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주도적인 실행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 DELTA 과정의 평가 방식과 평가 기준은 다음 <표79>과 같음.

<표 79> DELTA 과정의 평가 방식과 평가 기준

모듈	평가 방식 및 주제	평가 기준
모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 시험 방식 각 시험 당 90분의 시간이 주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 1 - 5 문제, 짧은 글 쓰기와 긴 글 서술하기 쓰기 2 - 3 문제, 긴 글 서술하기
모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2,500자 쓰기 학습 과정에서의 과제, 참관 보고서에 대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평가와 실습에 대해 기술 실험적 실습에 대해 기술 교수학습의 전문 지식과 관련된 과제 - 평가와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세이 쓰기 • 수업 참관 • 전문 지식 개발과 관련된 쓰기 과제에 대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에 대해 기술 • 두 언어 체계와 교수 학습에 대해 기술 • 두 언어 기술(Skills)에 대해 기술
모 듈 3	옵 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4,500자 쓰기 • 제시된 주제에 대해 쓰기 • 요구 분석 • 과정 제안 • 평가 • 발표와 조직성에 대해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 • 지식을 수행에 적용하고 본질적인 문제 파악 • 요구 분석과 진단 평가 • 진단 평가 분석 및 학습자 요구 분석 내용 파악 •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 • 다양한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 • 과정 구성과 학습자 요구에 맞는 평가 과정 설명 • 평가 과정 적용 • 학문적 쓰기, 언어와 참고 자료의 수준 • 발표 내용의 통일성과 구성 • 논어의 수준과 근거 제시 방법
	옵 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4,500자 쓰기 • ELT(English Language Teaching)과정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T과정과 일반 과정 관리에 관해 기술 • 특별과정에 대한 이해 기술 • 과정 관리에 있어서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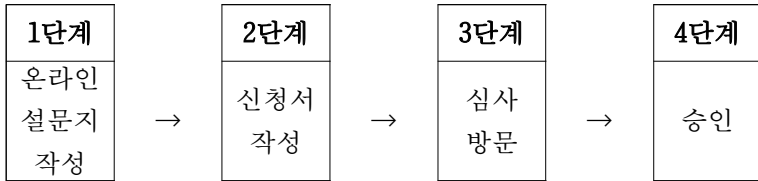
		<p>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분석 및 평가 쓰기 • 제안과 근거 쓰기 	<p>한 문제 인식과 관리 지식의 적용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 기술 • 향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파악과 향상을 위해 사용된 방법 분석 • 분석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실행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논제와 근거 제시 • 전략적 관리와 조직 향상을 위해 중요 원칙의 이해와 적용 기술 • ELT 관리와 요구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방법을 제안하고 근거를 제시
--	--	---	--

3) Cambridge Assessment의 기관 인증¹⁸⁾

- Cambridge Assessment는 Cambridge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이 제공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함.
- Cambridge ESOL의 기관 인증 과정은 12주가 소요됨.
- Cambridge ESOL의 기관 인증 과정은 다음의 <표80>과 같음.

18)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홈페이지
<https://www.cambridgeinternational.org/why-choose-us/join-cambridge/>참조

〈표80〉 Cambridge Assessment의 Cambridge ESOL기관
인증 과정



- 1단계: 온라인 설문지 작성
 - 신청 기관의 기본 정보, 운영하고자 하는 Cambridge과정, Cambridge 과정 운영 의 목적 등을 기술해야 함.
 - 온라인 설문지가 등록되고 Cambridge Assessment의 지역 대표나 본부의 담당 자가 설문지를 확인하여 Cambridge과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보내줌.
- 2단계: 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내용은 기관의 조직도, 교사 관리자의 역할, 기관의 관리자와 교사들의 이력서, 교육적 가치관, 기관 발전 계획, 기관 관리 계획, 교육과정 정책, 기관 언어 정책, 불만사항 정책, 건물과 교실 안전관리 정책, 건물 소방 관리 정책, 정 부인가 기관인지의 여부를 내용으로 함.
 - 신청서를 Cambridge Assessment에 보내면 신청서의 내용이 Cambridge ESOL의 표준요건에 맞는지 평가함.
- 3단계: 심사 방문(Approval visit)
 - Cambridge Assessment 지역 대표나 본부의 대표자가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 능력과 기관 경영, 교수 학습 의 질, 교실환경 등이 Cambridge Assessment의 기준에 부합 하는지 확인함.

- 4단계: 승인

- 신청서가 Cambridge ESOL의 표준요건에 맞으면 Cambridge Assessment에서 계약서를 보내고 사인된 계약서를 본부로 보내면 승인이 마무리 됨.

- 승인이 이루어지면 Cambridge Assessment에서 인증서와 현판을 보내주고, Cambridge 교육과정 자료에의 접근이 허락되고 마케팅과 관련한 지원과 조연도 이루어짐.

2.2.2. 일본

2.2.2.1. 일본의 외국어로서의 일본어(JSL) 교원 자격 제도¹⁹⁾

- 1985년 문부성의 ‘일본어 교사 양성안’에서 일본 내 유학생 증가에 따른 일본어 교사 양성의 양적 질적 정비 및 고취를 도모함.
-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본어 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적인 교육내용’은 교육내용 수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일본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수요 증가와 일본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2000년 ‘일본어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안²⁰⁾’을 통해 일본어 교사의 질적 향상과 양성의 기초를 마련함.
-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JSL 교원 자격은 없으며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²¹⁾에서 주관하는 JSL 교원 배출을

19) 시엔피컨설팅(2019), 한국어교원 자격 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참고

20) 2000년 일본어 교사 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논의됨

21) 민현식 외(2000), 한국어 교사 자격 제도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 연구, 111쪽 인용

위한 인증 고시는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JESS)가 있음.

-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고 20살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
- 하지만 2019년 문화위원회 소위원회에 '국가 자격' 수립을 지시하는 방향으로 교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증의 사안이 심의됨.
- 2020년 2월 14일, 국가문화위원회 소위원회는 '공인 일본어 교사(잠정명칭)'의 새로운 국가 자격을 확립하기 위한 보고서 초안을 승인함.
- 2021년 1월 25일 온라인에서 개최된 일본어 교사 자격에 관한 제2차 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2024년 이후 공인 일본어 교사 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즉, 일본 내의 JSL 교원 자격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제도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단 국가 공인 자격 제도는 모든 JSL 교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1) JSL 교원 자격 기준

- 1988년 문부성이 발표한 '일본어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기분'에서 제시한 일본어 교사 자격은 다음의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 대학(단기대학 제외)에서 일본어교육에 관한 전공(일본어 교육 과목 45학점 이상)을 수료하고 졸업한 자
 - 대학(단기대학을 제외)에서 일본어교육에 관한 과목을 26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 일본어교육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다음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자로 일본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능력을 가진 자
 - 학사 학위를 가진 자
 -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서 일본어에 관한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 전수학교 전문 과정을 수료한 후 학교에서 일본어에 관한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해당 전문 과정 수업 기간과 해당 교육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해서 4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에서 교사 경험이 있는 자
- 그 외 상기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있어 자격이라고 하기보다 일반적인 ‘일본어 교사 자격 가이드라인’으로 하며 일본어교육진흥협회²²⁾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대학에서 일본어교육을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수료한 자
-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 420시간을 수료한 자

(2) JSL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 2000년 일본어 교사 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일본어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안’을 통해 일본어 교육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현대적인 과제와 일본어 학습

22) 재단법인으로 문부대신, 법무대신, 외무대신의 허가로 ‘일본어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일본어교육기관의 심사·인정 사업을 실시하는 곳

자의 학습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획일적인 표준교육 내용이 아닌 기초부터 응용까지 선택 가능한 교육내용을 제시함 이에 따라 일본어교육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교육 목적과 학습자 수준 등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해짐.²³⁾

<표 81>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영역 구분

교육영역	구분		=내용
	사회·문화영역	세계와 일본	
타문화 접촉			국제협력, 문화교류, 유학생 정책, 이민·난민정책, 연수생 유입정책, 외국인 아동학생, 귀국 아동학생, 지역 협력, 정신 위생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국제기관, 기술이전, 출입국관리, 외국인 노동, 공동사회, 난민조약, 어린이 권리조약, 국적, 소수민족, 타문화적응, 카운슬링, NGO, NPO
일본어교육의			일본어교육사, 언어정책, 교원 양성, 학습자의 다양화, 교육철학, 학습자

23) 2012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교육현장 지원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로 원진숙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다문화적 한국어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KSL)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역사와 현상	의 추이, 일본어시험, 각 국어시험, 세계 각 지역의 일본어교육 사정, 일본 각 지역의 일본어교육 사정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제 2차 세계대전, 국제공통어,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 유학생, 취학생, 기술연수생, 중국 귀국자, 난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지역의 일본어교육,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본어 능력시험, TOEFL, TOEIC
교육 관련 영역	언어 와 사회	언어와 사회의 관계	언어와 문화, 사회언어학, 사회문화능력, 언어접촉, 언어 관리, 언어 정책, 언어사회학,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제도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세계관, 종교관, 법의식, 자기개념, 개인주의, 집단주의, 공용어, 방언, 언어생활, 외국어·제2언어교육, 혼합어, 다이글라시어, 두 개 언어병용
		언어 사용과 사회	언어변종, 성차세대차, 지역 언어, 대우경의 표현, 언어·비언어 행동,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역생활 관련 정보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통사 규칙, 회화 법칙, 메타언어, 침묵, 의사결정, 교섭, 시간·공간 의식, 속마음과 겉치레, 인칭대명사·친족 명칭·호칭, 은유, 발화행위(의뢰, 변명, 감사, 약속, 사죄)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과 사회	타문화 수용·적응, 언어·문화상대주의, 자문화(자민족)중심주의, 정체성, 다문화주의, 타문화간 관용, 언어이데올로기, 언어선택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의미부여, 코드 전환, 번역, 통역, 이중문화, 공생, 문맥, 타문화 교섭, 국제협력

	언어와 심리	언어 이해의 과정	언어이해, 담화이해, 예측·추측 능력, 기억, 시점, 언어학습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기억, 스키마, 상향식 언어 이해·하향식 언어 이해, 추론
		언어 습득·발달	유아 언어, 습득 과정(제1언어, 제2언어), 중간 언어, 언어 상실, 이중언어, 학습 과정, 학습자 형태, 학습 전략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제1언어·제2언어, 상호의존가설, 귀납적·연역적 학습법, 언어전이, 발달장애, 학습장애, 언어 병리, 침묵기
		타문화 이해와 심리	타문화간 심리학, 사회적 기술, 집단주의, 교육심리, 일본어 학습·교육의 정의적 측면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문화 충격, 문화 마찰, 판단 정지, 타문화 훈련
언어 관련 영역	언어와 교육	언어교육법·실습	실천적 지식, 실천적 능력, 자기 점검 능력, 커리큘럼, 코스 디자인, 교실 활동, 교수법, 평가법, 학습자 정보, 교육실습, 교육환경, 지역별·연령별 일본어교육법, 교육정보, 요구 분석, 오류 분석, 교재 분석 및 교재 개발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교실 연구, 수업 행동 분석, 집단 역학, 드라마, 역할극, 연설, 토론, 다언어·다문화, 상호작용, 교사의 자기연수, 커뮤니케이션 테스트, 평가, 수업계획, 학생의 수업 준비
		타문화간 교육·커뮤니케이션 교육	타문화간 교육, 다문화교육, 국제·비교교육, 국제이해교육, 커뮤니케이션교육, 연설·커뮤니케이션,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훈련, 개발 커뮤니케이션, 타문화 경영, 타문화 심리, 교육 심리, 언어 간 대조, 학

		<p>습자의 권리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타문화 훈련, 모어유지, 권한 부여(empowerment), 가산·감산적 이중언어, 언어 전이, 상호 학습, 외국어 집중교육, 위기 사례, 판단 정지</p>
	언어교육과 정보	<p>교재 개발, 교재 선택, 교육공학, 시스템공학, 통계 처리, 미디어능력, 정보능력, 멀티미디어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교재, 교구, 미디어, 콘텐츠, 네트워크, 시청각정보, 언어정보, 위성통신, 지적소유권, 저작권</p>
언어	언어의 구조 일반	<p>일반언어학, 세계 언어, 언어의 유형, 음성적 유형, 형태(어휘)적 유형, 통계적 유형, 의미론적 유형, 어용론적 유형, 음성과 문법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어족, SOV-SVO언어, 상대경어, 발화행위, 언어·비언어, 표음·표의문자</p>
	일본어 구조	<p>일본어 계통, 일본어 구조, 음운체계, 형태·어휘체계, 문법체계, 의미체계, 어용론적 규범, 표기, 일본어사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남방·북방설, 음소, 악센트, 억양, 형태소, 어구성, 어절, 품사 분류, 문법, 명제, 문장담화구조, 어용론적 기능, 발화행위, 대우표현, 방언, 성차</p>
	언어 연구	<p>이론언어학, 응용언어학, 정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인지언어학, 언어지리학, 대조언어학, 계량언어학, 역사언어학, 커뮤니케이션학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조사·분석법, 조사·질문, 논문작성법, 발표형태, 학회</p>
	커뮤니케이션 능력	<p>수용·이해능력, 표출능력, 언어 운용능력, 담화 구성능력, 토론능력, 사회문화능력,</p>

			대인관계능력, 타문화 조정능력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4기능, 갈등처리, 발표, 대인관계구축·유지, 관계회복, 판단 정지, 일본어능력, 외국어능력
--	--	--	---

(3) JSL 교원 양성과정

- 앞서 일본어 교원 자격 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 JSL 교원의 자격 기준은 3개의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면 됨. 각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양성기관은 대학, 일반 시설 및 단체가 있음.

1) 대학에서의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

- 최근 일본어교육의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격증 중심의 일본어교육 전공, 지방자치제 중심의 일본어교육 코디네이터 육성, 비모어 화자의 일본어 교사 양성, 언어교육학 연구자 양성, 다문화사회에 적응하는 시민의 기초 육성 등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음. 일본어교육 기관에서의 교육내용을 각 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서 대학에서의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도 대학의 특성과 목적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의 일본어 교사 양성 과정은 대학 내의 일본어학과와 학과와 별개로 개설된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 대학원의 응용언어학 전공, 언어교육 전공 등의 기관에 설치되어 있음.

2)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

- JSL 교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일본어 교사 양성 기관 중 일본어교육진흥협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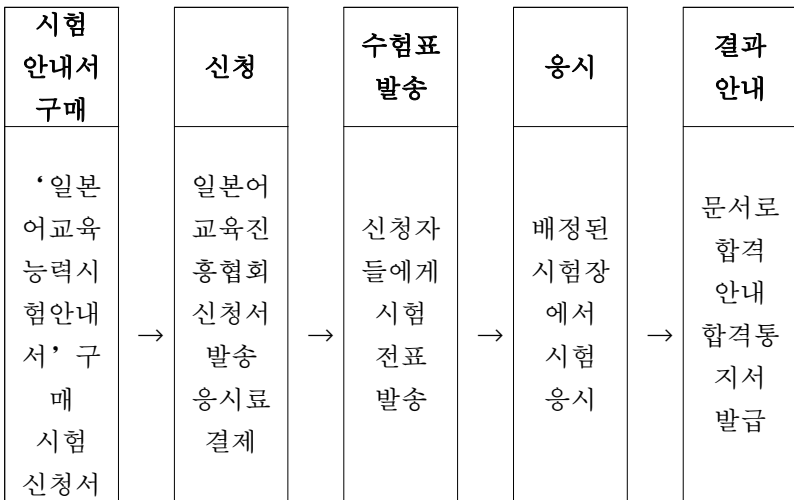
420시간 이상의 강좌를 수료해야 함. 해당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은 앞서 제시한 교육내용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 법무부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일본어 교사 교육 과정을 420 시간 수료한 사람 중에서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은 일본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해야만 JSL 교원 자격이 발생함.

(4)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 - 시험 과목 / 합격 기준

-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란 일본어교육 전문가로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원 자격시험
- 일본어교육진흥협회가 시행하며 연 1회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응시 자격 조건은 없으며 시험 응시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82>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시험 응시 절차



동봉됨

○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총 3교시에 나누어서 실시함.
 각 교시마다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83〉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 I	90분	100점	출제 범위의 구분에 따라 일본어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측정한다.
시험 II	30분	40점	시험 I 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지식’ 및 시험III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문제 해결 능력’ 에 대해 음성을 매체로 한 출제 형식으로 측정한다.
시험 III	120분	100점	출제 범위 구분의 횡단적인 문제로 숙련된 일본어 교사가 가지고 있는 현장 대응능력과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한다.

○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평가 내용

〈표 84〉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 평가 내용

구분	요구되는 지식·능력
사회·문화·지역	일본과 일본 지역사회가 관계하는 국제사회의 실정과 국제화에 대한 일본의 국가 및 지방자치체의 정책, 지역 사회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점과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과 일본어교육의 실천과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함 - 국제관계론, 문화론, 비교문화론적인 시점과 그와 관

	<p>련된 기초적인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인 시점과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 종교적, 민족적, 역사적인 시점과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언어와 사회	<p>언어교육, 언어습득 및 언어사용과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점과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과 일본어교육의 실천과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교육, 언어습득에 대하여 널리 국제사회의 동향으로부터 본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점과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 언어교육, 언어습득에 대하여 각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 등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점과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 개개인의 언어사용을 구체적인 사회문화상황 가운데 생각하는 시점과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언어와 심리	<p>언어학습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 이해·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점과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과 일본어교육의 실천과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과정과 방식 또는 개인, 집단, 사회 등 다양한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언어 습득과 발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 언어교육에 필요한 학습이론, 언어이해, 인지과정에 관한 심리학의 기초적인 지식 - 타문화이해, 타문화 접촉,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언어와	<p>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점과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과 일본어교육의 실천과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함</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 학습자의 특질에 대한 미시적 시점과 각각의 학습을 사회 속에 자리매김하는 거시적 시점 - 학습 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체 또는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 - 학습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수, 평가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언어일반	<p>교육·학습의 대상이 되는 일본어 및 언어 일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식·능력을 가지고 그것들과 일본어교육의 실천과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일본어의 음성, 음운, 어휘, 문법, 의미, 운용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 일반언어학, 대조언어학 등 언어 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 지도함에 있어 대화언어, 필기언어 양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지식·능력

2.2.3. 프랑스

2.2.3.1. 프랑스의 해외 프랑스어 교원 자격증²⁴⁾

(1) DAEFLE(해외 프랑스어 교원 자격증)

- 해외에서 프랑스어를 교육하는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DAEFLE(Diplôme d’Aptitude à l’Enseignement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자격증이 필요함.
- DAEFLE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대표적 언어교육기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교육부, 대학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참여하고 있음.

24) 김현철, 신승희, 최한섭, 한상미(2014), ‘해외(중국 프랑스) 자국어 보급기관 교원 운영현황 조사 연구 참고

- DAEFL는 온라인 과정으로 제공되고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누어짐.
- 학위과정: 10개월 집중 프로그램 수료 또는 2,3,4년에 나누어서 프로그램 수료가 가능함.
- 비학위과정: 과정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과정 선택 가능, 1개 모듈 선택이나 여러 모듈 선택이 가능함.
- 학위과정 지원자는 입학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때 합격증이 발급되는데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임.
- 입학테스트는 언어 교정능력과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텍스트 구사능력 2개의 능력을 평가함.
- DAEFLE 과정의 내용
 - 실제 외국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됨.
 - 프랑스어와 외국인 대상 교육에 대한 이론적 학습으로 구성됨.
 - 프랑스어 교수 학습 시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방법, 학습자에게 맞는 교수 학습의 적용을 실습함.
 - 양성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480시간 프로그램이며 6개의 모듈로 구성됨.
 - 과정은 기본모듈과정과 심화모듈과정으로 나누어짐.
 - 기본모듈과정(Modules Fondamentaux)
 - FLE(Freach Language Education)에 필요한 기본 교수법과 방법론(120시간)
 - 프랑스어 발음에 대한 교수법(120시간)
 - FLE에 필요한 프랑스어 문법 교수법(60시간)
 - FLE에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 평가방법(60시간)
 - 수업운영 방법(60시간) 혹은 알리앙스 프랑세즈 본원에서 실습인턴참가(60시간) 중 1개 선택

- 실제로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은 5개 과정에 해당하는 총 420시간임

• 심화모듈과정(Modules de Spécialisation)

- 프랑스 사회문화와 프랑스 문학에 대한 교수법(60시간)

- <특수목적용을 위한 프랑스어> 교수법(60시간)

- 어린이들을 위한 FLE교수법(60시간)

- 프랑스어 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방법(60시간)

- 학력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 교수법(60시간)

○ DAEFLE 과정의 최종시험과 자격증

• 자격증은 과정을 마친 후 최종시험(공통시험과 심화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시험은 1년에 2회(6월, 12월) 실시됨.

• 최종시험은 기초모듈과정과 심화모듈과정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시험과 심화모듈과정에 해당하는 심화시험 2개로 구성됨.

(2) DPAFP(파리 알리앙스 프랑세즈 교원 전문가 학위)

○ DPAFP(Diplôme Professionnel de l'Alliance Française Paris Île-de-France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직접 발급하는 해외 프랑스어 교원 전문가 자격증이며, DAEFLE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자격증임.

○ 과정생은 필기시험과 인터뷰를 통해 선발됨.

○ 20주 기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총 535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짐.

- 실제의 현장교육능력을 대단히 강조하여 실제의 교습에 초점이 맞추어진 과정임.
-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법론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짐.
- DPAFP 과정의 내용
 - 문법적 접근
 -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학습
 - 클래스 관찰과 안내 능력
 - 발음 교수법
 - 학생들 평가방법
 - 언어 교습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교습척도 학습

참고 문헌

김현철, 신승희, 최한섭, 한상미' (2014), 『해외(중국 프랑스) 자국어 보급기관 교원 운영현황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민현식 외(2000), 『한국어 교사 자격 제도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 연구』, 사업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시애틀컨설팅(2019), 『한국어교원 자격 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index.do>

국가자격연수 보수교육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index.html>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s://www.ncs.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index.jsp>

국립국어원 한국어수어교원 자격제도 홈페이지

<https://sldict.korean.go.kr/kslteacher/main/main.do>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kspo/main/main.do>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ches.or.kr/> 참조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https://acei.arte.or.kr/index.do>

자격의 모든 것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https://www.q-net.or.kr/man001.do?gId=05&gSite=L>

자격의 모든 것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s://www.q-net.or.kr/man001.do?gId=67&gSite=L>

자격의 모든 것 Q-net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https://www.q-net.or.kr/man001.do?gId=66&gSite=L>

재단법인

한국간호인증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abone.or.kr/>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s://www.insports.or.kr/main/main.do#none>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홈페이지

<https://necte.kedi.re.kr/home.do>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health.or.kr/kps>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abEEK.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https://www.kuksiwon.or.kr/index.do>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welfare.net/site/Index.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

Cambridge Assessment 홈페이지

<https://www.cambridgeenglish.org/teaching-english/teaching-qualifications/celta/about-the-celta-course/>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홈페이지

<https://www.cambridgeinternational.org/why-choose-us/join-cambridge/>

TRINITY COLLEGE LONDON 홈페이지

<https://www.trinitycollege.com/qualifications/teaching-english/CertTESOL>

Trinity College London(2016). Certificate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CertTsol):
Validation Requirements from January 2016.

[부록 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별 세부 내용<역량진단 양성과정별 지표 총괄표>

1.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3개 영역, 11개 항목, 13개 준거, 26개 지표

	항목	준거	지표	구분	배점
1. 교육 여건 영역 (350)	1.1 발전 계획 (40)	1.1.1 발전계획의 적합성(40)	1.1.1.1 발전계획(특성화 포함)	정성	40
	1.2 교원 (250)	1.2.1 교원 확보의 적절성(180)	1.2.1.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 율	정량	50
			1.2.1.3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30
			1.2.1.4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 공 일치도	정량	30
			1.2.1.5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40
			1.2.1.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 공 일치도	정량	30
			1.2.2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70)	1.2.2.1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 기준 충족률	정량
		122 강의 만족도 및 강의평가 운영의 적절성	정량	20	
			정성	10	
	1.3 행·재 정 (50)	1.3.1 행·재정운영 의 적절성(50)	1.3.1.1 교육비(장학금 등) 환원율	정량	20
				정량	20
			1.3.1.2 행정지원의 충실성	정성	10
	1.4 수업 환경 (10)	1.4.1 수업환경의 적절성(10)	1.4.1.1 시설 활용의 적절성	정성	5
			1.4.1.2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	정량	0
				정성	5

교 육 과 정 영 역 (50 0)	2.1 교육 과정 (160)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160)	2.1.1.1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 기준 충족	정량	P/F
			2.1.1.2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90
			2.1.1.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70
	2.2 수업 (200)	2.2.1 수업의 총실성(200)	2.2.1.1 수업 규모의 적절성	정량	40
			2.2.1.2 수업 운영의 현장성	정량	30
				정성	30
			2.2.1.3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 력	정량	10
	2.2.1.4 교수자 역량 개발의 총실 성	정성	30		
	2.3 학생 (70)	2.3 학생 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70)	2.3.1.2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운 영 실적	정성	65
			2.3.1.3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	정성	5
2.4 교육 실습 (70)	2.4.1 교육실습 운영의 체계성(70)	2.4.1.1 교육실습체제 운영 실적 및 개선 노력	정성	70	
성 과 영 역 (15 0)	3.1 운영 성과 (30)	3.1.1 학생 유지 성과(30)	3.1.1.1 신입생 충원율 및 중도탈 락 학생비율	정량	30
	3.2 교육 성과 (110)	3.2.1 교원임용 및 취업 성과(70)	3.2.1.1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정량	70
		3.2.2 교육만족도(40)	3.2.2.1 재학생 만족도	정량	40
	3.3 환류 성과 (10)	3.3.1 환류노력(10)	3.3.1.1 환류노력	정성	10

※총 1,000점

2. 일반대학 교직과정: 3개 영역, 10개 항목, 12개 준거, 23개 지표

	항목	준거	지표	구분	배점	
1. 교육 여건 영역 (235)	1.2 교원 (200)	1.2.1 교원 확보의 적절성(130)	1.2.1.3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30	
			1.2.1.4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 공 일치도	정량	30	
			1.2.1.5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40	
			1.2.1.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 공 일치도	정량	30	
		1.2.2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70)	1.2.2.1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 기준 충족률	정량	40	
			1.2.2.2 강의 만족도 및 강의평가 운영의 적절성	정량 정성	20 10	
		1.3 행·재 정 (30)	1.3.1 행·재정운영 의 적절성(30)	1.3.1.2 행정지원의 충실성	정량	20
					정성	10
	1.4 수업 환경 (5)	1.4.1 수업환경의 적절성(5)	1.4.1.1 시설 활용의 적절성	정성	5	
	2. 교육 과정 영역 (495)	2.1 교육 과정 (140)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140)	2.1.1.1 교원자격 취득자 검정기 준 충족	정량	P/ F
2.1.1.2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90	
2.1.1.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 적 및 개선 계획				정성	50	
2.2 수업 (200)		2.2.1 수업의 충실성(200)	2.2.1.1 수업 규모의 적절성	정량	40	
				정량	30	
			2.2.1.2 수업 운영의 현장성	정성	30	
				2.2.1.3.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 력	정량	10
			정	30		

	2.3 학생 (85)	2.3.1 학생 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85)	2.2.1.4 교수자 역량 개발의 충실 성	정 성	60
			2.3.1.1 교직 적격자 선발을 위한 노력	정 성	40
			2.3.1.2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운 영 실적	정 성	40
			2.3.1.3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	정 성	5
	2.4 교육 실습 (70)	2.4.1 교육실습 운영의 체계성(70)	2.4.1.1 교육실습체제 운영 실적 및 개선 노력	정 성	70
3. 성 과 영 역 (15 0)	3.1 운영 성과 (30)	3.1.1 학생 유지 성과(30)	3.1.1.1 신입생 충원율 및 중도탈 락 학생비율	정 량	30
	3.2 교육 성과 (110)	3.2.1 교원임용 및 취업 성과(70)	3.2.1.1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정 량	70
		3.2.2 교육만족도(4 0)	3.2.2.1 재학생 만족도	정 량	40
	3.3 환류 성과 (10)	3.3.1 환류 노력(10)	3.3.1.1 환류 노력	정 성	10

※총 880점(1,000점 기준으로 환산)

3. 교육대학원(양성기능): 3개 영역, 11개 항목, 13개 준거, 28개 지표

	항목	준거	지표	구분	배점
1. 교육 여건 영역 (350)	1.1 발전계획 (40)	1.1.1 발전계획 의 적합성(40)	11.1.1.1 발전계획(특성화 포함)	정성	40
	1.2 교원 (250)	1.2.1 교원 확 보의 적절성 (180)	1.2.1.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50
			1.2.1.3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 율	정량	30
			1.2.1.4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 일 치도	정량	30
			1.2.1.5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 율	정량	40
			1.2.1.6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 치도	정량	30
			1.2.2.1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정량	40
	1.2.2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 (70)	1.2.2.2 강의 만족도 및 강의평가 운 영의 적절성	정량	20	
			정성	10	
	1.3 행·재정 운영의 적절성 (50)	1.3.1 행·재정 운영의 적절성 (50)	1.3.1.1 교육비(장학금 등) 환원율	정량	20
			1.3.1.2 행정지원의 충실성	정량	20
	1.4 수업환 경의 적절성(10)	1.4.1 수업환 경의 적절성(10)	1.4.1.1 시설 활용의 적절성	정성	5
			1.4.1.2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	정량	0
2. 교육 과정 영역 (500)	2.1 교육과 정 (180)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 절성(180)	2.1.1.1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정량	P/F
			2.1.1.2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90
			2.1.1.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70
			2.1.1.4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정성	20
	2.2 수업 (200)	2.2.1 수업의 충실성(200)	2.2.1.1 수업 규모의 적절성	정량	40
			2.2.1.2 수업 운영의 현장성	정량	30
			2.2.1.2 수업 운영의 현장성	정성	30
			2.2.1.3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정량	10
			2.2.1.3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정성	30

	2.3 학생 (50)	2.3.1 학생 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50)	2.2.1.4 교수자 역량 개발의 충실성	정성	60
			2.3.1.1 교직 적격자 선발을 위한 노력	정성	5
			2.3.1.2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운영 실적	정성	40
			2.3.1.3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정성	5
2.4 교육실 (70)	2.4.1 교육실습 운영의 체계성(70)	2.4.1.1 교육실습체제 운영 실적 및 개선 노력	정성	70	
3. 성과 영역 (150)	3.1 운영성 과 (30)	3.1.1 학생 유치 성과(30)	3.1.1.1 신입생 충원을 및 중도탈락 학생비율	정량	30
			3.2 교육성 과 (70)	3.2.1 교원임용 및 취업 성과	정량
	3.2 교육성 과 (110)	3.2.2 교육만족도(40)	3.2.1.1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정량	40
			3.2.2.1 재학생 만족도	정량	40
3.3 환류성 과 (10)	3.3.1 환류 노력(10)	3.3.1.1 환류 노력	정성	10	

※총 1,000점

4. 교육대학원(재교육 기능): 3개 영역, 10개 항목, 11개 준거, 17개 지표

	항목	준거	지표	구분	배점	
1. 교육 여건 영역 (215)	1.1 발전계획 (40)	1.1.1 발전계획의 적절성(40)	1.1.1.1 발전계획(특성화 포함)	정성	40	
	1.2 교원 (150)	1.2.1 교원 확보의 적절성(80)	1.2.1.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	50	
			1.2.1.2 전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도	정량	30	
		1.2.2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70)	1.2.2.1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정량	40	
			1.2.2.2 강의 만족도 및 강의평가 운영의 적절성	정량 정성	20 10	
	1.3 행·재정 (20)	1.3.1 행·재정운영의 적절성(20)	1.3.1.1 교육비(장학금 등) 환원율	정량	20	
	1.4 수업환경 (5)	1.4.1. 수업환경의 적절성(5)	1.4.1.2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	정량 정성	0 5	
	2. 교육 과정 영역 (385)	2.1 교육과정 (160)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160)	2.1.1.2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90
				2.1.1.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70
2.2 수업 (160)		2.2.1 수업의 충실성(160)	2.2.1.1 수업 규모의 적절성	정량	40	
			2.2.1.2 수업 운영의 현장성	정량 정성	30 30	
			2.2.1.4 교수자 역량 개발의 충실성	정성	60	
2.3 학생 (65)	2.3.1 학생 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65)	2.3.1.2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운영 실적	정성	60		
		2.3.1.3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정성	5		
3.	3.1	3.1.1 학생 유치 성과(30)	3.1.1.1 신입생 충원률 및 중도탈락 학생비율	정량	30	

성과 영역 (80)	운영성 과 (30)				
	3.2 교육성 과 (40)	3.2.2 교육만족 도(40)	3.2.2.1 재학생 만족도	정량	40
	3.3 환류성 과 (10)	3.3.1 환류 노 력(10)	3.3.1.1 환류 노력	정성	10

※총 1,000점

5. 점수 산출 방법

구분	교육여건 영역	교육과정 영역	성과 영역	총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350	500	150	1,000
일반대학 교직과정	235	495	150	880 *
교육대학원 (양성 기능)	350	500	150	1,000
교육대학원 (재교육 기능)	215	385	80	680 *

[부록2] 간호교육인증평가 심사 기준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처음 단계는 평가원이 제시한 6개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부문의 충족 여부에 비추어 대학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 평가로 시작함.
- 비전 및 운영 체계는 학과가 국내외 간호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간호 전문직의 보편적 특성, 대학 특성,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과의 비전 및 교육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과의 비전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학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표 1> 비전 및 운영 체계 영역 심사 내용²⁵⁾

영역	부분	항목	내용	
I. 비전 및 운영 체계	1.1. 비전과 교육 목표	1.1.1. 교육 목적과 목표	인증 기준	학과의 간호교육 목적과 목표는 대학의 비전과 교육 목표, 지역 사회의 특성, 보건 의료 환경 변화와 국내외 간호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핵심 역량 등을 반영하여 명문화되어 있으며 구성원과 일반 대중이 알 수 있게 공지되고 있음.
			검토	1. 학과의 교육 목적과 목표는 대학의 비전과 교육 목표, 지역 사회의 특

25) 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작성 내용 중 [표]의 양식 및 ‘작성 안내’는 [부록1]을 참고

			<p>성, 보건 의료 환경 변화와 국내외 간호 전문직(ICN, WHO,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핵심 역량 등을 반영하여 명문화되어 있는가?</p> <p>2. 교육 목적과 목표는 구성원과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고 있는가?</p> <p>3. 교육 목적과 목표를 개정할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p>
		작성 내용	<p>1. 학과의 교육철학과 목적,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 지역사회의 특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기술함. 이러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명문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기술함.</p> <p>2.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구성원과 일반 대중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기술함.</p> <p>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할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기술함.</p> <p>※ 개정하지 않는 경우,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과정을 중심으로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 을 기술함.</p>
		비치 자료	<p>1. 교육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p> <p>2. 개정할 경우,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p>

			활동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등 기타)
1.1.2.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설정	인	증	학과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는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쳐 명문화되어 공지되어 있음.
	검	토	1. 학과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학과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명문화하고 있는가? 2.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 3. 프로그램 학습 성과([부록2] 참고)를 학과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작	성	1. 학과가 설정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내용을 제시하고, 학과의 교육 목적과 목표가 반영되어 있는지, 평가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명문화하고 있는지를 제시함. 2.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기술함. ※ 개정하지 않는 경우,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과정을 중심으로 ‘개정 여부에

			<p>대한 검토 과정' 을 기술함.</p> <p>3. 학과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구성원에게 어떻게 공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기술함.</p>
		비치자료	<p>1. 조직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설문조사, 문헌고찰, 사례연구 등)</p> <p>2.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활동,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의자료, 회의록 등 기타)</p> <p>3.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p>
		인증기준	<p>학과는 교육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비전과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학과 내외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조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p>
	1.1.3. 발전 계획 수립 과 추진	검토사항	<p>1. 학과의 교육 목적과 목표,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장단기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p> <p>2. 장단기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 특히 발전 기금이 있는 경우, 발전 기금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집행한 실적이 있는가?</p> <p>3.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학과 내외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조직과 활동 내용이 있는가?</p> <p>4. 발전 계획이 추진된 실적이 있는가?</p>
		작성	<p>1. 학과의 질 관리와 발전을 위한 장·단기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p>

			<p>히 기술하고, 연차별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간략히 기술함. 또한 장·단기 발전 계획이 학과의 교육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1~2쪽 이내의 [표]로 작성함.</p> <p>2. 학과 장단기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과 관련하여 학과가 수립한 단계별·연차별 예산 계획(발전 기금 포함)을 간략히 [표]로 제시함. 학과 발전 계획과 연계된 발전 기금이 있는 경우, 최근 2년간의 발전 기금의 집행 목적, 집행 계획, 집행 실적 등을 기술함.</p> <p>3. 학과 발전 계획 추진 및 발전 기금 관리 조직의 구성 현황과 활동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발전 계획 추진 과정에서 동문, 지역 사회 구성원 또는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기술함</p> <p>4. 최근 2년간 발전 계획에 따른 추진 과정 및 실적을 [표 1.1.3-1]에 기술함.</p>
		비치자료	<p>1. 학과 발전 계획서(예산 포함)</p> <p>2. 학과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 회의록 등 (최근 2년)</p> <p>3. 학과 발전 계획의 추진 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발전 기금 집행 실적 포함)(최근 2년)</p>
1.2.	1.2.1.	인	학과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과 운영

	행정 과 재 정	운영 체 계 와 지 원	증 기 준	을 위하여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학생 규모에 비례하는 적절한 학과 운영 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학(과)장은 간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검 토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과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2.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 조교)이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대학 재정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3. 학(과)장은 간호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간호학 전공자인가? 4. 학(과)장의 학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5. 교수 인사, 학과 예산 편성과 집행, 기타 학과 운영 등에 학(과)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작 성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의 행정 체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학과 운영 규정, 인사 규정, 업무 분장표, 조직표 등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함. 2. 학과 운영 지원 인력의 현황을 [표 1.2.1-1]에 따라 작성하고, 학사, 학생, 교육, 수업, 실습 등 담당 업무별로 직원 및 조교 확보 현황과 개

			<p>인별 담당 업무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p> <p>※ 학과 운영을 지원하는 모든 인력의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p> <p>3. 학과 운영 지원 인력 중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 현황을 [표 1.2.1-2]에 따라 작성하고, 확보 기준에 따라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와 행정 전담 인력의 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검토함.</p> <p>4. 학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학장 또는 학과장의 현황을 [표 1.2.1-3]에 작성하고,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검토함.</p> <p>5. 학장 또는 학과장의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대학 인사 규정, 학과 운영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함.</p> <p>6. 이에 근거하여 학장 또는 학과장이 교수 인사(채용, 승진, 해외연수 등),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 본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 등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최근의 관련 근거를 예시함.</p>
		비치자료	<p>1. 대학 인사 규정</p> <p>2. 학과 운영 규정</p> <p>3. 대학과 학과의 조직도, 학과 위원회 위원 명단</p> <p>4. 학과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정책 결</p>

			<p>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5. 학과 운영 지원 인력의 고용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행정직원 또는 조교의 발령 대장, 고용계약서, 급여 지급 대장 등)</p> <p>6. 학과 보직 교수와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표, 학(과)장의 발령 대장</p> <p>7. 학(과)장의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규정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부 록	1. 행정 전담 인력 월별 유지 현황표(연내에 변동이 있는 경우)
	1.2.2. 재정 확보 와 운용	인 증 기 준	<p>학과는 학생 규모, 등록금 수입에 비례하여 학과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실습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적정 수준 이상의 실험 실습비를 교비 회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또한 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 수준으로 집행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음.</p>
		검 토 사 항	<p>1.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과 재학생 수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학과 예산을 적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p> <p>2. 교비 회계에서 실험 실습비를 재학생 1인당 연간 20만 원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p> <p>*전문학사 학위과정: 15만 원 이상</p> <p>3. 학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p>

			<p>4. 학과 예산과 실험 실습비 집행률이 각각 8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p> <p>5.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가?</p>
		작성 내용	<p>1. 재학생 1인당 학과 예산 확보 현황을 [표 1.2.2-1]에 따라 작성하고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과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학과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등을 간략히 서술함.</p> <p>2. 실험 실습비로 편성·집행한 예·결산 내역을 교비 회계 및 국고 회계로 구분하여 [표 1.2.2-2]에 따라 작성함. 교비 회계에 의한 실험 실습비 현황을 [표 1.2.2-3]에 따라 작성하고, 학생 1인당 연간 20만 원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함.</p> <p>※ 국고보조금은 실험실습비 예산([표 1.2.2-2]의 (가)에 해당)의 25% 내외에서 인정하며 실습기자재 구입비와 유지보수비에 한함.</p> <p>3. 학과의 예산 편성 시기와 절차,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을 간략히 제시하고, 학과 예산 편성에서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간략히 기술함.</p> <p>4. 학과 예산 대비 집행 현황을 [표 1.2.2-4]에 따라 작성하고, 집행률이 80% 이상 유지되는지 검토함. 단, 예산 집행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변</p>

			<p>동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함. 또한 실험 실습비 예산 대비 집행률을 80% 이상 집행하고 있는지 검토함.</p> <p>5.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간략히 기술함.</p>
		비치자료	<p>1. 학과 예산의 편성 내역(최근 5년)</p> <p>2. 예산 편성 및 심의 관련 자료(공문, 위원회 서류 등) (최근 2년)</p> <p>3. 학과 예산의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등 근거 자료(최근 2년)</p> <p>4. 실험 실습비 예산 및 결산 서류(최근 2년)</p> <p>5. 실험 실습비 운영 규정</p> <p>6. 실험 실습비 관련 국고 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1.3. 운영 개선	1.3.1. 운영 개선 노력	인증기준	<p>학과는 학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또는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음.또한 학과 내·외부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와 자체 평가, 인증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학과 운영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p>
		검토사항	<p>1. 학과 운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가?</p> <p>2. 학과 운영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는가?</p> <p>3. 학과 운영 개선을 위해 학과 내·외부의 요구(설문 조사, 자체 평가, 인증 평가 결과 분석 등)를 수렴하고</p>

			<p>있는가?</p> <p>4. 학과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수립된 요구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p>
		작성 내용	<p>1. 학과 운영 개선 관련 조직의 현황과 역할, 권한 등을 기술함. 최근 2년 해당 조직의 활동 실적을 기술함.</p> <p>2. 최근 2년 학과 운영 개선과 관련된 예산 편성 및 집행 결과를 기술함.</p> <p>3. 학과 운영에 대한 내·외부(교수, 학생, 졸업생, 학부모, 간호 현장 등)의 개선 요구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과 정책을 간략히 기술함. 특히 인증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작성함.</p> <p>4. 최근 2년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질 개선을 위해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개선에 활용한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함.</p>
		비치 자료	<p>1. 학과 운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 명단, 회의록 등</p> <p>2. 학과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집행 실적 포함)</p> <p>3. 학과 운영 개선 요구 수립의 방법, 대상, 결과, 활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학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 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교과목 이수 체계와 이수 학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론 교육, 실습실 교육 및 임상 실습 교육은 성과 기반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임상 실습은 임상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임상 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또한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교육 과정 개선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표 2〉 교육 과정 영역 심사 내용

영역	부분	항목	내용	
II. 교육과정	2.1. 성과 기반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학습 성과 기반 교육과정 구성	인 증 기 준	학과의 교육 과정은 구성 원리에 따라 학과가 설정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와 핵심 기본 간호술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음.
			검 토 사 항	1. 학과의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 구성 원리에 따라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 학습 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3. 핵심 기본 간호술은 실습 교과목과 연계되어 있는가?
			작 성 내 용	1. 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구성 원리와 논리적 근거를 간략히 기술함. 2. 학습 성과가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간

			<p>략히 기술하고, 연계성을 개정한 경우 검토 과정을 일련의 절차로 요약한 다음, [표 2.1.1-1]에 따라 연계 정도와 성취 수준을 포함하여 연계성을 제시함. 학과가 설정한 모든 학습성과가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함.</p> <p>※ 간호 실무의 윤리와 관련된 학습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에 반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3. 핵심 기본 간호술이 교과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간략히 기술하고, [표 2.1.1-2]에 따라 연계 정도와 성취 수준을 포함하여 연계성을 제시함.</p>
		비치자료	<p>1. 전 학년 교육 과정 편성표(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된 교육 과정 편성표)</p> <p>2. 학습 성과와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개정한 경우, 개정 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2.1.2. 교과목 이수 체계 및 이수 학점	인증기준	<p>학과의 교과목 이수 체계와 이수 학점은 학생이 교양인과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음. 또한 학생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대학 및 학과의 졸업 이수 규정을 갖추어 이를 적용하고 있음.</p>
		검	<p>1. 교과목 이수 체계는 적절한가? (교양</p>

			<p>/전공, 전공기초/전공 필수/전공 선택, 이론/실습 교과목 편성의 균형 및 적절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의 연계성)</p> <p>2. 교양 교과목을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하고 있는가?</p> <p>토 *전문학사 학위과정: 10학점 이상</p> <p>3. 전공 기초를 제외한 전공 교과목의 이수 학점이 최소 70학점 이상, 최대 90학점 이하인가?</p> <p>4. 전공 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고 있는가?</p> <p>5.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 등의 관리 규정을 갖추어 이를 적용하고 있는가?</p>
		작성 내용	<p>1. 최근 5개 학년도(2021년~2017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 과정에서 교양 교과목, 전공 기초 교과목, 전공 필수 및 선택 교과목,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의 이수학점 편성 현황을 [표 2.1.2-1]에 따라 작성함. 또한,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교육과정 편성의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교양과 전공, 필수와 선택, 이론과 실습 교과목 편성의 균형과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 간략히 기술함.</p> <p>2.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3.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p>

			<p>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간호학과에서 개설한 인문 사회과학 관련 교과목이 현재 재학생에게 어떻게 이수되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인문 사회과학 교과목 이수학점 산정 시 교직과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p> <p>4. 대학 및 간호학과의 졸업 이수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에 따라 졸업 이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검토함.</p>
		비치자료	<p>1. 전 학년 교육 과정 편성표(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된 교육 과정 편성표)</p> <p>2.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 등의 관리 규정</p> <p>3. 졸업생 전 학년 성적 증명서(전산 확인 가능)</p>
성과기반교육과정 운영	2.2.1. 이론교육	인증기준	<p>학과는 이론 교과목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강의 계획서에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교과목 특성에 따라 적정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학과는 교육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p>
		검	<p>1. 이론 교과목별 학습 성과는 프로그</p>

과 학 업 성 취 평 가		토 사 항	<p>램 학습 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강의 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p> <p>2. 이론 교과목별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p> <p>3. 전공 이론 교과목의 강좌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8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강좌당 학생 수 50명 이하 권장)</p> <p>4. 교과목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학생 수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p> <p>5. 학생의 교과목별 학업 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p>
			작 성 내 용

			<p>※ 해당 교수 학습 방법의 운영 과정이나 결과는 강의 자료 또는 강의 포트폴리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함.</p> <p>3. 최근 4개 학기 전공 이론 교과목(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의 강좌당 학생 수 현황을 [표 2.2.1-2]에 따라 작성하고, 2020년도 1, 2학기를 제외한 최근 2개 학기(2019년도 1, 2학기) 강좌당 학생 수가 평균 8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함.</p> <p>4. 교과목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학생 수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과정, 결과 등을 기술함.</p> <p>※ 강좌당 학생 수를 평균 80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교과목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여 별도로 작성함.</p> <p>5. 이론 교과목별 학습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실적 등을 기술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과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도가 실시되고 있는지 등 학습 성과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함. 해당 교과목의 학업성취 평가·관리 실적의 증빙 자료를 ‘부록’에 첨부함.</p>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의시간표(최근 4개 학기) 2. 강좌당 적정 학생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 3.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 및 강의 자료(또는 강의 포트폴리오)(최근 4개 학기) 4. 전공 이론 교과목의 강좌별 출석부(최근 4개 학기) 5. 이론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 성취 평가관리, 분석, 수업 개선 반영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4개 학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공 이론 교과목 강의 계획서(최근 2개 학기, 학기별 2개 교과목)
	2.2.2. 실습실 교육	인	<p>학과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 및 핵심 기본 간호술을 반영하여 실습실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강의 계획서에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음. 또한 실습실 교육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지도하고 있음. 교과목별 실습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율실습과 시뮬레이션 실습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실습 교과목별 학습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p>
		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학습 성과 및 핵심 기본 간호술을 반영하여 실습실 교육의

			사 항	<p>교과목별 학습성고가 설정되고 강의 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가?</p> <p>2. 실습실 교육에서 교과목 학점 당 실습 시간이 1:2로 운영되고 있는가?</p> <p>3. 기본 간호학 실습 교과목에서 실습 지도 교원 대 학생 배치 비율이 1:25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실습 조교 참여 권장, 학생 배치 비율에 산입되는 실습 조교의 경우 임상 경력 2년 이상)</p> <p>4. 기본 간호학 실습 교과목 학점의 일부를 전임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가?</p> <p>5. 실습 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 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지도자용 학생용 구분, 이론과 실습 담당 교수가 다른 경우 지도자용을 반드시 활용 등)</p> <p>6. 자율 실습을 위해 주당 적절한 시간을 개방하고 적절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가?(주당 4시간 이상 운영, 학생 수에 비례한 적정성 검토, 간호사 면허 소지자)</p> <p>7. 시뮬레이션 실습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임상 실습의 일부 시간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학점 및 시수, 시나리오 적용 현황(학생 배치 및 지도 인원 포함), 지원인력 활용 등)</p> <p>8. 실습실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 성과</p>
--	--	--	--------	--

			<p>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p>
작성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학습 성과와 핵심 기본 간호술을 반영하여 실습실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 성과와 핵심 기본 간호술을 설정하고,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 이를 강의 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함. 2. 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의 실습실 교육에서 교과목별 학점, 이수 시간 등을 검토하여 학점당 실습 시간이 1:2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기술함. <p>※ [표 2.1.2-1]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실습실 실습에서 교과목별 학생 배치와 지도 현황을 [표 2.2.2-1]에 따라 작성함. 최근 4개 학기 기본 간호학 실습 교과목의 실습 지도 교원대 학생 배치 비율이 1:25 이하로 유지되는지 검토함. [표 2.2.2-2]에 따라 학생 배치 비율에 산입되는 실습 조교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함. 또한 실습 조교 활용 등 효과적인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을 위한 학과의 노력을 기술함. 4. 전임 교원이 학기당 기본 간호학 실습 교과목 학점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지 현황을 기술함. 5. 실습 교과목별 실습 지침서 현황을

			<p>[표 2.2.2-3]에 따라 작성하고, 교과 목별 학습 성과가 실습 지침서에 제시되고 있는지, 실습 지침서를 어떻게 구성하여 실습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6. 정규 교과 시간 외에 학생의 실무 능력 증진과 자율적인 연습을 위한 자율 실습 운영 현황을 [표 2.2.2-4]에 따라 작성하고, 2020년도 1, 2학기를 제외한 최근 2개 학기(2019년도 1, 2학기)에 학생 규모와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개방 시간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실습을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함. 또한 자율 실습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현황과 자율실습 지도 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실습 운영시간: 4시간 이상/주 운영, 학생 수에 비례한 적정성 검토 ※ 전담 인력의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물품 사용 신청·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술함.(학생이 자율실습 시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는 방법, 전담 인력이 사용한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 등) <p>7. 시뮬레이션 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현황을 [표 2.2.2-5]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1쪽 이내로 기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상 실습의 일부 시간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학점당 시수(1:2), 시나리오 및 모듈 활용 현황, 교원 대비 학생 배치 인원(1:25),
--	--	--	--

			<p>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8명 이하), 지도 교원 및 지원 인력 적격성, 학점 당 모듈별 운영 시간, 현장 실습 교과목과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적절성을 검토함.(이 경우 임상 실습시 간의 12% 이하 또는 최고 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p> <p>8. 실습 교과목별 학습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실적 등을 기술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실습 교과목의 수업 개선과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 내용, 학습 성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함.</p>
		비 치 자 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습실별 시간표(최근 4개 학기) 2. 실습실 교육 운영 규정 3. 실습 교과목별 실습 지침서(학생용, 지도자용 각 1부) 4. 실습 교과목별 실제 학생이 사용한 실습 지침서 각 1부(최근 2개 학기) 5. 기본 간호학 실습 분반별 출석부 각 1부(최근 4개 학기) 6. 실습실 사용 일지(최근 4개 학기) 7. 자율 실습 운영 일지(최근 4개 학기) 8. 실습 지도 교원, 실습 조교, 자율 실습 전담 인력의 임용 관련 서류(이력, 경력,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운영 지침(임상 실습 1,000시간에 시뮬레이션 실습 시간 12%를 산정할 경우 필수)

			<p>10.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4개 학기): 시뮬레이션 모듈,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는 경우 표준화 환자 교육 자료 포함한 모듈,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운영 개선 활동 회의록 등</p> <p>11. 실습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 성취 평가·관리, 분석, 실습 개선 반영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4개 학기)</p> <p>12. 실습실 실습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최근 4개 학기)</p>
		부 록	<p>1. 실습실 실습 교과목 강의 계획서(최근 2개 학기, 학기별 1개 교과목)</p> <p>2. 학칙 또는 규정을 개정할 경우 비교표(또는 요약본)</p>
	2.2.3. 임상 실습 교육	인 증 기 준	<p>학과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 및 핵심 기본 간호술을 반영하여 임상 실습 교과목별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강의 계획서와 실습 지침서에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실습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임상 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충분한 임상 실습 시간을 확보하고, 학습 성과 달성에 적합한 임상 현장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임상 실습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p>
		검	1. 프로그램 학습 성과와 핵심 기본 간

			<p>호술을 반영하여 임상 실습 교과목별 학습 성과가 설정되고 강의 계획서와 실습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가?</p> <p>2. 임상 실습 지침서의 체계적인 구성 및 활용이 적절한가?(학생용 실습 지침서와 지도자용 실습 지침서의 구분)</p> <p>3. 임상 실습 교육 학점당 실습 시간이 1:3으로 운영되고 있는가?</p> <p>4. 임상 실습 시간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당해 연도 졸업생을 포함하여 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이 1,000시간 이상 이수, 시뮬레이션 실습은 4학점 또는 12%를 초과할 수 없음)</p> <p>5. 실습 교과목 학습 성과에 적합한 임상 실습을 운영하고 있는가?</p> <p>6. 임상 실습 교과목 평가는 현장 지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p> <p>7. 학생의 임상 실습 교과목별 학업 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임상 실습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p>
		<p>토사항</p>	<p>1. 프로그램 학습 성과와 핵심 기본 간 호술을 반영하여 임상 실습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 이를 강의 계획서와 실습 지침서에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함.</p>

			<p>2. 실습 교과목별 실습 지침서 현황을 [표 2.2.3-1]에 따라 작성하고, 교과목별 학습 성과가 실습 지침서에 제시되고 있는지, 실습 지침서를 어떻게 구성하여 임상 실습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3. 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의 임상 실습 교육에서 임상 실습 교과목별 학점, 이수 시간 등을 검토하여 학점당 임상 실습 시간이 1:3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기술함.</p> <p>4. 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의 임상 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실습 시간 편성 현황과 당해 연도 졸업생의 임상 실습 이수 현황을 [표 2.2.3-2], [표 2.2.3-3]에 각각 작성함. 당해 연도 졸업생을 포함하여 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의 임상 실습이 1,000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함.</p> <p>※ 일 실습시간 9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됨.</p> <p>※ 매학기 방학 중 실습이 학생 개인별 최대 몇 주간 운영되는지 검토하고, 주말, 공휴일, 방학 중 실습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간략히 기술함.</p> <p>※ [표 2.2.3-3]은 부록으로 제시함.</p> <p>※ 단, 임상 실습의 일부 시간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학점당 시수(1:2), 시나리오 및 모듈 활용 현황, 교원 대비 학생 배치 인원(1:25), 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8명 이하), 지</p>
--	--	--	--

			<p>도 교원 및 지원 인력 적격성, 학점당 모듈별 운영 시간, 현장 실습 교과목과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적절성은 [표 2.2.2-5]에 따라 검토함.(이 경우 시뮬레이션 실습은 4학점 또는 임상 실습 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p> <p>5. 실습 교과목별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 단위의 배치가 적절한지, 임상 실습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기술함. 2019년도 1, 2학기의 경우 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한 실적을 제시함.</p> <p>6. 실습 교과목별 학습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실적 등을 기술함. 현장 지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술함.</p>
		비 치 자 료	<p>1. 임상 실습 교과목별 실습 지침서(학생용, 지도자용 각 1부)</p> <p>2. 임상 실습 교과목별 실제 학생이 사용한 실습 지침서 각 1부(최근 2개 학기)</p> <p>3. 임상 실습 배치 현황 일람표(최근 4개 학기)</p> <p>4. 임상 실습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 성취 평가·관리, 분석, 임상 실습 개선 계획 또는 반영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4개 학기)</p> <p>5. 임상 실습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최근 4개 학기)</p>

			<p>부 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별 임상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2. 임상 실습 교과목 강의 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2.2.4. 임상 실습 지도	인 증 기 준	<p>학과는 임상 실습 교육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실습 단위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임 교원을 포함한 임상 실습 지도 교원이 일정 기준 시간 이상 참여하여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음. 또한 원거리 실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p>
		검 토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 실습 교육 운영 규정이 있는가? 2. 임상 실습의 실습 단위당 학생 배치 인원이 최대 8명 이하인가? 3. 임상 실습 지도 교원의 전체 임상 실습 지도 시간이 과목별로 학생 임상 실습 시간의 10% 이상인가? 4. 학생이 지도 받은 임상 실습 시간 중 전임 교원의 지도 시간이 학기별 30% 이상인가? 5. 임상 실습 지도 내용과 방법이 적절한가?(임상 실습 지도 교원의 실습 지도 내용과 지도 방법, 전임 교원의 역할) 6. 원거리 실습 지원 관련 지원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작 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 실습 운영을 위하여 실습 단위별 학생 배치, 담당 교수 및 현장

			<p>지도자의 지도, 원거리 실습 지원 등에 관한 규정(또는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p> <p>2. 최근 4개 학기의 실습 단위당 학생이 8명 이하로 배치되고 있는지 검토함.</p> <p>3. 최근 2개 학기 임상 실습 지도 교원이 실제로 지도하는 시간을 [표 2.2.4-1]에 따라 작성하고, 임상 실습 지도 교원의 실습 지도 시간이 학생 실습 시간을 기준으로 교과목별 최소 10% 이상 지도되고 있는지 검토함.</p> <p>4. 최근 2개 학기 학기당 전임 교원의 임상 실습 지도 시간을 [표 2.2.4-1]에 따라 기재하고, 전체 임상 실습 지도 시간의 30% 이상(또는 학생 임상 실습 시간을 기준으로 3% 이상)이 되는지 검토함.</p> <p>5. 임상 실습 지도 교원의 임상 실습 지도 내용과 지도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전임 교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히 제시함.</p> <p>6. 원거리 임상 실습 기관이 있는 경우, 학생의 임상 실습에 대한 대학의 지원(예: 교통편, 기숙사, 식비 등) 체계와 실적을 기술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검토함.</p>
		비치자	<p>1. 임상 실습 운영 규정 또는 지침</p> <p>2. 임상 실습 배치 현황 일람표(최근 2개 학기)</p>

			<p>3. 강의 시간표(최근 2개 학기)</p> <p>4. 학생이 실제 활용한 임상 실습 지침서, 임상 실습 지도 교원의 임상 실습 지도 일지 등 임상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의 실습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개 학기)</p> <p>5. 원거리 실습 지원 실적 증빙 자료(최근 2년)</p>
		부 록	1. 학생별 임상 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2.3. 교 육 과 정 개 선	2.3.1. 교 육 과 정 개 선 노 력	인 증 기 준	학과는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과 내외의 요구를 수렴하고 교육 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와 교육 과정 운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있음.
		검 토 사 항	<p>1.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 조직, 예산을 포함한 질 관리 체계가 있는가?</p> <p>2.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 수렴 절차와 제도가 있는가?</p> <p>3. 교과목의 지속적인 질 개선(CQI),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p>
		작 성 내 용	1.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체계로서 관련 규정, 조직 구성, 예산 현황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최근 5년간 해당 조직의 활동 실적과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

			<p>행 현황을 작성함.</p> <p>2. 교육 과정의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 수렴 절차와 제도를 어떻게 갖추어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3. 최근 2년 학과의 교육 목표 달성 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결과, 교과목의 CQI 결과, 강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과정의 주기적인 개선에 활용한 실적을 기술함.</p>
		비치자료	<p>1.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규정</p> <p>2.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회의록 등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5년)</p> <p>3. 교육 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5년)</p> <p>4. 교육 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p> <p>5. 교육 목표 달성 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결과, 강의 평가(이론 교과목, 실습 교과목) 결과 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 자료(최근 2년)</p>

- 학생 영역에서는 학과가 학생의 학과 적응과 진로 개발을 위해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학생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성 함양, 학과 적응 및 직업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학업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 외 학생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또한 안전한 임상 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리 규정을 갖추어 임상 실습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표 3> 학생 영역 심사 내용

영역	부분	항목	내용	
Ⅲ. 학생	3.1. 학생 지도	3.1.1. 학생 지도 체계	인 증 기 준	학과는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진로 지도를 위해 적절한 지도 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검 토 사 항	1. 학과의 학생 지도 체계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는가? 2. 교수별 정기적인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작 성 내 용	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주요 내용, 지도 교수 제도, 학생 지도 결과의 활용 등 학과의 학생 지도 체계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함. 2. 최근 4개 학기의 교수별 학생 상담 및 지도 실적을 [표 3.1.1-1]에 따라 작성하고,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함.
			비 치	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2. 교수별 상담 및 지도 학생 명단

		자료	3. 교수별 상담 및 지도 실적의 증빙 자료(일지 또는 전산 기록 등)
	3.1.2. 학생 지도 프로그램	인증기준	학과는 학생들의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을 목적으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검토사항	1.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2.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작성내용	1.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과 적응, 인성 함양 및 직업 적응을 위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의 현황을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 특징,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1쪽 이내로 기술함. 2. 2020년도 1, 2학기를 제외한 최근 2개 학기(2019년 1, 2학기)의 학과 적응, 인성 함양 및 직업 적응을 위한 교과목 운영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표 3.1.2-1]에 따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함. 3. 2020년도 1, 2학기를 제외한 최근 2개 학기(2019년 1, 2학기)의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 및 학과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기술함.
		비치자	1.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증빙 자료(명단, 결과 보고서, 공문 등)

			료	2.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자료
3.2. 학생 지원과 안전 관리	3.2.1. 학생 지원	인 증 기 준		학과는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학생 장학금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여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교과 외 학생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검 토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2. 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전문학사 학위과정: 동일 3. 학생이 주최하는 교과 외 학생 활동이 운영된 실적이 있는가? 4. 학생이 주최하는 교과 외 학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대학 또는 학과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는가?
		작 성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생 선발 및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선발 방법, 장학생 공지방법 등을 1/2쪽 이내로 간략히 기술함. 2. 최근 2년간 학과 등록금 총액, 교외와 교내 장학금 금액 등 장학금 수혜 현황을 [표 3.2.1-1]에 따라 작성하고, 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지급비율이 매년 10% 이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검토함. 3. 최근 2년간 학과 학생이 수혜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수혜 	

			<p>인원과 지급액 등 지원 실적을 [표 3.2.1-2]에 따라 작성함.</p> <p>4. 최근 2년간 학생이 주최하는 교과 외 학생 활동의 운영 현황을 학술 연구, 사회 봉사, 취미 활동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표 3.2.1-3]에 따라 작성함.</p> <p>5. 학생이 주최하는 교과 외 학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간략히 기술하고 대학 또는 학과의 행·재정적 지원 현황을 [표 3.2.1-3]에 따라 작성함.</p>
		비 치 자 료	<p>1. 장학금 지급 규정</p> <p>2. 장학생 선발,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수 회의 자료, 공문 등) (최근 2년: 2018년, 2019년)</p> <p>3. 장학금 지급 실적의 증빙 자료(지급 대상 명단을 포함한 예산 집행 서류 등) (최근 2년: 2018년, 2019년)</p> <p>4. 교과 외 학생 활동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명단, 홍보물 등, 최근 2년)</p> <p>5. 교과 외 학생 활동 지원 관련 예산 집행 자료(최근 2년)</p>
		부 록	1.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 공시 사본(최근 2년: 2018년, 2019년)
	3.2.2.	인 증 기 준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임상 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고 있으며, 실습 전 검진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관 리 검	1. 학과는 임상 실습 안전 관련 규정을

			<p>갖추고 있는가?</p> <p>2.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보험, 비상 연락망 체계 등)</p> <p>3. 임상 실습 전 기본적인 검진 사항과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결핵 검진, B형 간염 예방 접종 등)</p>
		작성 내용	<p>1. 임상 실습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과가 마련하고 있는 규정 또는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p> <p>※ 실습 교육(교내 실습 포함) 학생 안전 및 인권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추가로 기술함.</p> <p>2. 보험 가입 현황, 비상 연락망 체계 배포,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한 학과의 임상 실습 안전 관리 대책을 기술함.</p> <p>3. 결핵 검진, B형 간염 예방 접종 등을 포함한 학생의 임상 실습 전 기본적인 검진 사항과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검토함. 또한, 실습 기관별 요구 사항에 따른 검진 및 예방 접종 관리 노력을 간략히 기술함.</p>
		비치 자료	<p>1. 임상 실습 안전 관리 관련 제반 규정</p> <p>2. 안전 관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 비상 연락망,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최근 2년)</p> <p>3. 임상 실습 전 검진 및 예방 접종 관</p>

				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	--	--	--	--------------------------

- 교수 영역에서는 학생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와 교수에게 요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임상 역량을 갖춘 교수를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실습 교육의 지도를 담당하는 임상 실습 현장 지도자는 교수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교수는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연구, 봉사 및 연수 활동 등 교수 업적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표 4> 교수 영역 심사 내용: 부록

영역	부분	항목	내용
IV. 교수	4.1. 교수 확보	4.1.1. 전임 교원 확보	<p>인 증 기 준</p> <p>학생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임상 역량을 갖춘 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전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p>
			<p>검 토 사 항</p> <p>1. 학과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법정 정원 61% 이상의 전임 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전문학사 학위과정: 50% 이상</p> <p>2. 학과 전임 교원은 담당 교과목의 수업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학술 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임상 경력 2년 이상은 2012년 이후 임용자에 한함)</p> <p>3. 학과 겸·초빙 교원과 강사는 담당 전</p>

			공 교과목의 수업 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는가?
	작성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 전임 교원 현황 및 전임 교원 확보율을 [표 4.1.1-1], [표 4.1.1-2]에 따라 작성하고, 전임 교원 확보율이 61%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검토함(전문학사 학위과정: 50%이상) 2. 학과 전임 교원이 학술 역량과 교육 역량을 위해 박사 학위 이상,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담당 교과목의 수업 지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 3. 학과 겸·초빙 교원 및 강사의 위촉 관련 기준을 간략히 기술하고 위촉 현황을 [표 4.1.1-3]에 따라 작성함. 또한, 학과 겸·초빙 교원 및 강사가 석사 이상,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대학 및 학과의 위촉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함 <p>※ 위 1, 2의 현황 및 [표 4.1.1-1], [표 4.1.1-2]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로 기재할 것</p>	
	비치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 교원 임용 서류(학위, 경력, 직급 등 입증 자료) 2. 교원 임면 보고 공문(최근 2년) 3. 교원 인사 규정(대학 규정, 학과 내규) 	

			<p>4. 겸·초빙 교원 및 강사 임용 서류(학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5. 임용 구분(정년 트랙 또는 비정년 트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용 계약서 등)</p>
		부 록	<p>1. 전임 교원 확보 현황 정보 공시 사본 (최근 2년)</p> <p>2. [표 4.1.1-1], [표 4.1.1-2]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p>
	4.1.2. 전임 교원 수업 시수 와 전공 교과 목 담당	인 증 기 준	학과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규정에 따라 전임 교원의 수업 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임 교원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책무성을 유지하고 있음.
		검 토 사 항	<p>1. 전임 교원 1인의 주당 수업 시수는 연간 학기당 평균 12시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p> <p>2. 전임 교원의 실습 교과목 인정 시수에 대한 대학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p> <p>3. 전공 교과목에 대한 전임 교원의 담당 학점 비율은 연간 60% 이상인가?</p>
		작 성 내 용	<p>1. 최근 2년간 전임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현황을 [표 4.1.2-1]에 따라 작성하고, 학부 과정을 기준으로 연간 (1, 2학기 평균) 12시간 이하로 유지되는지 검토함.</p> <p>2.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의 개요를 기술하고, 실습 교과목 학점 당 교원의 시수 인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함. (※보직자가 있는 경우</p>

			<p>보직자의 책임시수 관련 규정을 추가 기술함.)</p> <p>3. 최근 2년간 간호학 전공 교과목에 대한 전임 교원의 담당 학점 비율 현황을 [표 4.1.2-2]에 따라 작성하고, 학부 과정을 기준으로 연간 60% 이상인지 검토함.</p>
		비치자료	<p>1. 최근 2년간 학과의 강의 시간표</p> <p>2.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습 교과목 인정 시수 포함)</p>
		부록	<p>1. 학기별 개설 교과목 목록(최근 2년)</p> <p>2. 학기별 강의 시간표(최근 2년)</p> <p>3. 보직자의 책임 시수 관련 규정</p> <p>4.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습 교과목 인정 시수 포함)</p> <p>※ 시수 확인 가능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함</p>
	4.1.3. 임상 실습 지도 교원과 현장 지도자 확보	인증기준	<p>임상 실습 교육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현장 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임상 실습 지도 교원과 현장 지도자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음.</p>
		검토사항	<p>1. 임상 실습 지도 교원은 석사 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p> <p>2. 임상 실습 현장 지도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p> <p>3. 임상 실습 현장 지도자를 임상 실습 단위별로 100% 확보하고 있는가?</p>

			<p>4. 임상 실습 지도를 위해 교과목 담당 교수는 임상 실습 현장 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가?</p>
		작성 내용	<p>1. 최근 4개 학기 학생의 임상 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임상 실습 지도 교원과 현장 지도자 현황을 [표 4.1.3-1], [표 4.1.3-2]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실습 단위의 현장 지도자를 확보하고 있는지(학기당 확보율 100%) 검토함. 또한 임상 실습 지도 교원과 현장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함. 2020년도 1, 2학기 임상 실습을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임상 실습 운영이 제한된 경우, 2020년도 1, 2학기 임상 실습 계획에 따라 확보한 임상 실습 교원과 현장 지도자 현황을 [표 4.1.3-1], [표 4.1.3-2]에 따라 작성함. 실습 연기 및 실습 중단 등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경우, 관련 내용을 해당 교과목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제시함.</p> <p>2. 최근 2개 학기 임상 실습 지도를 위해 교과목 담당 교수와 임상 실습 현장 지도자가 실습 목표, 내용, 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이나 협의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 내용, 시기 등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관련 실적을 [표 4.1.3-3]에 따라 교과목별로 작성함.</p>

			2020년도 1, 2학기 임상 실습을 진행한 경우 관련 내용을 작성함.
		비치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 실습 배치표 (최근 4개 학기) 2. 임상 실습 지도 교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상 실습 현장 지도자 위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임상 실습 현장 지도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소속 기관장의 공문 등 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실습 지도 협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회의록 등(최근 2개 학기)
		부록	1. 학생별 임상 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4.2. 교수업적과 개발	4.2.1. 교수업적과 역량개발지원	기준	전임 교원의 교수 업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전임 교원은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제도에 따라 개인의 업적을 관리하고, 대학 또는 학과는 교수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검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 교원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고 있는가? 2. 전임 교원의 전문직 활동 실적은 적절한가? 3. 전임 교원은 교수 개발 프로그램(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4. 교수 개발을 위해 전임 교원 1인당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p>있는가?</p> <p>* 전문 학사 학위 과정: 50만 원 이상</p>
		작성 내용		<p>1.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제도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업적 평가 관련 규정, 전임 교원의 교수 업적 평가 영역 및 내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결과 활용 등) 기술하고, 업적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제도가 없는 경우 학과의 자체적인 교수 업적 평가 기준과 체계를 기술함.</p> <p>2. 최근 2년간 당해 연도 전임 교원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과 저역서 저술 실적을 [표 4.2.1-1]과 [표 4.2.1-2]에 따라 작성함. 또한 학과와 교수 개인 차원에서 전임 교원의 연구 업적을 관리하고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3. 최근 2년간 전임 교원의 간호 분야 전문직 단체 활동, 임상 연수를 포함한 교수 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표 4.2.1-3]에 따라 작성하고 간략히 기술함.</p> <p>4. 최근 2년간 전임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한 교수 개발 지원 현황과 금액을 [표 4.2.1-4]에 따라 작성하고, 지원 금액이 학과 평균 전임 교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상</p>

				으로 유지되는지 검토함(전문학사 50만 원 이상). 또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함.
		비 치 자 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 업적 평가 지침 또는 규정 2. 교수 업적 평가 운영 실적 증빙 자료 3. 전임 교원 연구 논문, 저·역서 목록 4. 전임 교원의 전문직 단체 활동 및 교수 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 자료 5.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자료 6. 국고 보조금 지원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시설 및 설비는 학과가 간호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교수와 학생이 학술 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전공교과목별로 적절한 임상 실습 기관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표 5> 시설 및 설비 영역 심사 내용

영역	부분	항목	내용	
V. 시설 및 설비	5.1. 교육 시설 설비	5.1.1. 교육 기본 시설 과 편의 시설 확보	인 증 기 준	학과는 간호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 시설과 설비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음. 교수와 학생이 학술 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공 학술 자료를 구비하여 지원하고 있음.
			검 토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의 교육 기본 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강의실, 세미나실, 교수 연구실, 학과 사무실 등) 2. 학과 교육 기본 시설의 비품, 기자재의 구비와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편의 시설이 적절히 확보되고 활용되고 있는가?(회의실, 자율 학습실, 사물함, 휴게실 등) 4. 충분한 학술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정보 서비스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가?
			작 성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의 교육 기본 시설로서 강의실, 세미나실, 교수 연구실, 학과 사무실, 회의실 등의 교육 기본 시설 확보 현황과 시설 설비 현황(조명, 방음, 환기, 냉난방 시설 등), 기자재 확보 현황을 [표 5.1.1-1]에 따라 작성함. 2. 학과 교육 기본 시설과 각 시설별 설비, 비품, 기자재의 사용 및 유지·관리 현황(시설별·기자재별 관리 주

			<p>체, 점검 시기, 점검 방법, 유지·관리 현황 기록 등)을 강의실과 세미나실의 교육용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사용 및 유지·관리 현황을 포함하여 [표 5.1.1-1]에 따라 작성함.</p> <p>※ 방문평가 시 사용 편의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함.</p> <p>3. 학과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자율 학습실, 동아리실, 학생회실, 사물함 등 복지 및 편의 시설의 확보 및 이용 현황을 [표 5.1.1-2]를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함.</p> <p>4. 학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 시설의 확보 및 이용 현황 등을 [표 5.1.1-3]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함.</p> <p>5.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로서 간호학 관련 장서 및 전자자료의 보유, 간호학 관련 국내외 학술지(전자저널) 서비스 현황을 각각 [표 5.1.1-4], [표 5.1.1-5]에 따라 작성하고, 특히 간호(학)과가 본교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경우 또한 현장 실습 시 학생 학술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전자자료 제공 등의 현황을 기술함.</p> <p>* 학술정보서비스 체계: 국내외 도서자료, 비도서 자료, 국내외 전자자료(전자 저널, 웹DB, 동영상 강의 자료, 패키지 등), 국내외 연속 간행물, 온라인 학습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뜻함.</p>
비	치		<p>1. 학과 관련 건축물 대장(강의실 목록 및 면적 포함)</p>

			자료	2. 기자재 관리 대장(최근 2년) 3.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지침 및 안내 자료 등 4.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방문 평가 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부록	1. 학과 교육 기본 시설 구분별 목록(건물명, 층, 호실, 면적 포함) 2. 강의실이 표기된 전 학년 시간표
5.2. 실습 시설 과 설 비	5.2.1. 실습 실과 실습 기자재 확보	인증 기준	학과는 실습 교육의 목표 및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실습 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에 적절한 실습실 공간 및 실습 기자재를 갖추어 실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검토 사항	1. 학과 전공 실습실 면적이 최소 면적의 기준 값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2. 필수 실습 기자재가 100% 확보되어 있는가? 3. 대학 또는 학과의 관련 지침에 따라 실습실과 실습 기자재 활용 및 관리가 적절한가?	
		작성 내용	1. 실습실 확보 현황에 대해 [표 5.2.1-1]에 따라 작성하고, 학생 1인당 확보면적이 아래의 기준(부록 참고)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함. ※ 실습실 사용 일지를 확인하여 공용인 경우, 사용 빈도,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확보 면적을 비율로 산정할 수 있음. 2. 실습실 활용 현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학과 또는 기관과의 공용인지, 주	

			<p>당 활용 시간 등의 현황을 별도로 간략히 기술함.</p> <p>3. 간호학과가 확보하고 있는 실습 기자재 목록을 ‘부록’으로 첨부함. 또한 실습 기자재 확보율을 [표 5.2.1-2]에 따라 작성하고, 필수항목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함.</p> <p>4. 기자재 유지·관리에 관한 대학 및 학과의 관련 지침을 간략히 제시함.</p> <p>5. 시뮬레이터가 있는 경우 확보 현황을 [표 5.2.1-3]에 따라 작성하고, 활용현황을 간략히 기술함.</p> <p>※ 방문 평가 시 실습실 시설 및 기자재 활용 현황을 검토함.</p>
		비치자료	<p>1. 실습실 및 실습 기자재 관리 규정 또는 지침</p> <p>2. 실습실 도면</p> <p>3. 실습실 사용 일지 및 관리 대장(최근 2년)</p> <p>4. 실습 기자재 보유 및 관리 목록(최근 2년)</p> <p>5. 실습 기자재(시뮬레이터 포함) 사용 일지 및 관리대장(최근 2년)</p>
		부록	<p>1. 실습 기자재 목록(건물명, 호실 등 확보 위치 표기)</p> <p>* 실습 기자재 목록(부록):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실습 기자재별로 확보하고 있는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p> <p>2. 실습실별 시간표(최근 2년)</p>
5.2.2.	인 증 임상	인 증	<p>학과는 효과적인 임상 실습을 위해 전공 교과목별로 적절한 임상 실습 기관</p>

실습 기관 확보	기준	을 확보하고 상호 협약 하에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임상 실습 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임상 실습 기관과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실습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검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건을 갖춘 임상 실습 기관이 90% 이상 확보되고 협약이 100% 체결되어 있는가? 2. 주 임상 실습 기관이 확보되어 있는가? * 주 임상 실습 기관: 학생 배치 인원, 임상 실습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학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이 집중되는 실습 기관으로서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이어야 함 3. 임상 실습 기관과의 정기적인 협력 실적이 있는가? 4. 주 임상 실습 기관에 실습 학생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작성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 실습 기관과의 협약 체결 기준과 선정 과정을 기술함. 2. 임상 실습 협약 기관의 종류와 현황을 구분하여 [표 5.2.2-1]에 따라 작성함. 학기당 임상 실습 협약 기관의 90% 이상이 아래의 임상 실습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밖의 임상 실습 협약 기관도 병원급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함. 특화병원 또는 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이 실습 기관으로 적합한 이유를 근거와 함께 간략히 기술함. 3. 학과와 임상 실습 기관이 실습 지도

			<p>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력한 현황을 간략히 [표 5.2.2-2]에 따라 작성하고, 매 학기 실습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검토함.</p> <p>※ 임상 실습 기관과 학생 안전/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실적을 추가로 기술함.</p> <p>4. 임상 실습 기관에 실습 학생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해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하고, 주 실습 기관의 실습 학생의 전용 공간 확보 현황을 검토함.</p>
		비치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의 실습 운영 규정 2. 실습 기관 협약서(최근 2개 학기) 3. 부속병원, 재단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4. 대학과 실습 기관의 협력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실습 학생 전용 공간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되는 경우)
		부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습 기관별 병상 수 입증 자료 2. 독립된 간호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병동의 경우) 3. 특화병원(C영역)으로 분류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되는 경우)

- 교육 성과 영역은 학과가 학생이 성취해야 하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내용과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졸업 학년의 핵심 기본 간호술에 대하여 성취 수준을 제시하여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 목표 달성과 교육 만족도를 평가하여 졸업생이 간호 전문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 여부를 평가함.

〈표 6〉 교육 성과 영역 심사 내용

영역	부분	항목	내용	
Ⅵ. 교육 성과	6.1. 재학생 역량	6.1.1.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인	학과는 학생이 성취해야 하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내용과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검토사항	1. 프로그램 학습 성과 내용과 수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2.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평가·관리한 실적이 있는가?
			작성내용	1. 학과가 설정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열거하고, 학습성과별 구체적인 내용과 설정된 성취 수준을 2쪽 이내로 기술함. (프로그램 학습 성과는 2.1.1에 제시된 바와 동일해야 함) 2.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기술하고,

			<p>학과가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과정(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내용과 성취 수준의 설정 관련 연구, 교과목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 교수 학습 방법 개발 및 적용, 평가 도구 개발 등), 그리고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1쪽 이내로 간략히 기술함.</p> <p>3. 최근 2년간(2020년도, 2019년도) 졸업학년 학생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한 실적을 1쪽 이내로 기술함.</p> <p>※ 평가 실적은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합 교과목 운영, 졸업 종합 시험, 종합 실습 등 졸업학년의 성취 평가 체계 운영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관리 실적은 졸업학년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 평가 결과와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p>
		비치자료	<p>1.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내용과 성취 수준, 평가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2.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체계의 도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3.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평가·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p>
	6.1.2. 핵심 기본 간호술	인증기준	<p>학과는 핵심 기본 간호술을 설정하고 이를 학생이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갖추어 관리하고 있음. 또한 졸업학년의 핵심 기본 간호술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학과가 설정한 기준 이상</p>

			으로 달성하고 있음.
		검 토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하는 핵심 기본 간호술을 포함하여 학과가 설정한 핵심 기본 간호술이 졸업 학년까지 단계별로 기술되어 있는가? 2. 졸업 학년까지 단계별로 핵심 기본 간호술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현지 방문 평가를 통해 졸업 학년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함)
	평가	작 성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가 핵심 기본 간호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제시하고, 평가원이 제시하는 핵심 기본 간호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함. 특히 학과의 핵심 기본 간호술 성취 수준을 졸업 학년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설정하여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하고, 학과가 적용하고 있는 핵심 기본 간호술 평가 체계를 평가 도구,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함. 2. 최근 2년간(2020년도, 2019년도)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졸업 학년까지 핵심 기본 간호술을 단계별로 평가·관리한 실적과 결과를 표 등을 활용하여 간략히 제시함.
		비 치 자 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의 핵심 기본 간호술 설정 내용과 졸업 학년까지의 단계별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핵심 기본 간호술 평가 도구, 시기, 방법 등 평가 체계를 확인할 수 있

			<p>는 자료</p> <p>3. 핵심 기본 간호술 성취 평가·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p>
	6.1.3.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인 증 기 준	<p>학과는 학과의 교육 성과로서 졸업생의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에 대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p>
		검 토 사 항	<p>1. 국가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에 대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는가?</p> <p>2. 국가 시험 합격률이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p> <p>3. 졸업생 취업률이 발령 대기자를 포함하여 65%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p> <p>4. 국가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을 목표 수준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과의 노력이 있는가?</p>
		작 성 내 용	<p>1.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과 졸업생 취업률에 대한 학과의 목표 수준과 설정 근거를 제시함.</p> <p>2. 최근 2년간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 현황을 [표 6.1.3-1]에 따라 작성하고, 매년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당해 연도 졸업생 수(가)와 간호사 국가 시험 접수 인원(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간략히 사유를 제시함.</p> <p>3. 최근 2년간 졸업생 취업 현황을 [표 6.1.3-2]에 따라 작성하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발령 대기자를 포함하여</p>

				<p>6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함.</p> <p>4. 최근 2년간 학과의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과 졸업생 취업률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요 실적을 예시하여 기술함.</p>
			비치자료	<p>1.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 취업률 목표 수준의 설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2. 졸업생의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 현황(국시원 제공 데이터, 최근 2년)</p> <p>3. 졸업생의 취업 현황 자료(최근 2년)</p> <p>4. 발령 대기자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p> <p>5. 국가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달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p>
			부록	<p>1. 졸업생 취업률 정보 공시 자료 사본(최근 2년)</p> <p>2. 국시원 제공 졸업생 간호사 국가 시험 합격률 사본(최근 2년)</p>
6.2. 졸업생 역량	6.2.1. 졸업생 역량 및 만족도 평가	인	증	<p>학과는 간호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졸업생이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를 교육 목표 달성과 교육 만족도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p>
		검	토	<p>1. 졸업생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졸업생의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가?</p> <p>2. 졸업생의 교육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가?</p>

			<p>작성 내용</p> <p>1. 최근 2년간 졸업 후 2~3년 이내의 졸업생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졸업생의 간호 전문직 역량 수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교육 목표 달성 평가 실적을 간략히 기술함.</p> <p>* 도구 및 방법, 대상,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p> <p>* 도구 및 방법, 대상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간략히 기술하고,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제시함.</p> <p>2. 최근 2년간 졸업 후 2~3년 이내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함.</p> <p>* 도구 및 방법, 대상,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p>
		비치 자료	<p>1. 교육 목표 달성 평가 도구 및 평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분석 자료 포함, 최근 2년)</p> <p>2. 교육 만족도 평가 도구 및 평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분석 자료 포함, 최근 2년)</p>

[부록 3] 공학인증 심사 기준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및 판정 지침

- 공학인증 심사 기준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및 판정 지침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 교육 목표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p>1.1 프로그램은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함.</p> <p>1.2 프로그램 교육 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함.</p>

〈표 1〉 프로그램 교육 목표 영역 판정 지침

항목	판정 지침
1.1 프로그램 교육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교육 목표(설명1)가 교육 기관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음. 2) 프로그램 교육 목표를 설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설명2)의 요구와 사회 환경(설명3) 변화를 반영하지 않음. ○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교육 목표와 교육 기관의 특성 간의 연계 분석이 미흡함. 2) 프로그램 교육 목표를 설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구성원(특히 산업체)의 요구 반영이 미흡함.

	<p>3) 프로그램 교육 목표를 설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환경 변화의 반영(조사, 분석 등)이 미흡함.</p> <p>4) 프로그램 교육 목표가 공개되지 않음.</p> <p>○ 설명</p> <p>(설명1) 프로그램 교육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교육 목표는 프로그램이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 즉 프로그램 소속 학생이 졸업 후 수년 내에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성과를 포괄적으로 기술한 문구로서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함. <p>(설명2) 구성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에는 산업체 인사, 졸업생, 재학생, 교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원을 선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교육 목표 설정에 반영해야 함. 졸업생들이 진출한 산업체의 고용주나 상사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임. <p>(설명3) 사회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된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적 여건과 자체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사회 환경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계 및 기술의 동향,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사회 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자체역량 평가 결과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p>1.2 프로그램</p>	<p>○ 결함</p> <p>1) 프로그램 교육 목표의 적절성을 정기평가 주기(6년) 이내에 검토한 실적이 없음.</p>

<p>교육 목표의 적절성 검토</p>	<p>○ 미흡</p> <p>1) 프로그램 교육 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문서화된 체계(설명1)가 없음.</p> <p>2) 프로그램 교육 목표의 적절성을 검토한 실적이 있으나 개선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함.</p> <p>○ 설명</p> <p>(설명1) 문서화된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한 내규, 운영 매뉴얼, 자체 평가 보고서 등 공식 문서를 의미함. • 프로그램 교육 목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문서화된 체계는 주제, 시기 및 주기, 방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설문 조사와 사회 환경 변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계 및 기술의 동향,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사회 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p>※ 졸업생을 배출한 후, 자체적으로 수립한 교육 목표 적절성 검토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며 미흡(W)으로 판정함.</p>
----------------------------------	---

○ 프로그램 학습 성과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프로그램 교육 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함.

2.1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 목표와 부합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설정하여야

<p>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추가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 문제 해결에 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3) 공학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능력 5)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6)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공학적 해결 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수 있는 능력 9)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10)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 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p>2.2 프로그램은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 성과별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p>
<p>2.3 프로그램은 수립된 평가 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를 측정하여야 함.</p>

<표 2> 프로그램 학습 성과 영역 판정 지침

항목	판정 지침
2.1	○ 결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학습 성과(설명1)가 프로그램 교육 목표와 부합하지 않음.(설명2)
교육	2) 프로그램 학습 성과에 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학습 성과 10개 항목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목표와	○ 미흡
인증	1) 프로그램 학습 성과와 프로그램 교육 목표와의 연
기준에	

<p>부합하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설정</p>	<p>관성이 부족함.</p> <p>2)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내용과 수준이 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학습 성과의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지 않음.</p> <p>○ 설명 (설명1) 프로그램 학습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역량(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으로, 프로그램은 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학습 성과 10개 항목 각각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교육 목표와 연계되고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함. <p>(설명2) 프로그램 학습 성과가 프로그램 교육 목표와 부합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학습 성과 항목은 모든 공학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고유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설정해야함.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 성과가 교육 목표와 부합함을 제시하지 않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결함(D)으로 판정함.
<p>2.2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 평가 체계</p>	<p>○ 결함</p> <p>1) 프로그램 학습 성과별 성취도 평가 체계(설명1)가 측정 가능한 내용과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p> <p>○ 미흡</p> <p>1) 프로그램 학습 성과별 성취도 평가 체계에 적절하지 않은 요소(설명3)가 포함되어 있음.</p> <p>○ 설명 (설명1) 프로그램 학습성과(Program Outcomes, PO)별 성취도 평가체계</p>

- PO별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성취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의미함. 수행 준거(Performance Criteria, PC)(설명2), 성취 수준, 평가 도구, 채점 기준,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평가 체계를 수립해야 함.
 - 평가 도구의 예로 공인 시험, 자체 시험, 구두 시험, 종합 설계 보고서나 발표 등이 있으나 이외에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 교과목에서의 시험이나 과제물 평가 등의 수행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과 기반 평가(Course Embedded Assessment, CEA)를 사용할 수 있음.
 - 교과 기반 평가를 사용할 경우 PO별 교과목 맵핑, 성취도 평가 교과목 선정, 평가 교과목에서 PO별 평가 도구와 채점 기준, 평가 주체, 평가 대상 학생을 포함해야 함.
 - PO를 대신해 PC 또는 교과목 학습 성과(Course Learning Outcomes, CLO)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PO와 적절하게 연계된 맵핑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적인 측정을 위해 측정의 주체, 측정 대상, 측정 시기 및 주기, 측정 자료의 분석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이 수립되어야 함.
- (설명2) 수행 준거(Performance Criteria or Indicator)
- 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학습 성과 항목은 모든 공학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성취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학습 성과 성취도를 구체적으로

	<p>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성과 지표이자 하위 구성 요소로서 수행 준거를 정의해야 하며, 수행 준거는 ‘내용 + 행위 동사’, 즉 ‘학생들은 ~을 ~할 수 있다.’의 문장 형식으로 기술되어야 함.</p> <p>(설명3) 교과 기반 평가를 포함한 학습 성과 성취도 평가 체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예시한 사항들은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 측정의 타당성(상관성, 정확성, 유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별로 간접 평가 도구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부여한 교과 성과 점수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 • 다수의 평가 도구로 측정한 결과를 합산 또는 평균하여 측정 결과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개선사항 도출이 어려운 경우 •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수행 준거별 성취도 평가 체계가 불충분한 경우 • 각종 행사나 연수에 참여한 횟수 또는 시간 등 특정 수행 준거의 성취도를 측정한 경우 • PO와 PC(또는 CLO)와의 맵핑에서 내용상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 성취도 평가 교과목이 졸업 예정자의 지식,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div>
<p>2.3 수립된 평가 체계 에 따른 프로그램</p>	<p>○ 결함</p> <p>1) 수립된 평가 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설명1)가 없음.</p> <p>2)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의 내용과 수준이 4년제 공과대학 졸업 예정자에게 요구되는 공학 문제(설명2) 수준에 부합(설명3)함을 입증</p>

<p>램 학습 성과 성취도 측정</p>	<p>하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p> <p>○ 미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를 매년 측정하지 않음. 2)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 측정 자료의 관리가 부실함. 3)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의 내용과 수준이 4년제 공과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 요구되는 공학 문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음. <p>○ 설명</p> <p>(설명1)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차원에서 모든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성취도를 기대하는 수준(목표치)과 비교한 자료를 의미함. 특히, 기대 수준에 도달 또는 미달한 항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제시하고 관련된 원시 자료는 방문 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p>(설명2) 4년제 공과대학 졸업 예정자에게 요구되는 공학 문제(Complex Engineering Proble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 기초 지식과 전공 지식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분석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형 문제로서, 복합적, 독창적 사고를 요하고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식에 따라 다수의 해가 존재하며, 상충되는 공학적 요건과 다양한 현실적 제한 조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p>(설명3) 공학 문제 수준에 부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 문제 수준이란 지식의 깊이, 상충되는 요건의 범위, 분석의 깊이, 생소한 주제, 문제의 범위, 이해 당사자의 요구수준 및 범위, 상호 의존성, 다양한 영향 고려 등의 속성별로 기술된 4년제 공과 대
---------------------------------------	--

	<p>학 졸업 예정자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의 수준을 의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 측정에 사용한 자료(설계 결과물, 보고서, 시험 답안지 등)의 내용과 수준을 공학 문제의 속성별 수준과 비교하여 만족 여부에 따라 부합함을 평가함. <p>※ 평가 체계의 적절성은 2.2에서 평가하고, 2.3에서는 측정 실적과 자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함.</p>
--	--

○ 교과 과정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교과 과정은 교과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함.

<p>3.1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함.</p> <p>3.2 수학, 기초 과학(일부 교과목은 실험 포함) 및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함.</p> <p>3.3 공학 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함. 단, 설계교과목에는 기초 설계 및 종합 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함.</p> <p>3.4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 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함.</p>

<표 3> 교과 과정 영역 판정 지침

항목	판정 지침
<p>3.1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p>	<p>○ 결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부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 과정이 편성(설명1)되어 있지 않음. 2) 교과 과정의 이수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3) 이수 체계의 준수 실태가 매우 부실함. <p>○ 미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부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 과정의 편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교과 과정 편성이 적절(설명2)하지 않음. 2)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데 이수 체계가 적절하지 않음.(설명3) 3) 제시된 이수 체계의 준수 실태가 부실함. 4) 이수 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음. <p>○ 설명 (설명1)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 과정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습 성과에 연관된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함(D)으로 판정함. <p>※ 3.1에서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달성을 위한 전체 교과 과정의 체계적인 편성과 운영, 이수 체계 준수를 평가하고, 3.2~3.4에서는 해당 영역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 실적을 평가함.</p> <p>(설명2) 교과 과정 편성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 과정 편성여부의 평가는 교과목의 수와 내용을 중심으로 함. • 일부 학습 성과 • 라도 연관된 교과목이 매우 적어서 학습 성과의 배양이 어려운 경우 미흡(W)으로 판정함. <p>(설명3) 이수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설계 교과목이 요소설계 교과목의 선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종합 설계 교과목에 요소설계 교과목이 선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MSC와 공학 주제 교과목 간의 선후수 연계가 매우 부족함. • 공학 주제와 공학 주제 교과목 간의 선후수 연계가 매우 부족함. • 선후수로 연계된 교과목의 수가 너무 적어서 체계적인 학습성과 배양이 어려움.
<p>3.2 최소 30학점 이상의 MSC (수학, 기초 과학, 전산학) 교과목</p>	<p>○ 결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SC(수학, 기초 과학, 전산학) 분야의 교과목을 최소 30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설명1)되어 있지 않음. 2) 기초 과학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은 실험을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지 않음. 3) MSC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설명2)가 매우 부실함. <p>○ 미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SC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부적절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음. 2) MSC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가 부실함. 3) MSC 교과목에서 지속적 품질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 활동이 부족함. <p>○ 설명 (설명1) MSC 교과목의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C 영역의 구성 비율은 자율에 맡기나 수학, 기초 과학, 전산학은 각각 1과목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단, MSC 영역에 대해 인증 기준 8.3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의 교과 과정 요구 사항을 동시에

	<p>만족하여야 함.</p> <p>(설명2) 교과목 운영 실적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의 운영 실적으로서 교과목별 강의 계획서, 과제물과 시험 내용, 성적 평가 방법 및 결과, 강의 개선 보고서 등 교과 운영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적물이 관리되어야 함.
<p>3.3 설계 교과목 을 포함한 최소한 54학점 의 공학 주제 교과목</p>	<p>○ 결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학 주제 교과 과정이 설계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지 않음. 기초 설계와 종합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공학 주제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기초 설계 및 종합 설계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설계 결과물에서 설계 교육 내용(설명1)을 확인할 수 없음. 요소 설계 교과목에서 설계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공학 주제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설명2)가 매우 부실함. 공학 주제 교과목에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품질개선(CQI) 활동(설명3)이 매우 부족함. <p>○ 미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소 설계 교과목을 수강한 일부 학생들의 설계 결과물에서 설계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설계 교과목에서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이나 팀워크(teamwork)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 공학 주제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가 부실함. 공학 주제 교과목의 지속적 품질 개선(CQI) 활동이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함.

○ 설명

(설명1) 설계 결과물에서의 설계 교육 내용

- 설계 교과목의 적절성을 방문 전에는 강의 계획서 (설계 교육 계획 포함), 방문 시에는 수강생들의 설계 결과물(예: 보고서, 발표자료, 작품, 설계발표회 동영상 등)의 내용과 수준을 근거로 판정하도록 함.
- 수강생들의 설계 결과물에서 설계 교육 내용 즉, 설계 절차(구성요소)에 따라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를 해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설계 결과물 샘플 모두에서 설계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교과목은 설계 교과목에서 제외함.
- 설계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교과목을 제외하면 전공 분야별 설계학점 요구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인증 기준 8.3을 결함(D)으로 판정함.

(설명2)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

- 교과목의 운영 실적으로서 교과목별 강의 계획서, 과제물과 시험 내용, 성적 평가 방법 및 결과, 강의 개선 보고서 등 교과 운영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적물이 관리되어야 함.

(설명3)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품질 개선(CQI) 활동

- 프로그램 학습 성과 기반 CQI 평가 대상 교과목에서는 관련된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달성을 목표로 강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교과 운영 후에는 설정한 학습 성과 성취도를 측정 분석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CQI) 활동이 시행되고 강의 개선 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함.
- 평가 결과는 인증 기준 7.1 교과 과정 운영 결과

3.4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에 필요한 전문 교양 교과목	분석에 활용하도록 해야 함.
	<p>○ 결함</p> <p>1)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에 필요한 전문 교양(설명 1)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p> <p>2) 전문 교양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설명2)가 매우 부실함.</p> <p>○ 미흡</p> <p>1) 전문 교양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가 부실함.</p> <p>2) 전문 교양 교과목에서 지속적 품질 개선(CQI) 활동이 부족함.</p> <p>○ 설명</p> <p>(설명1)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에 필요한 전문 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 주제와 MSC 교과목만으로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골고루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전문 교양 교과목이 이를 적절히 보완하고 있음을 제시해야 함. • 교양 교과 과정은 교육기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고 관리되더라도,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에 기여하는 전문 교양 교과목이 적절히 개설되어 이수되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함. <p>(설명2) 교과목 운영 실적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의 운영 실적으로서 교과목별 강의 계획서, 과제물과 시험 내용, 성적 평가 방법 및 결과, 강의 개선 보고서 등 교과 운영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적물이 관리되어야 함. • 교육 기관 차원에서 교양 교육이 운영되더라도 각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과 수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 교양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함.

○ 학생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함.

- 4.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4.2 교과목 이수와 학습을 포함한 학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4.3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졸업 사정이 이루어져야 함.

<표 4> 학생 영역 판정 지침

항목	판정 지침
4.1 학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 대한 평가(설명1)가 이루어지지 않음. ○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 대한 평가가 부실함. ○ 설명 (설명1) 학생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학생은 신입생, 재학생(2, 3학년), 전입생으로 구분함. • 학생에 대한 평가는 학업 성취도(지식 수준)를 주요 대상으로 함. 즉, 세부 기준 4.1에서는 모든 학습 성과의 성취도를 평가의 대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신입생과 전입생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에 입학하거나 전입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파악하는 것임. • 신입생에 대한 평가는 입학 사정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평가(학력 시험 등)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전입생에 대한 평가는 학점 인정 절차를 포함하며 전입생 학점 인정 절차는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

	<p>터의 위임-수임 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학점 수, 설계 교육 내용, 실험 교육 내용 등 교과 목의 동등성에 대한 점검을 통한 학점 인정이 이루 어지고 있어야 함.</p>
4.2 학생 지도	<p>○ 결함 1) 교과목 이수, 학습에 대한 학생 지도가 매우 부실 함.</p> <p>○ 미흡 1) 교과목 이수, 학습에 대한 학생 지도가 부실함.(설 명1)</p> <p>○ 설명 (설명1) 학생 지도가 부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이 적거나, 교과목 이 수 및 학습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교수진에 의한 학생 지도가 부진함에도 관련 기구 또는 전문가의 활용을 통해 학생 지도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교과목 이수, 학습에 대한 학생 지도가 매우 부실하거나 비인증 프로그램으로 의 이동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는 결함(D)으로 판 정함.
4.3 졸업 기준	<p>○ 결함 1)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졸업 기준과 절 차(설명1)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p> <p>2) 프로그램의 졸업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졸업생이 배출됨.</p> <p>3) 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학위명칭이 국 문 및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생 성적 증명서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설명2)</p> <p>4) 단일 인증제 시행에 관한 규정(설명3)이 없음.</p> <p>○ 미흡</p>

- 1) 프로그램의 졸업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 2) 비인증 프로그램으로의 이동을 졸업 1년 전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운영이 부실함. (2015년 이전 입학생)
- 3) 단일 인증제 참여 예외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의 적용이 부실함. (2016년 이후 입학생)

○ 설명

(설명1)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졸업 기준과 절차

- 설계 학점을 포함한 교과 영역별 이수 요건,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 및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정한 졸업 기준이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 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야 함.
- 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이 비인증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졸업 1년 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 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함.

(설명2) 학위 명칭의 구분

- 공인원 인증 규정(8조)에 따라 비인증 프로그램은 인증 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단, 인증 프로그램과 동일한 교과 과정으로 단순히 이수 기준이나 졸업 기준을 완화하는 비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공 분야가 명시된 학위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예를 들어, ‘BS in Engineering’ 등의 학위명칭만 사용 가능함.
- 단일 인증제 채택과 함께 차별화된 프로그램 교육 목표, 프로그램 학습 성과 및 교과 과정으로 비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및 학

	<p>위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p> <p>(설명3) 단일 인증제 시행에 관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인증 프로그램은 인증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정한 졸업요건(인증 요건 포함)을 충족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2016년 입학생부터 인증제 운영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임을 입학 요강 등 공식적인 공개 자료에 명기하고, 학칙(또는 인증 규정)에 반영하여야 함. • 복수·연계 전공자, 편입생, 전과·부생,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같이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규정(또는 지침)에 인증제 참여 예외 인정 조항을 두고 적용할 수 있음. • 예외 인정 조항 적용자는 최종적으로 졸업 1년 전까지 인증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복수·연계 전공 등으로 예외 인정 조항을 적용받는 학생의 경우, 졸업 시점에서 복수·연계 전공 등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되어야 함. • 예외 인정 조항 적용 졸업생들의 학위 명칭은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의 학위 명칭과 구분되어야 함. 가능하다면 예외 인정 조항을 두지 않고 단일인증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

○ 교수진

- 교수진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5.1 교수진은 교과 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5.2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교육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5.3 교육 기관은 교수의 교육 개선 활동을 업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표 5> 교수진 영역 판정 지침

항목	판정 지침
5.1 교수진 의 규모	<p>○ 결함</p> <p>1) 전임 교수 수가 3명 이하임.</p> <p>2) 전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매우 과다함.(설명1)</p> <p>○ 미흡</p> <p>1) 전임 교수진의 연평균 강의 부담이 과다함.(설명2)</p> <p>2) 비전임 교수의 강의 비율이 높음.(설명3)</p> <p>3) 학생을 충실히 지도하기에는 교수진의 규모가 부족함.</p> <p>○ 설명</p> <p>(설명1)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매우 과다한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 교수 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가 40명을 초과한 경우 미흡(W)으로 판정하고, 50명을 초과한 경우는 결함(D)으로 판정함. <p>(설명2) 강의 부담이 과다한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진의 연평균 강의 부담(대학원 포함)이 학기당 15학점을 초과한 경우, 미흡(W)으로 판정함. <p>(설명3) 비전임 교수의 강의 비율이 높은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 주제 교과 영역에서 비전임 교수의 강의 비율이 연평균 40%를 초과하는 경우, 미흡(W)으로 판정함.
5.2 교수진	<p>○ 결함</p> <p>1) 교수진의 교육 개선 활동 참여(설명1)가 매우 부족</p>

<p>의 교육 개선 활동</p>	<p>함.</p> <p>○ 미흡 1) 교수진의 교육 개선 활동 참여가 부족함.</p> <p>○ 설명 (설명1) 교육 개선 활동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개선 활동에는 교수 학습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 (교수법, 교안 및 학습 자료 개발, 교과목 CQI 활동 등), 공학교육 관련 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 등 공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역량 강화 활동, 공학교육 인증 평가 활동, 교내외 공학 관련 세미나/워크숍 참여, 산학 연계 교육 활동 등이 포함됨. • 프로그램 소속 전체 교수진의 전반적인 참여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함 • 프로그램당 공학교육 인증 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1인/년 이상 추천해야 함. 단, 프로그램이 평가를 받는 연도에는 예외로 함.
<p>5.3 교수 업적 평가</p>	<p>○ 결함 1) 교육 개선 활동의 업적 평가 반영(설명1)이 매우 부족함.</p> <p>○ 미흡 1) 교육 개선 활동의 업적 평가 반영이 부족함.</p> <p>○ 설명 (설명1) 교육 개선 활동의 업적 평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부문의 업적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 개선 활동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강의 시수나 지도 학생 수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함(D)으로 판정함.

○ 교육 환경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충실한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

하여야 하고, 교육 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함.

- | |
|---|
| <p>6.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함.</p> <p>6.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함.</p> <p>6.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 보조 인력이 적절하여야 함.</p> |
|---|

<표 6> 교육 환경 영역 판정 지침

항목	판정 지침
6.1 행정 체계	<p>○ 결함</p> <p>1) 공학교육 인증제 운영을 위한 행정 조직(설명1)과 규정 체계(설명2)가 없음.</p> <p>○ 미흡</p> <p>1) 공학교육 인증제 운영을 위한 행정 조직과 규정 체계가 미흡함.</p> <p>2) 공학교육 인증제 운영을 위한 행정 조직의 운영 실적이 부족함.</p> <p>○ 설명 (설명1) 행정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학 본부 조직과 프로그램 내 제반 위원회를 의미함. 프로그램 내 제반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전체 교수 회의로 갈음할 수 있음. <p>(설명2) 규정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에서는 공학교육 인증제 운영 근거 및 행정 조직과 관련된 규정 또는 매뉴얼을 평가하고, 1.2, 2.2, 3.1, 4.3, 5.3에서는 해당 세부 평가 항목과 관련된 규정 또는 매뉴얼을 평가함.
6.2	○ 결함

<p>공간, 시설, 장비, 재정</p>	<p>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가 매우 부족함.</p> <p>2) 시설과 장비의 유지 보수와 확충, 실험·실습과 설계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매우 부족함.</p> <p>○ 미흡</p> <p>1)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가 부족함.</p> <p>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안전 등의 관리가 부실함.</p> <p>3) 시설과 장비의 유지 보수와 확충, 실험·실습과 설계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부족함.</p>
<p>6.3 행정 및 교육 지원 인력</p>	<p>○ 결함</p> <p>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전담 인력이 매우 부족함.(설명1)</p> <p>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보조 인력이 매우 부족함.(설명2)</p> <p>○ 미흡</p> <p>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전담 인력이 부족함.</p> <p>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보조 인력이 부족함.</p> <p>○ 설명</p> <p>(설명1) 행정 전담 인력이 부족한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생(근로 학생)을 제외한 행정 조교 또는 직원을 의미하며, 소속이 본부 또는 센터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당 평균 인원수로 산출함.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결함(D)으로, 1.5명 미만인 경우 미흡(W)으로 판정함. <p>(설명2) 교육 보조 인력이 부족한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TA 등을 포함하여 교육 보조 활동을 입

	증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하며, 교수 1인당 0.2명 미만인 경우에는 결함(D)으로, 0.5명 미만은 미흡(W)으로 판정함.
--	---

○ 프로그램 개선

- 공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7.1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결과와 교과 과정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야 함.
7.2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7.3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표 7> 프로그램 개선 영역 판정 지침

항목	판정 지침
7.1 학습 성과 평가 결과와 교과 과정 운영 결과 분석	○ 결함 1) 프로그램 학습 성과별 성취도 측정 자료를 분석하지 않음. 2) 교과 과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지 않음.
	○ 미흡 1) 프로그램 학습 성과별 성취도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meaningful)(설명1)하지 않음. 2) 교과 과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설명2)하지 않음.
	○ 설명

	<p>(설명1)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의 유의미(meaningful)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차원에서 모든 학습 성과별 성취도를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수준(목표치)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 • 프로그램 차원에서 모든 학습 성과별 성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습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 • 모든 학습 성과별 성취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학 문제 수준, 평가체계, 목표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p>(설명2) 교과 과정 운영 결과의 유의미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의 지속적 품질 개선(CQI) 활동은 인증 기준 3에서 평가하고 인증 기준 7.1에서는 CQI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평가하고, 인증 기준 7.3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실적을 평가함. • 인증 기준 3.3에서 제시한 공학 주제 교과목에서 학습 성과 달성을 위한 지속적 품질 개선(CQI) 활동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 MSC, 공학 주제, 전문 교양 교과목 지속적 품질 개선(CQI)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상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2 프로그램	<p>○ 결함</p> <p>1) 정기 평가 주기(6년) 이내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p>

<p>램 운영 결과에 대한 내·외 부 평가 결과 종합 분석</p>	<p>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설명1) 결과를 종합 분석하지 않음.</p> <p>○ 미흡</p> <p>1)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설명2)하지 않음.</p> <p>○ 설명</p> <p>(설명1)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평가는 프로그램 교육 목표 적절성 검토,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도 평가, 교과 운영 평가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평가(학생, 교수진, 교육 환경 등)를 의미함. • 내부 평가 중 프로그램 교육 목표의 적절성 검토는 인증 기준 1.2에서,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결과와 교과 과정 운영결과 분석은 인증 기준 7.1에서 평가함. 그 외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평가(학생, 교수진, 교육 환경 등) 결과를 분석한 실적은 인증 기준 7.2에서 평가함. • 외부 평가는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평가, 대학본부 주관 학과 평가, 프로그램 교육 목표 적절성 검토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산업체 의견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모든 자료가 매년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에 수집하거나 분석한 실적을 평가함. <p>(설명2) 유의미한 종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분석에서는 내부 평가 결과와 외부 평가결과가 검토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 <p>※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집·분석·개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p>
--	--

	경우 평가를 유보하고 미흡(W)으로 판정함.
7.3 분석 결과를 종합적 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p>○ 결함</p> <p>1)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설명1) 실적이 매우 부족함.</p> <p>○ 미흡</p> <p>1)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이 부족함.</p> <p>2) 프로그램 개선 실적이 분석 결과와 무관함.</p> <p>○ 설명</p> <p>(설명1) 프로그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달성에 중요한 교과 과정과 교육내용, 교수법 등이 개선의 주요 대상이며, 프로그램 교육 목표와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개정, 구성원 의견 수렴 방안 및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체계의 개선, 학생 지도, 교수진, 교육 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음. <p>※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집·분석·개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유보하고 미흡(W)으로 판정함.</p>

○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 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조선해양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융·복합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
- 기타(비 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표 8〉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영역 판정 지침

항목	판정 지침
8.1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 1) 프로그램 명칭과 학위 명칭이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적용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 ○ 미흡 1) 해당 사항 없음
8.2 교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 1)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역량, 경력 및 자격을 갖춘 교수의 수가 매우 부족함. ○ 미흡 1)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역량, 경력 및 자격을 갖춘 교수의 수가 부족함.
8.3 교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 1)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에서 개설 또는 이수를 요구하는 교과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지 않음.

	<p>2)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설계 교과목 포함)을 이수하지 않은 졸업생이 배출됨.</p> <p>3)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설계 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됨.</p> <p>○ 미흡</p> <p>1) 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에서 개설 또는 이수를 요구하는 교과 영역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부적절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음.</p>
--	--

○ 공학인증 국내 혜택

인증졸업생 우대 기업	업무협약 연도	인증졸업생 혜택 (서류면제/가점 등)
Ahnlab	2005	서류전형 우대
삼성전자	2006	서류전형 우대
Ericsson-LG	2007	서류전형 10% 가점 부여
삼성그룹 (19)	2007	서류전형 우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석유화학,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화재, 삼성BP화학, 삼성LED, 삼성SDI, 삼성SDS, 제일모직, SB리모티브
NHN	2008	서류전형 우대
KT	2009	서류전형 우대
SK커뮤니케이션즈	2009	서류전형 우대
벤처기업협회	2010	서류전형 우대
서울시메트로9호	2010	서류전형 우대

선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2010	서류전형 우대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비트컴퓨터	2010	면접전형 10% 가점 부여
서울반도체, 서울옵토디바이스	2010	서류전형 우대
드림위즈	2010	서류전형 10% 가점 부여
몬티스타텔레콤	2010	서류전형 10% 가점 부여
인성정보 (6)	2010	서류전형 10% 가점 부여
		인성정보, 인성디지탈, 아이넷뱅크, 엔와이티지, 벤치비, 엠케이헬스
신세계건설	2010	서류전형 가점 (1~10점) 부여
신세계아이앤씨	2010	서류전형 가점 (1~10점) 부여
SK텔레콤	2010	서류전형 우대
가온미디어	2010	서류전형 우대
윈스테크넷	2010	서류전형 우대
삼성SNS	2010	서류전형 우대
중소기업중앙회	2011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2011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STX그룹 (13)	2011	서류전형 우대
		STX, STX팬오션,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 STX메탈, STX에너지, STX건설, STX마린 서비스, STX솔라, STX대련, STX 유림, STX OSV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IT여성기업인협	2012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회		공동협력
주성엔지니어링	2012	서류전형 우대
나모인터랙티브	2012	서류전형 우대
SK C&C	2012	서류전형 우대
휴맥스	2012	서류전형 우대
한국플랜트산업 협회	2012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콤텍시스템, 콤텍정보통신	2012	서류전형 우대
옴니시스템	2012	서류전형 우대
다산네트웍스	2012	서류전형 우대
핸디소프트	2012	서류전형 우대
퓨처시스템	2012	서류전형 우대
SK하이닉스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동국제강그룹 (4)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DK유아 이엘, DK유엔씨
오텍, 한국터치스크린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캐리어 (舊 대우캐리어)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현대중공업그룹 (23)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 종합상사, 무주풍력발전, 창죽풍 력발전, 태백풍력발전(주), 현대자 원개발, 미포엔지니어링, 현대오 일터미널, 현대셀베이스오일, 현 대중공업스포츠, 힘스, 코마스, 호텔현대, 현대아반시스, 신고려 관광,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

		대선물(주), 현대코스모(주)
현대제철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현대모비스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LG전자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LG디스플레이	2013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다우계열사 (4)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한국정보인증, 다우인큐브
한글과컴퓨터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한라그룹 (주식회사만도)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한솔그룹 (21)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한솔제지(주), 한솔아트원제지(주), 한솔페이퍼텍(주), 한솔홈데코(주), (주)한솔케미칼, (주)한솔씨앤피, 한솔개발(주), 한솔더리저브(주), 한솔테크닉스(주), 한솔라이팅(주), 한솔씨에스엔(주), 한솔이엠이(주), 문경에스코(주), 울산에스코(주), 한솔피엔에스(주), 한솔인티큐브(주), (주)솔라시아, 한솔씨앤엠(주), 한솔신택(주), (주)한솔넥스지, (주)다넷정보기술
동부대우전자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동진씨미켄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SK브로드밴드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대덕계열사 (4)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대덕전자, 대덕GDS, 대덕필리핀, 영테크
LS그룹 (10)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LS, LS전선, LS산전, LS-Nikko동계련, LS엠트론, 가온전선, E1, 예스코, LS글로벌, 대성전기
대림산업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탱크웨어	2014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에이치씨인포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티에스시스템즈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다큐세이브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에프씨에이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사인프린팅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레드피플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샘플교육정보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에스에이치컴퍼 니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나옴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코너스톤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보담디자인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씨토크커뮤니케 이션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타마릭스커뮤니 케이션즈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티에스라인시스 템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SNB KOREA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모다정보통신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AJ(아주)가족 (5)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AJ네트웍스, AJ렌트카, AJ토탈, AJ파크, AJ인베스트먼트파트너 스
KMW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KCC그룹 (9)	2015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KCC, KCC건설, 코리아오토클라 스, 케이씨씨자원개발, 금강레저, 완주흰여울, 보령흰여울, 미래, 대산컴플렉스개발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	2016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한라산소주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태임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신홍정보통신(주)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보이스아이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데이터소프트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아이케이엠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오르덴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미디어유아이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지주소프트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한국인재개발원 (주)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한국센서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산들정보통신(주)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시멘텍스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씨앤케이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태광이노텍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엘앤틱(주)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예신정보기술	2016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미원상사그룹 (5)	2017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미원상사, 동남합성, 태광정밀화학,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미원화학
LG화학 (3)	2017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LG화학, 팜한농, LG MMA
콘텐츠솔루션(주)	2017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한국문헌정보기술(주)	2017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LG하우시스	2018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한독(2)	2018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한독, 한독칼로스메디칼
(주)아이에이(5)	2018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아이에이, 트리노테크놀로지, 아이에이파워트론, 오토소프트, 아이에이씨미컨덕터
KCC정보통신	2018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한미글로벌	2018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주)타이드스퀘어	2019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SK실트론	2019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삼진일렉스	2019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 공학인증 국제 혜택

 <p>한국공학박람회인증원 Korea Association of Accredited Engineering Education</p>	<p>한국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p>ENGINEERS AUSTRALIA</p>	<p>호주 (EA: Engineers Austral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프로그램 졸업생(Accredited Australian and Accord qualifications)의 이민기술평가(MS A, Migrant Skill Assessment) 지원서 등록하는데 8주 소요 (cf. 비인증 졸업생 : 16주 소요) -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은 PE(Professional Engineer)의 업무를 시작하는데 요구되는 역량(Stage 1 Competency Standard for Professional Engineer)을 만족한다고 간주
 <p>engineerscanada ingénieurscanada</p>	<p>캐나다 (EC: Engineers Cana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censing body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캐나다 인증기구의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권장 - 학력요건 평가 시 시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캐나다 자격증 취득 시 아래요건을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캐나다에서의 1년을 포함해 3~4년 정도의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어야 함 2) 기술사 시험(professional practice)에서 법과 윤리 과목을 통과해야 함 3) 영어 능통(퀘벡은 불어, New Brunswick은 불어 혹은 영어)

	<p>아일랜드 (EI: Engineers Irela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 회원기구의 인증결정을 존중하고, 아일랜드의 공인기술(Chartered Engineer) 자격을 위한 교육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p>뉴질랜드 (IPENZ: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 IPENZ의 기술사가(Professional Membership of IPENZ)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함
	<p>영국 (ECUK: Engineering Council U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술사 (CEng) 등록 시, 영국의 인증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음
	<p>미국 (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등록 혹은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없고 각각의 주에서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 따라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할 시, 기술사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의 정책을 따라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주 위원회(State Board)는 ABET의 인증졸업생 혹은 교육요건과 현장경험이 인정할만한 개인은 자격증 발급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일부 주 위원회에서는 교육자격을 제3자에게 평가 받도록 하기도 하나, 미국 내 대부분의 주위원회에서 동등성을 인정함
	<p>홍콩 (HKIE: The HongKong Institution of Engine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IE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들이 (Graduate/ Corporate Member of the HKIE) 갖추고 있는 교육요건과 동등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함
 <p>ECSA 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p>	<p>남아프리카공화국 (ECSA: 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후보(Candidate Engineers)가 되기 위한 교육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함(한국 (ABEEK) 은 2007년부터 인정)
 <p>JABEE</p>	<p>일본 (JABE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석·박사 과정을 받기에 충분한 학부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추천서를 JABEE 명의로 발급 -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JABEE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
 <p>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INGAPORE</p>	<p>싱가포르 (IES: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ingapo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기술사회에서 워싱턴어코드 회원기구의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이 싱가포르 내에서 PE(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한 학력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
 <p>IEET 中華工程教育學會</p>	<p>대만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aiw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p>MÜDEK</p>	<p>터키 (MUDEK: Association for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Progra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p>말레이시아 (BEM: Board of Engineers Malaysia)</p> <p>-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p>
	<p>러시아 (AEER: Associ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Russia)</p> <p>-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p>
	<p>인도 (NBA: National Board of Accreditation)</p> <p>-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p>
	<p>스리랑카 (IESL: Institution of Engineers Sri Lanka)</p> <p>-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p>